

Maximizing  
Potential

# 2020년 연말정산메뉴얼 (Smart A 2.0)



**DOUZONE**  
www.douzone.com

## 목 차

<b>I. 근로소득연말정산 안내</b> .....	<b>5</b>
I-1. 2020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5
I-2. 연말정산이란 <국세청발간 『연말정산 신고안내』 참고> .....	37
I-3. 연말정산의무자 .....	37
I-4. 연말정산 및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	40
I-5.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차 .....	42
I-6.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43
<b>II. 근로소득 연말정산</b> .....	<b>47</b>
II-1. 사원등록 .....	48
II-2. 급여 자료 입력 (2020년) .....	55
II-3. 급여자료일괄입력 .....	59
II-4.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구)연말정산자료입력 .....	60
< 부표 > 의료비지급 명세서 .....	109
< 부표 > 기부금 명세서 .....	109
< 부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전자신고 제출 제외 서식) .....	110
II-5. 직원신용카드경비사용명세서 .....	111
II-6.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112
II-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13
II-8. 원천징수신고대사표(원천신고현황) - (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현황 .....	127
II-9. 연말정산 등 신고검토표 .....	128
II-10.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	130
II-11. 지방소득세특별징수전자신고 .....	134
<b>III. 사업소득 연말정산 안내</b> .....	<b>135</b>
III-1. 사업소득 연말정산 .....	135
III-2.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	135
III-3.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	136
III-4. 연말정산 시기 .....	136
III-5.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	136
III-6. 소득공제 .....	137
III-7.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 계산 .....	137

III-8. 사업소득 전산매체, 전자신고 제작 시 유의 사항 .....	138
<b>IV. 사업소득 연말정산 .....</b>	<b>139</b>
IV-1. 사업소득자 등록 .....	140
IV-2. 사업소득 자료 입력 .....	140
IV-3. 사업소득자연말정산 .....	141
<b>V. 퇴직소득 지급조서 작성 .....</b>	<b>153</b>
V-1. 퇴직소득 자료 입력 .....	154
V-2. 퇴직소득 중간지급 .....	155
V-3.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56
<b>VI. 기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b>	<b>157</b>
VI-1. 기타· 이자배당소득 전산매체, 전자신고 제작 시 유의사항 .....	158
VI-2.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	158
VI-3.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사업 비거주자 - 보고용) .....	159
VI-4. 기타(이자배당)소득자입력 .....	159
VI-5.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	160
VI-6.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60
VI-7. 기타이자배당소득자료제출집계표 .....	161
VI-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61
<b>VII.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작성 .....</b>	<b>162</b>
VII-1.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64
VII-2. 기타소득지급명세서(77번종교인소득) .....	187
VII-3. 77번종교인소득(기타소득)연말정산방법 .....	190
<b>VIII.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전산매체 제출 제작 .....</b>	<b>196</b>
VIII-1. 지급명세서의 서식 및 레코드 구성 변경 사항 .....	197
VIII-2. 개요 .....	197
VIII-3. 전자신고 작업 방법 .....	197
VIII-4.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	198
VIII-5. 전자신고 .....	206

IX.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입력 .....	208
X. 주요상담사례 .....	224
XI.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	226
XI-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	226
XI-2.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점검 항목 .....	227
XI-3.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	235
XII.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238
XIII. Smart A 프로그램 사용방법 안내 .....	239
XIII-1. 국민고용두루누리신청서 .....	239
XIII-2. 사대보험 일괄팩스 신고 .....	241
XIII-3. 팩스 및 문자보내기 .....	242
XVI. 사업,기타(이자배당)소득자 (단기/일반) 예술인 관련 개정사항 .....	248
XVI-1. 사업소득자입력 .....	249
XVI-2. 기타(이자/배당)소득자입력 .....	251

## I.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I -1. 2020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법 §12)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급여·수당 <input type="checkbox"/>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input type="checkbox"/>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 추 가 >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대상 확대  } (좌 동)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소득법 §47)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1,5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4,5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500만~1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body> </table> < 추 가 >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이하	40%	1,500만~4,500만원 이하	15%	4,500만~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 (좌 동)  ○ 공제 한도 : 2,000만원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이하	40%												
1,500만~4,500만원 이하	15%												
4,500만~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소득법 §59의2)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대상 <input type="checkbox"/>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input type="checkbox"/> 대상 조정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삭 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소득령 §38)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input type="checkbox"/>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액혜택 제공  
(소득법 §59의3 ③,④, 소득령 §40의2 ②, §118의2 ③)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li> <li>○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 연 1,800만원</li> <li>○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li> <li>○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li> <li>○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li> <li>○ 추가 납입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 하거나,</li> <li>-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li> </ul> </li> </ul>
<신 설>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소득령 §17)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기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li> <li>* 동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li> <li>-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li> </ul> </li> <li>○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li> <li>○ (좌 동)</li> </ul> </li> </ul>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소득령 §79)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li> <li>○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의 순서로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li> <li>② 이월기부금 산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li> </ul> </li> <li>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li> </ul> </li> </ul>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소득령 §106)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li> <li><input type="checkbox"/>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li> <li><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li> <li><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li> <li><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li> <li><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li> <li><input type="checkbox"/>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li> <li style="margin-left: 20px;">○ (좌 동)</li> <li><input type="checkbox"/>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li> </ul>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소득규칙 §58)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li> <li style="margin-left: 20px;">*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li> <li><input type="checkbox"/>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li> <li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li> <li><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원 비용</li> </ul>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 (소득규칙 §93)

<개정이유>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②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추 가>	<input type="checkbox"/>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① 별표2)

<개정이유>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표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공제 한도(2천만원) 반영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월급여 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8백만원 ~ 45백만원</td> <td>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금액 × 98% × 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5백만원 초과</td> <td>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13,249,600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98% × 42%)</td> </tr> </tbody> </table>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금액 × 98% × 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13,249,600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98% × 4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월급여 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8백만원 ~ 30백만원</td> <td>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금액 × 98% × 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백만원 ~ 45백만원</td> <td>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7,385,600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5백만원 초과</td> <td>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13,385,600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42%)</td> </tr> </tbody> </table>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 30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금액 × 98% × 40%)	30백만원 ~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7,385,600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13,385,600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42%)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금액 × 98% × 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13,249,600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98% × 42%)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 30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금액 × 98% × 40%)														
30백만원 ~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7,385,600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 13,385,600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42%)														

<적용시기> 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득법 §81의7, 법인법 §75의4①)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 5%</li> </ul> </li> </ul>

<적용시기> '19.2.12.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13)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소득령 §12제9호, 소득칙 §6의5)

<개정이유>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의 범위 명확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수당 대한 소득세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항공수당  <input type="checkbox"/> 함정근무수당  <input type="checkbox"/>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 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 수당 등	<input type="checkbox"/>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항공수당(유지비행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 <input type="checkbox"/> 함정근무수당(유지항해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 <input type="checkbox"/> (좌 동)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4)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 (소득령 §225의3)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input type="checkbox"/>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input type="checkbox"/> 제출기관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우정사업본부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적용시기> 이 영 시행(2020.2.11.)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

##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input type="checkbox"/>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input type="checkbox"/> (한도) 연간 2천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0.12.31.	<input type="checkbox"/>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input type="checkbox"/>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 (2)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조특법 §16)

〈개정이유〉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제출

〈적용시기〉 20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3)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18의3)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li> <li>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li> <li>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li> <li>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li> <li>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li> </ul> </li> <li>**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li> </ul> </li> <li>○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li> <li>○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li> </ul> </li> <li>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li> </ul> </li> <li>○ (적용기한) 202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li> </ul> </li> </ul> </li> </ul>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조특법 §30)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여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li> <li>▸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li> <li>▸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li> </ul> </li> </ul> </li> <li>○ (감면율) 70% (청년은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li> </ul> </li> <li>○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li> <li>○ (적용기한) 2021.12.3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li> <li>▸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li> </ul> </li> </ul> </li> </ul> </li> </ul>

<적용시기> 20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27)

<개정이유>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li> <li>○ (감면율) 70%(청년은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li> </ul> </li> <li>○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li> <li>○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li> </ul> </li> <li>○ (적용기한) 2021.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li> <li>○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li> </ul> </li> <li>○ (좌 동)</li> </ul>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  
(조특령 §121의2)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제대상 구체화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또는 신문구독료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 박물관·미술관 : 7,500만원 - 신문구독료 : (2021년 시행 예정)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8)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86의4)

<개정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 (5.5천만원)</td> <td rowspan="2">400만원 (700만원)</td> <td rowspan="2">15%</td> </tr> <tr> <td>1억원 이하 (1.2억원)</td> </tr> <tr> <td>1억원 초과 (1.2억원)</td> <td>300만원 (700만원)</td> <td>12%</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lt;신 설&gt;</p>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12%	<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 (5.5천만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600만원</td> <td rowspan="2">15%</td> </tr> <tr> <td>1억원 이하 (1.2억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900만원)</td> </tr> <tr> <td>1억원 초과 (1.2억원)</td> <td>300만원 (700만원)</td> <td>12%</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적용제외 대상)</p> <p style="margin-left: 20px;">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p> <p style="margin-left: 20px;">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p> <p style="margin-top: 10px;">○ (적용기한) 2022.12.31.</p>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900만원)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12%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12%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900만원)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12%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9)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종 전	개 정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li> <li>○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 15%</li> <li>-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li> <li>-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li> <li>-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li> </ul> </li> <li>○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li> <li>○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항목</th> <th style="text-align: left;">한도 추가</th> </tr> </thead> <tbody> <tr> <td>전통시장</td> <td>100만원</td> </tr> <tr> <td>대중교통</td> <td>100만원</td> </tr> <tr> <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p>○ (적용기한) 2019.12.31.</p>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p>□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li> <li>-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li>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 : 100만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항 목</th> <th style="text-align: left;">한도 추가</th> </tr> </thead> <tbody> <tr> <td>전통시장</td> <td>100만원</td> </tr> <tr> <td>대중교통</td> <td>100만원</td> </tr> <tr> <td>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p>○ (적용기한) 2022.12.31.</p>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100만원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100만원																

<적용시기> (신문구독료) 2021.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화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li> </ul> </li> <li>○ (공제대상 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공연 : 출판법에 따른 간행물 구입,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기준 등은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협의하여 규정</li> </ul> </li> <li>-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도 집행상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li> </ul> </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포함</li> </ul> </li> </ul> </li> </ul>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11) '20.3~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li> <li>○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30~80%</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통시장·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r> </tbody> </table> <p>* '20년 1,2,7~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li> <li>○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한도 추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통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22.12.31.</li> </ul>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p>□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3월</th> <th style="text-align: center;">4~7월</th> <th style="text-align: center;">8~12월</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8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금영수증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통시장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구분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 등	60%	30%	전통시장 등	80%		40%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구분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 등	60%		30%																													
전통시장 등	80%		40%																													

<적용시기> 2020.5.19.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2)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 (조특법 §18)

<개정이유>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

종 전	개 정
<p>□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p> <p>○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p> <p>*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p> <p>○ (감면율) 모든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동일한 감면율 적용 - 5년간 소득세 50%</p> <p style="text-align: right;">&lt;추 가&gt;</p> <p>○ (적용기한) '21.12.31.</p>	<p>□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소재·부품·장비 기술자)</p> <p>○ (좌 동)</p> <p>○ (감면율) 소재·부품·장비 기술자에 적용되는 감면율 상향 - (일반) 5년간 소득세 50%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 3년간 70%, 이후 2년간 50%</p> <p>*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p> <p>○ (좌 동) - 다만,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는 '22.12.31.</p>

<적용시기> 202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13)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종 전	개 정																																												
<p>□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p>○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p> <p>○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20. 2월</th> <th style="text-align: center;">3월</th> <th style="text-align: center;">4~7월</th> <th style="text-align: center;">'20. 8월~</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8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서·공연·미술관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통시장·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p> <p>○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 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천만 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천만 원~1.2억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억 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 원</td> </tr> </tbody> </table> <p>*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p> <p>○ (적용기한) '22.12.31.</p>	구분	~'20. 2월	3월	4~7월	'20. 8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p>□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좌 등)</p> </div> <p>○ '20년 귀속에 한해 30만 원 상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 기준</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한도</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20년</th> <th style="text-align: center;">'21.'22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천만 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30만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천만 원~1.2억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80만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억 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30만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 원</td> </tr> </tbody> </table> <p>*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p> <p>○ (좌 등)</p>	총급여 기준	한도		'20년	'21.'22년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80만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200만 원
구분	~'20. 2월	3월	4~7월	'20. 8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총급여 기준	한도																																												
	'20년	'21.'22년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80만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200만 원																																											

(14)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조특법 §95의2, §122의3)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이하자) : 월세액의 10% <input type="checkbox"/> (월세액 한도) 750만 원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본 책자의 내용은 고객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직접 하시고,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조력과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연간근로소득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비과세소득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원 이내)
-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

(-) 인적공제

-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0.12.31 이전)	20세 이하 (00.01.01 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 (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1억원 이하 : 3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한도)
-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공제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30만원 중 적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1억2천만원 해당자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 230만원)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신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각각 100만원 한도)
- ▶ 우리스주조합출연금 : 우리스주조합원이 우리스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스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 연 1,500만원 한도)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5억 원 초과	17,460만원+5억 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청년, 60세이상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90%, 150만원 한도) 감면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미만 :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이상 : 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 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 유형별 공제한도 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유형	세액공제 등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이월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①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10년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
④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의 20% 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 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10년
⑤ 지정기부금(비종교단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 의 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금액)
-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수급자 등	○	×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주 택 자 금	① 주택임차 차 입 금 원 리 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주택마련 저축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1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등으로부터차입한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 한도액	-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15년이상&비거치식&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15년이상&(비거치식or 고정금리 ) : 1,500만원 ·상환기간15년이상&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10년이상&(비거치식or 고정금리 ) : 3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고정 금리 : 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 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만료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벤처기업 출자:100%·70%·50%·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1과세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80%	· 공제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2월</th> <th>3월</th> <th>4~7월</th> <th>8~12월</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15%</td> <td>30%</td> <td rowspan="3">80%</td> <td>15%</td> </tr> <tr> <td>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td> <td>30%</td> <td>60%</td> <td>30%</td> </tr> <tr> <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td> <td>30%</td> <td>60%</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 <td>40%</td> <td>80%</td> <td></td> <td>40%</td> </tr> </tbody> </table> ※ 중고차 신용카드 등 구입금액은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은 제한, 나이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30만원(총급여 7천만원~1.2억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630만원)	구 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구 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중견 기업 3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240만원 한도)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④ 3,4,6에 따른 투자·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 연 150만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인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 '14. 1.1. 이후, 경력단절 여성 : '17.1.1. 이후) ~ '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 * 청년 감면율의 적용 - '12~'13년 취업청년 : 100% - '14~'15년 취업자 : 50% - '16~'17년 취업자 : 70% - '18년 이후 소득 : 90%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66만원, 74만원)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산출세액</th> <th>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30만원 이하</td> <td>55%</td> </tr> <tr> <td>130만원 초과</td> <td>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b>74만원</b>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b>66만원</b>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b>50만원</b>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7세이상) 출산·입양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조특법 §100의30 ②)															
연 금 계 좌	연금저축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총급여액</th> <th colspan="2">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 rowspan="2">공제율</th> </tr> <tr> <th>50세미만</th> <th>50세이상</th> </tr> </thead> <tbody> <tr> <td>5.5천만원</td> <td>400만원 (700만원)</td> <td>600만원 (900만원)</td> <td>15%</td> </tr> <tr> <td>1.2억원 이하</td> <td>300만원 (700만원)</td> <td>300만원 (700만원)</td> <td>1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2억원 이하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2%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 300만원 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2억원 이하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2%														
과학기술인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1.2억원 이하</td> <td>400만원 (700만원)</td> <td>15%</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300만원 (700만원)</td> <td>1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1.2억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15%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1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1.2억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15%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12%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감면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 료 비	㉠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20%**)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난임시술비는 20% 공제율 적용	
			㉢ 그 외 부양가족		
		교 육 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한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 본인, 장애인: 한도 없음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대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 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법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공제대상 한도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100% · 지정(종교단체 외) : 근 로소득금액의 30% ·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 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 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 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0%, 5,500만원 이하자 1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소법 §122) >

항목	구분		비고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연간근로소득	국외원천 소득포함	국내 원천소득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단기거주 외국인은 국외원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근로소득공제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만 공제	
	추가공제	○	본인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한함	
특별 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	×	
	주택자금	×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주택마련저축	×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한 금액에 한함
세액공제	근로소득	○	○	
	자녀,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	
	납세조합	○	○	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 원천 징수 신고·납부시 적용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액공제 대신 ‘급여총계 ×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 맞벌이 부부란 ?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업무 일정 >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참 고
	대 상		
연말정산 업무준비	'2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연말정산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li> <li>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연말정산 안내</li> </ul>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e-book 제공) 연말정산 및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동영상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21.1.15~2.15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li> <li>자료 제출 기관이 1.15~1.18사이에 자료를 수정·추가로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li> </ul>	자료 제출 기관은 1.13까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1.15~1.18 까지 수정 또는 추가 제출 가능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17 예정)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20~2.15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li> <li>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li> <li>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li> <li>추가 작성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li> <li>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li> <li>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li> </ul> </li> </ul>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사용해야 함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 회사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 수증」 발급	1.20~2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li> <li>근로자는 누락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추가 제출</li> <li>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li> <li>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li> </ul>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연말정산결과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분 급여 지급 시 까지 분납 가능
	회사 → 근로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홈택스 전자신고 시 함께 제출</li> <li>* 기한 내 미제출 제출금액의 1%(0.5%)가산세 부담, 근로자의 ISA 가입 및 금융기관 대출 시 불이익이 발생</li> </ul> </li> <li>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li> <li>환급신청의 경우 '2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3.10일 기한)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li> <li>환급신청 후 국세청은 30일 이내 근로소득세 환급</li> </ul>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는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
	회사 → 국세청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참 고
	대 상		
종합소득 확정신고	5.1~5.31	◦연말정산 시 신고를 잘못된 경우에는 5.31.까지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국세청→근로자		
과다공제 분석안내	9월(예정)	◦근로자·부양가족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한 과다공제 안내서비스 제공	과다공제 명세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개별 확인
	국세청 → 회사		

## I-2. 연말정산이란 <국세청발간 『연말정산 신고안내』 참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한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 I-3. 연말정산의무자

### 1. 연말정산의무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의무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지급액, 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 2.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①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그 근로 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②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 받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③ 납세조합에 가입된 근로 소득자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 받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부도, 도산,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근로자가 다음 5월 중에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이중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3. 참고사항

#### ① 기업형태 변경 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개인 기업이 법인 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 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 ② 사업의 양도·양수 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46013-2484, '98.9.3)

### ③ 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여부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17.8, '98.6.25)

### ④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2)

### ⑤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 I-4. 연말정산 및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 1. 연말정산시기 등

구분	연말정산시기	신고·납부기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월별납부자	2021. 2. 28	2021. 3. 10	* 하단 내용 참조
반기별납부자		2021. 7. 10	

※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2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환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2021.2월분을 2021.3.10일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21.7.10일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기 제출한 연말정산분과 2월분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근로·퇴직·사업소득(연말정산포함)·종교인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그 외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2일까지 제출합니다.

※ 휴·폐업자는 지급명세를 휴·폐업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

구분	원천징수 의무자	월(반기) 별 신고서 관할서	지급명세서제출자	지급명세서의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개인	개인	사업자 관할서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번호
법인	본점	본점 관할서	원칙 : 본점 및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지점			
	본점·지점 (독립채산제일 경우)		본·지점 원천징수의무자 (본점 일괄 제출 가능)	본점직원 : 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 : 지점사업자번호
	본점 일괄납부자	본점·지점	본점에서 일괄하여 제출	본점직원 : 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 : 지점사업자번호

※ 지급명세서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요령

- ① 모든 지급명세서제출자는 매월(반기) 별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② 다만, 예외적으로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본·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월별납부자, 반기별납부자

#### ① 월별납부자

연말정산의무자 중 월별납부자는 2021.2.28.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21.3.10일 신고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A04)란에 기재하여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연말정산세액을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환급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2021년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반기별 납부

연말정산의무자 중 반기별납부승인자는 2021.2.28.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하지만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연말정산세액의 납부(조정환급)는 2021.7.10.까지 이행하면 됩니다. (상반기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을 포함하여 제출. 다만, 환급 신청 시에는 3월 10일까지 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월별납부자와 동일하게 2021.3.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 4. 중도퇴직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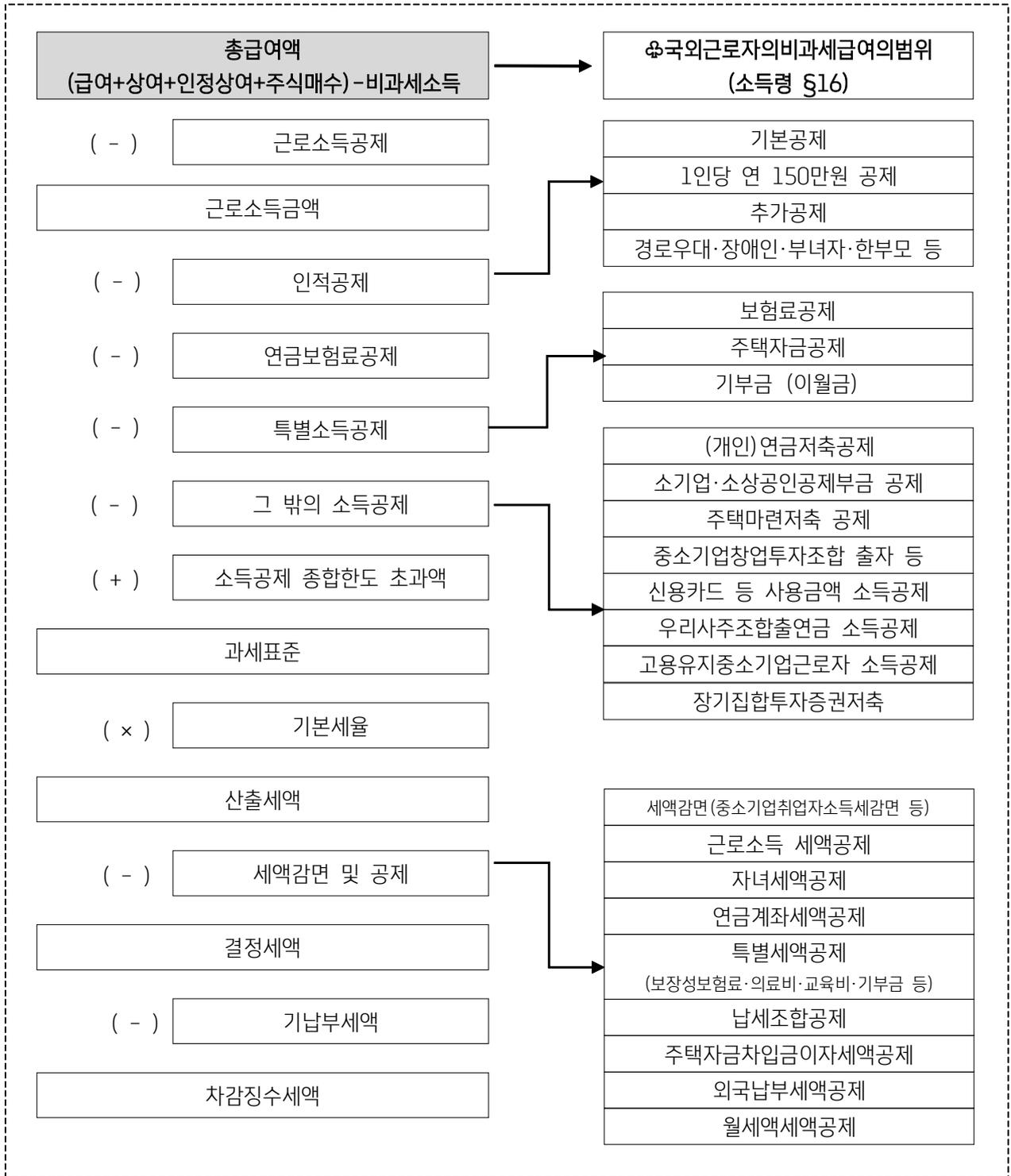
①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각종 소득 공제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 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경부소득 46073-1. 2000.1.11.)

I-5.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차



## I-6.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http://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main/mainBody.htm](http://www.kais.kr/realtyprice/main/mainBody.htm))
- 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http://efamily.scourt.go.kr))

※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인 적 공 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인 적 공 제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면·동주민센터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주 택 자 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인 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貸主)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군·구청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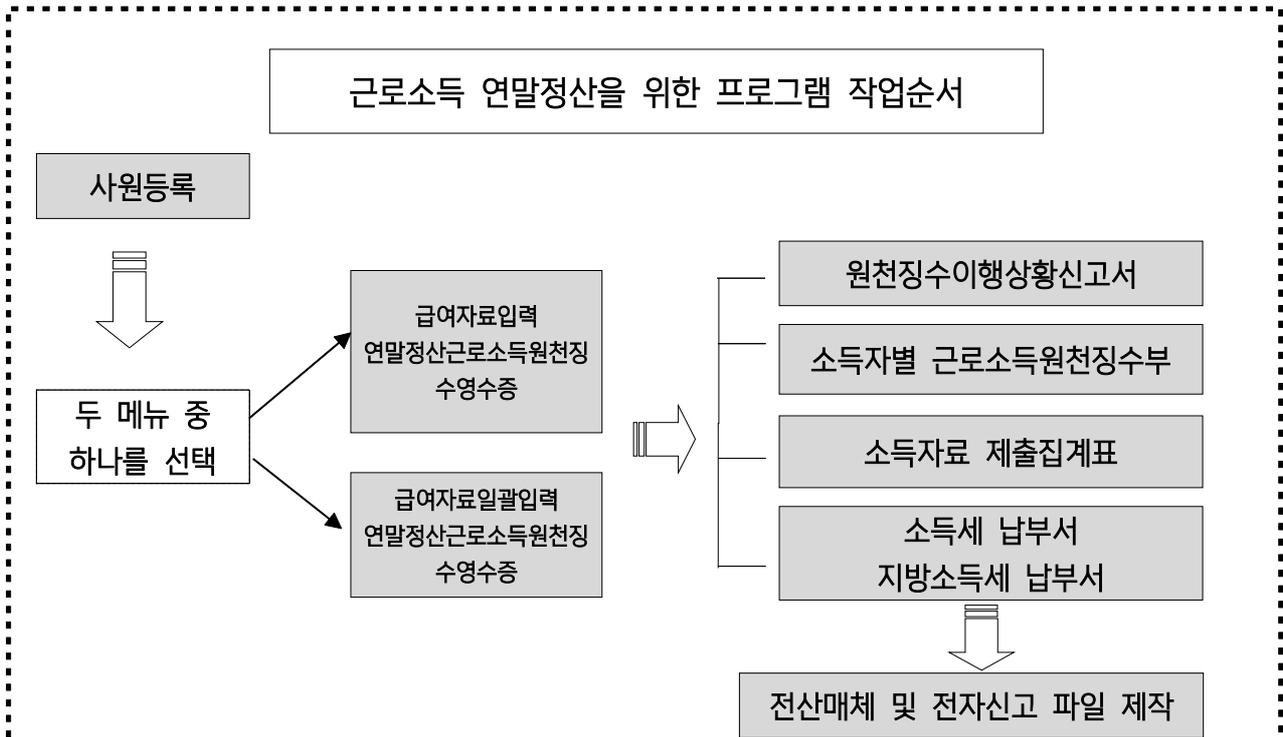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주택 자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금융회사 등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출자(투자) 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국세청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연금 보험료	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연금저축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국세청
의 료 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병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국세청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안경 (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국세청	
교 육 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국세청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장애인특수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국세청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등	국세청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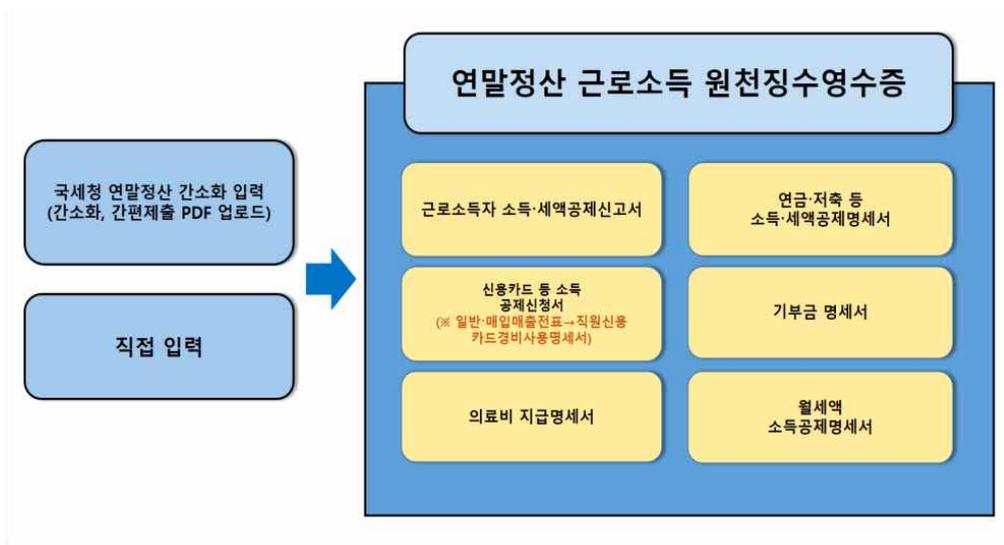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비 고
교 육 비	국외교육비	교육비납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국외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 작성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국세청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미분양주택확인서 (근로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	본인 작성		
월세액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	재외공관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발취

## II. 근로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업무 흐름도 참조



## II-1. 사원등록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사원별 급여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기초사항을 등록합니다.

코드	사원명	주민(외국인)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김철수	내 800601-*****
<input type="checkbox"/> 2000	서나리	내 890210-*****
<input type="checkbox"/> 3000	홍원삼	내 890913-*****
<input type="checkbox"/> 4000	김지훈	내 740504-*****

연말정산관계	기본	세대	부	장	경로	출산	자녀	한부모	성명	주민(외국인)번호	가족관계
2	3.배우자	배우자							이영희	내 820214-*****	02. 처
3	4.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		김하나	내 130510-*****	05. 자
4	4.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김두솔	내 170910-*****	05. 자
5	4.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3)			김세영	내 201001-*****	05. 자
6											
합 계						1	1				

### ● 배우자 공제

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관계의 3.배우자를 선택합니다.



#### 공제대상 배우자 요건

-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2012.8.29.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배우자의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❶ 부양가족 명세

당해 소득자 및 당해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 받을 항목이 있는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이 되는 20세 이하 부양가족 수와 60세 이상 부양가족을 각각 입력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각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해당되는 공제대상 항목(기본공제, 장애인, 부녀자, 경로자, 한부모, 출산입양)을 선택합니다. (공제항목에 해당되면 '1', 해당되지 않으면 '0'을 입력합니다.)

※ 6세이하는 6세이하 자녀의 비과세수당(월 10만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는 폐지됨)

※ 공제 받을 부양가족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명세>에 입력한 후 해당되는 공제항목에 체크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됩니다.

※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1960.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2000.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2000.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만 60세 이상(1960.12.31.이전 출생)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 시 공제불가)
-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하고,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님
-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2003.12.30. 신설)

❶ 추가공제

1. 경로우대 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중 70세 이상 해당되는 경우 체크 합니다.

- 70세 이상(1950. 12. 31. 이전 출생자)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2. 장애인 공제

해당 공제 대상자의 장애 항목에 체크합니다.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로 부녀자 항목에 체크합니다. 1인당 연 50만원 공제

4.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인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불가능하므로 한부모 항목에 체크합니다.  
한부모 공제 연 100만원공제

❷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 7세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 30만원, 자녀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원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2020.1.1.이후 출산·입양 된 자녀가 첫째, 둘째, 셋째이상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이 다릅니다.출산·입양공제에 해당하는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연말정산관계	기본	세대	부녀	장애	경로 70세	출산 입양	자녀	한부모	성명	주민(외국인)번호	가족관계
2	3.배우자	배우자							이영희	내 820214-*****	02. 처
3	4.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		김하나	내 130510-*****	05. 자
4	4.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김두울	내 170910-*****	05. 자
5	4.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3)	0. 부 1. 첫째 2. 둘째 3. 셋째이상		김세엣	내 200114-*****	05. 자

<인적공제 대상검토표>

관 계	기본공제	추 가 공 제			
		부 녀 자	장애인	경로우대	한부모
본 인	0	-	기후여성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인 여성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소 득 자 직계존속	1			
	배 우 자 직계존속	2			
	배 우 자	3	-	장애인등록증	
	직계비속 자 녀 외	4	20세이하	장애인등록명서 · 심이자 증명을 제출한 자	70세 이상
	직계비속 자 녀 외	5	20세이하		
	형제자매	6	20세이하 60세이상		
	수 급 자	7	기초생활 수 급 자		
	위탁아동	8	위탁아동		

\* 직계비속 자녀 외 = 손자·손녀 등

❶ 거주구분

거주자인 경우 “0”, 비거주자인 경우 “1”로 입력합니다.



비거주자 세액계산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공제,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만 적용)
  - 특별소득, 세액공제(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표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조특법 또는 (구)조감법상 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❷ 생산직등여부/연장근로비과세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등 사원의 경우에는 “1”, 생산직 이외의 사원은 “0”을 입력합니다.

- 생산직등 여부 : 0.부, 1.여
- 연장근로비과세 : 소득세법 §20②에 따라 전년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 0.부
  - 1.여 : 생산직 등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240만원 비과세)
  - 2.광산 : 생산직 사원 중 광산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전액 비과세인 근로자)

[참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요건과 소득세법 §20②에 따라 전년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만 연장근로비과세(연 240만원, 광산근로자는 전액)를 적용합니다.

❶ 단일세율적용여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단일세율적용 <0.부, 1.여> 를 선택합니다. 단일세율적용 “1.여”를 선택한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의 19%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 됩니다.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합니다.)

❶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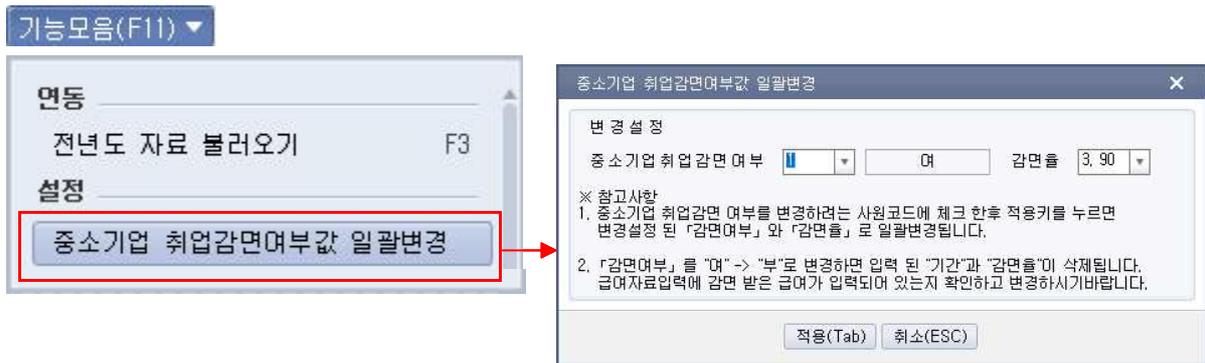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병역기간 제외:한도6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2012.1.1.(60세이상자 또는 장애인:2014.1.1., 경력단절 여성:2017.1.1.) ~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됩니다.

☞ 감면율의 적용

- 2012~2013년 취업청년 : 100% (종료됨)
- 2014~2015년 취업자 : 50%
- 2016~2018년 취업자 : 70%
- 청년의 2018년 이후 귀속 소득 : 90%

사원등록에 주민등록번호와 입사년월일 입력 시 감면 적용연령을 체크하여 중소기업취업감면적용대상 및 감면비율이 입력됩니다. 중소기업취업감면 여부 등 정보가 다른 경우 반드시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5년->7년))

「참고」 중소기업취업 감면여부 및 감면율 일괄변경



- 일괄변경 할 사원을 선택하여 실행하며 “적용” 실행시 변경설정 된 “감면여부”와 “감면율”로 일괄변경 됩니다.
- 감면여부 : 0.부, 1.여 (1.여 기본값)
- 감면율 : 감면여부가 “1.여”일 때 0.50, 1.100, 2.70, 3.90 (3.90 기본값)
- 감면여부를 “여”에서 “부”로 변경할 경우 입력 된 “감면기간”과 “감면율”이 삭제됩니다.  
급여자료입력에 감면 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 “부”로 일괄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변경합니다.

● 종교소득자포함여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경우 종교소득자포함여부를 “여”로 선택합니다. (인사환경설정을 먼저 설정 함)

- 인사환경설정 : 1.근로소득설정 -> 종교소득자포함여부 “1.여” 선택
- 직원등록 : 인사환경설정의 종교소득자포함여부를 “1.여”로 선택한 경우만 표시합니다.



## II-2. 급여 자료 입력 (2020년)

본 메뉴는 매달 급여자료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급여자료입력

지급일자: 역셀업로드작성방법    검색    재계산(F8)    마감(F4)    기능모음(F11)

귀속년월: 2020년 01월    월 구분: 2. 급여+상여    지급일: 2020년 01월 25일    정렬: 1. 코드순

코드	사원명	직급	감면율	급여항목	지급액	공제항목	공제액
<input type="checkbox"/>	1000	김철수		기본급	4,000,000	국민연금	180,000
<input type="checkbox"/>	2000	서나리	90%	상여		건강보험	133,400
<input type="checkbox"/>	3000	홍원삼	90%	직책수당	50,000	고용보험	32,4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4000	김지훈		식대	100,000	장기요양보험료	13,670
<input type="checkbox"/>				육아수당	100,000	소득세	216,300
						지방소득세	21,630
				과세	4,050,000		
				비과세	200,000		
				감면소득			
				지급액계	4,250,000	공제액계	597,400
						차인지급액	3,652,600
	인원(퇴직)	4(0)					

지급/공제 조회구분: 2. 전체사원\_현재

항목	TX	금액
기본급	과세	15,500,000
직책수당	과세	50,000
식대	비과	400,000
육아수당	비과	100,000
과세		15,550,000
비과세		500,000
감면소득		0
지급액계		16,050,000

공제항목	지급액
국민연금	697,500
건강보험	516,910
고용보험	124,400
장기요양보험료	52,970
소득세	323,430
지방소득세	32,320
농특세	
공제액계	1,747,530
차인지급액	14,302,470

주민(외국인)번호: 740504-\*\*\*\*\*

급여 과세 및 비과세 수당을 등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설정 탭에서 설정된 한도를 자동 반영 해주며 각 수당은 지급명세서 제출, 미제출에 따라 제출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금액을 반영 합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코드	수당명	과세구분	근로소득유형	할정	급여	상여	추급	추상
1	101 기본급	과세	1.급여		○	○		○
2	102 상여	과세	2.상여				○	○
3	200 직책수당	과세	1.급여		○	○		○
4	201 식대	비과세	2.식대	P01	○	○		○
5	202 육아수당	비과세	7.육아수당	001	○	○		○
6								

\* 월정액에 따른 수당등록  
 1) [2.식대], [3.자가운전] 등 비과세되는 수당 중 실비변상이 아닌 수당은 월정액에 포함됩니다.  
 2) 수당에 따라 실비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월정액에 따른 수당 설정은 각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단,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을 "여"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T3(성과공급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겸면)와 T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수급 소득세 감면)에 대한 소득세는 직접 입력합니다.  
 ※ 배우자출산후가 급여 비과세수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비과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상한액 준수요양)

코드	비과세/감면 항목	구분	비과세공제한도	코드	지급명세
1	1 연장근로	년	2,400,000	001	제출
2	2 식대	월	100,000	P01	미제출
3	3 자가운전	월	200,000	H03	미제출
4	4 연구개발비	월	200,000		제출
5	5 육아수당	월	200,000	H11	제출
6	6 승선수당	월	200,000	H05	제출
7	7 육아수당	월	100,000	Q01	제출
8	8 기타비과세	전액			제출
9	9 국외등근로(건설지원업무 등)	월	1,000,000	N01	제출
10	10 국외근로(원양선박, 건설설계감리직등)	월	3,000,000	M02	제출
11	11 육아/산전후휴가	년	6,000,000	E01	미제출
12	13 경호/위협등 수당	전액		H05	제출
13	14 (배지)취업비과세	월	1,000,000	Y21	제출
14	15 수련보조수당	월	500,000	Y22	제출
15	17 직무발명보상금	년	5,000,000	R11	제출
16					

\* 2019년부터 18-25 T10-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100% 삭제 및 (금액 확인요양)  
 ※ 감면소득(T01 ~ T50)에는 비과세공제한도를 입력하면 안됩니다.  
 월정액수이행상환신고서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감면 항목	지급명세/작성 여부	
소법 §12 3 가	A01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 §12 3 마	E01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다태아) 540만원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다태아) 540만원	×	
소법 §12 3 바	E10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 §12 3 자	G01	(18)-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18)-9		소득령 §12 1(법령·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득령 §12 2~3(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령 §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 §12 4, 8(법령에 의해 적용하는 제복 등)	×
				H05	(18)-18 소득령 §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18)-4 소득령 §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18)-4 소득령 §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18)-4 소득령 §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18)-4 소득령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18)-4 소득령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18)-22 소득령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 비과세 설정은 비과세항목 등 한도를 추가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코드도움을 통해 해당 비과세 항목을 선택해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 비과세 항목에 반영됩니다.

❶ 주식매수행사이익

급여 과세의 주식매수를 선택 시에는 근로소득유형을 ‘4.주식매수’로 선택합니다.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로 전환이 되어(조세특례제한법 §15 참조)과세급여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 사원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입력합니다.

☞ 급여자료입력에서 [과세구분 : 과세, 근로소득유형 : 4.주식매수행사이익] 금액 입력 시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에서 소득명세 탭 주식매수행사이익으로 반영합니다.

❷ 우리사주조합

급여 과세의 우리사주조합을 선택 시에는 근로소득유형을 ‘5.우리사주조합’으로 선택합니다.

❸ 연장근로수당

〈급여자료입력〉에서 입력된 월정액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매월 비과세 연장근로 수당 등이 집계되어 반영됩니다.

※ 연간 240만원 한도(또는 전액 비과세)를 체크하여 반영됩니다.

☞ 〈사원등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체크  
▷ 연장근로비과세 : 1.여(240만원 한도), 2.광산(전액)

생산직 등 여부	1	여	연장근로비과세	1	0.부
					1.여
					2.광산

❹ 국외근로 비과세

〈사원등록〉의 16.국외근로소득에서 선택한 사원에 한하여 〈급여자료입력〉에서 매달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이 매월 각각의 한도로 자동 집계되어 반영됩니다.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소득령 §16)

-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02. 18. 개정)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013.02.15. 개정)

### ❶ 기타 비과세

<급여자료입력>에서 입력된 매월 기타 비과세 되는 수당이 각 수당별로 집계되어 반영됩니다.  
(지급조서 미제출 비과세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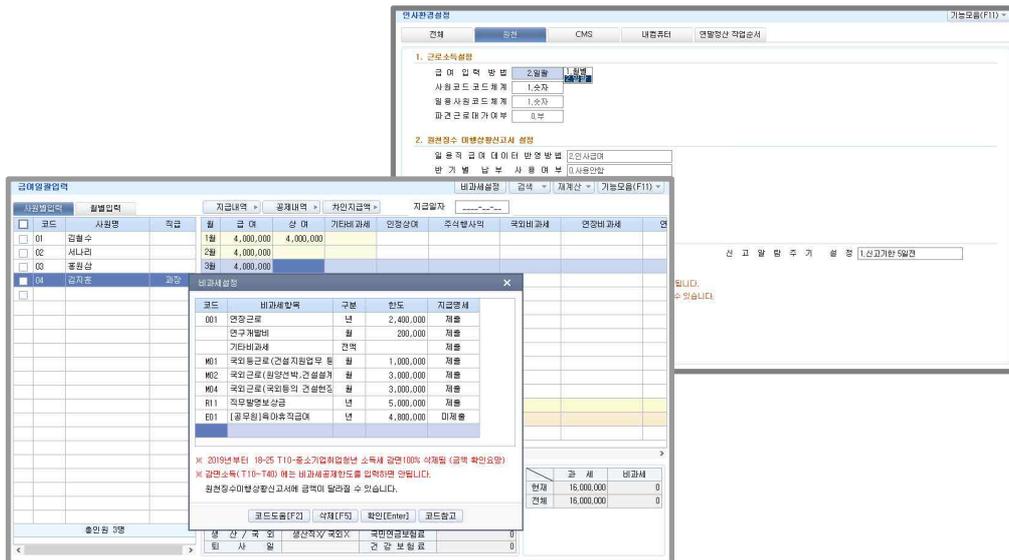
### 출산·보육수당 (소득세법 §12-3-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및 유아휴직수당 포함(서면1팀-1664, 2004.12.16.)

### II-3. 급여자료일괄입력

※ <기초/인사관리-인사환경설정>의 원천 탭 [급여입력방법]이 2.일괄로 되어 있는 경우 본 메뉴에서 급여자료를 입력합니다. 급여입력방법을 <월별에서 일괄>로 <일괄에서 월별>로 변경하여도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참고 : 이행상황신고서의 반기별 사용여부도 환경설정에서 합니다.



## II-4.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구)연말정산자료입력

본 메뉴는 급여자료입력에서 매월 급여자료를 입력한 경우 연말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입력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명세서, 의료비명세서, 신용카드신청서 인쇄 및 전자신고 마감을 위한 메뉴입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본 서식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는 [중도]버튼을 클릭하여 사원코드 도움 또는 전사원 버튼을 이용하여 사원을 불러와 연말정산 작업을 합니다.

☞ 정산년월은 퇴사연월로 자동 반영되며 수정 가능하고, 귀속 기간은 사원등록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체크되어 자동 반영됩니다.

### ※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계속근무자는 [연말]버튼을 클릭하여 사원코드 도움 또는 전사원 버튼을 이용하여 사원을 불러와 연말정산 작업을 합니다.

구분	공제대상액	구분	공제대상액
21. 총 급여 여(16)	50,000,000	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2. 근로소득공제	12,250,000	48. 종합소득과세표준	36,115,000
23. 근로소득금액	37,750,000	49. 산출세액	4,337,250
24. 본인	1,500,000	50. 『소득세법』	
25. 배우자		51. 조세특례제한법(52제외)	
26. 부양가족	--명	52. 중소기업취업자감면/조특30	
27. 경로우대	--명	53. 조세조약(원어민교사)	
28. 장애인	--명	54. 세액감면계	
29. 부녀자			
30. 한부모가족			
31. 국민연금보험료	135,000		
32. 가. 공무원연금		55. 근로소득	660,000
나. 군인연금		56. 공제대상자녀	--명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출산입양	--명
라. 발정우체국연금		공제	
33. 가. 건강보험	110,300	연금계좌	
나. 고용보험	400,000	57. 과학기술인공제	
34. 주택 - 가. 주택임차차입금		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원리금상환액		59. 연금저축	
15년미만		60. 보장성보험	0
15~29년		61. 의료비	0
		62. 교육비	0

☞ 정산년월은 2021년 2월로 자동 반영되며 귀속 기간은 1월1일~12월31일로 자동 반영됩니다.



**참고사항**

●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 ① 툴바의 **전사원(F7)** 을 클릭합니다.
- ② 확인 메시지와 함께 12월 현재 계속근무자 전체 사원의 자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 각 사원별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입력합니다.

● [환경설정] 원천 탭에서 급여입력방법이

- ① 월별인 경우 [급여자료입력] 메뉴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반영되고
- ② 일괄인 경우 [급여자료일괄입력] 메뉴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❶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❷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	근 로 소 득 공 제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음

❸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❹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 \* 공적연금 관련법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①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연 300만원 [①+②]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원~1,800만원 [①+②+③]
기부금	이월분	2013.12.31. 이전 지정기부금 지출액	공제한도 내 이월 기부금
개인연금 저축	납입액	20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18년이후 투자	투자금액의 10% (개인이 벤처기업·벤처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00%, 7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조특법§16④-2 벤처투자신탁의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80%	급여수준별 차등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 7천~1.2억원이하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3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분 100만원 추가 (최대 63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별 차등 · 4천만원이하 500만원 · 4천~1억원이하 300만원 · 1억원초과 200만원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출연금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공제	임금삭감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 액) × 100분의 50	연 1,000만원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납입액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600 만원 한도)의 40%	연 240만원

❶ 보험료공제

1.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급여자료입력>에서 입력된 매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공제액이 자동 집계되어 반영되며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 ※ 건강보험료를 수정할 경우 <급여자료입력>에서 해당 월의 자료를 수정한 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재계산** 을 클릭하여 보험료 재계산을 하거나, 해당 사원을 삭제 후 다시 연말정산 작업을  
하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탭의 [연말/종전]에 정산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을 참조  
하십시오. (추가입력사항은 소득명세탭의 [연말] 에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2. 고용보험료

<급여자료입력>에서 입력된 매월 고용보험료 공제액이 자동 집계되어 반영되며 한도 없이 전액 소  
득공제 합니다.

- ※ 고용보험료를 수정할 경우 <급여자료입력>에서 해당 월의 자료를 수정한 후 **재계산** 을 클릭하여 보험료  
재계산을 하거나, 해당 사원을 삭제 후 다시 연말정산 작업을 하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연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 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법소정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증서는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하며, 본인 외의 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하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이 될 수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법52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며, 연말현재 세대주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능하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입력합니다.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 '11.12.31이전 차입분
    - 연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미만)
    - 연 1,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5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2.1.1. 이후 차입분
    -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2015년 이후 최초 차입분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 한도 적용

**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입력합니다.

※ 2000.12.31.이전에 가입하여 당해 연도에 불입한 개인연금 저축액을 입력하면 저축불입액의 40%가 72만원 한도로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참조)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 2016년 이전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종전규정대로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한도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①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 합하여 연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종합한도 적용  
(2011.12.31.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하고 2012.1.1. 이후 2014.12.31.까지 차입분은 상환방식에 따라 500만원, 1,500만원 적용)

### ○ 주택자금공제의 한도액

공제종류		공제금액(한도액)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 전체 (㉠+㉡+㉢) 한도액 ㉠이 2015.1.1.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이 2012.1.1.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차입금의 70%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 그 외 차입금 500만원 ㉠이 2012.1.1.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 : 1,000만원 ㉠이 2003.12.31.이전 차입인 경우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 40%	공제한도 : Min(㉠, ㉡) ① : ㉡+㉢ ② : 300만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 납입액 × 40%		



참고사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3월내 차입, 공제한도 개정연혁

구 분	'00.10.31. 이전 차입분	'00.11.01. ~ '03.12.31. 차입분	'04.1.1. 이후 차입분	'09.1.1.이후 상환분	'12.1.1.이후 차입·만기연장	'15.1.1.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규정 없음	10년 이상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 (거치기간 제한없음)	15년이상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소유권이전 (보존) 등기일 3월내 차입	규정 없음	3월내 차입	3월내 차입	3월내 차입	3월내 차입	3월내 차입
공제한도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300만원 (300,1500, 1800만원)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 ❶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아래 공제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율	한도액
'16~'17년 이후 조합 투자분	10%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16~'17년 이후 벤처 투자분(1,500만원 이하분)	100%	
'16~'17년 이후 벤처 투자분(5,000만원 이하분)	50%	
'16~'17년 이후 벤처 투자분(5,000만원 초과분)	30%	
'18년 이후 조합 투자분	10%	
'18년 이후 벤처 투자분(3,000만원 이하분)	100%	
'18년 이후 벤처 투자분(5,000만원 이하분)	70%	
'18년 이후 벤처 투자분(5,000만원 초과분)	30%	

※ 단, 「조세특례제한법」 §16①-2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The screenshot shows the tax return software interface. The main window displays the '소득공제' (Tax Credit) section, with item '41. 투자조합출자 등' highlighted in red. A pop-up window titled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Investment Combination Investment Tax Credit) is open, providing detailed rules:

-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공제
- ② 금융기관코드가 없으면 'ZZZ' 입력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명도 공란입니다.
- ③ 계좌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공제율 (Tax Credit Rate) table:

투자시기	구분	공제율	공제한도	
'18년 이후	조합	10%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	3,000만원 이하분	100%	단, 「조세특례제한법」 §16①-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투자 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5,000만원 이하분	70%	
5,000만원 초과분	30%			

※ 벤처기업투자금액 한도 3백만원을 적용하는 경우는 공제금액을 직접입력합니다. 공제금액입력 이 경우 반드시 공제금액을 확인하시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1. 공제 대상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1의2 ①-5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2. 공제대상 사용 기간 및 공제대상 범위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자를 제외합니다.
-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됩니다.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봅니다.

### 3. 공제금액 및 한도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20년 3월 1일~ 7월 31일 사용분 80%)
-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20년 3월 1일~ 7월 31일 사용분 80%)
- ③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20년 3월 1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 7월 31일 사용분 80%)
-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 교통이용분 -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3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 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금액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 (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6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8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구분

-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30만원 중 적은 금액(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자는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30만원)을 한도로 하되,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최대 630만원 한도)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특법 §126의2④, 조특령 §121의2⑥)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비정상적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공과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6-1,3 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76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법정·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원천세과-305, 2011.5.25)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5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면세물품 구입비용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 전 아동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❶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분만 해당되므로 우리사주 이외의 주식 취득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 : 관계회사 주식취득 등)

※ 공제금액 :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❷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임금삭감액의 50%를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합니다.

○ 공제금액 : 임금삭감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50%

○ 한도 : 임금 삭감액의 50%, 연간 1,000만원 한도

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적용대상 :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종합소득 합산대상 타 소득이 있는 자 제외 (2015년 귀속부터 농특세 비과세))

○ 한도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연 납입한도 600만원)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소득공제 제외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❶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참고자료 :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	구분	공제액·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	
	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 (다만, 조특법 §16조① 3,4,6호에 따른 출자·투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Min [33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 + 100만원(대중교통) + 100만원(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8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230만원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은 1,500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1. 적용대상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종합한도 포함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개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투자분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 [세액감면]

### ❶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 ❷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원어민 교사)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받는 면세혜택은 100% 세액감면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면세되는 금액을 '조세조약란'에 기재합니다.(19% 단일세율 적용 또는 거주자의 연말정산 계산방법 중 선택하여 산출세액 계산 후 100% 세액감면)

❶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조특법 §3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재취업)일부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 7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 (청년 90%,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 2012 ~ 2013년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00% 적용(종료됨)

※ 2014 ~ 2015년 취업자의 경우 50%를 적용(세액 한도 없음)

①	산출세액	×	50% 감면급여계 총급여	×	50%
②	산출세액	×	70% 감면급여계 총급여	×	70%
③	산출세액	×	90% 감면급여계 총급여	×	90%

※ ②, ③의 감면세액은 150만원 한도

※ 감면세액계산: ①+ MIN(②+③, 150만원)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8년 개정 세법 적용 >

감면요건	당초	개정	비고
감면기간	3년	5년	취업일부 기산
감면율	70%	90%	
연령요건	15세~29세	15세~34세	근로계약 체결당시
일몰기한	2018년	2021년	

※ 개정 세법 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귀속 소득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사례>

[문1] 근로계약 체결 당시 32세이며, 2015.6.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 대상 기간은?

[답] 2018.1.1. ~ 2018.7.31. (90%)

\* 2015.6.5. ~ 2017.12.31. 기간은 감면 대상 아님

[문2] 근로계약 체결 당시 24세이며, 2015.7.1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 대상 기간은?

[답] 2015.7.10. ~ 2017.7.31. (50%), 2018.1.1. ~ 2020.7.31. (90%)

\* 2017.8.1. ~ 2017.12.31. 기간은 감면 대상 아님

❶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써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1.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개정된 감면기간(5년)은 2019.1.1.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19.1.1.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경우 종전(2년) 규정을 따름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써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❷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9)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감면대상자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감면대상 경영성과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함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 영업이익(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함)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3) 감면세액 계산

$$\left[ \frac{\text{종합소득}}{\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 \frac{\text{중소기업 취업자}}{\text{소득세 감면세액}} \right] \times \frac{\text{경영성과급}}{\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50\%$$

❶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⑥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에 2021.12.31.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중소기업 핵심인력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해당되지 않음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② ①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또는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감면세액계산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50\% (30\%)$$

❶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의3)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text{감면세액} =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times 5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참고자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Q-1) 청년 甲이 2017.1.1. 입사한 감면대상 중소기업(A)를 2020.6.30.일 퇴사 후,  
7.1. 감면대상 다른 중소기업(B)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90% (한도 150만원) 감면을 적용

- A회사 총급여액 : 10,000,000원
- B회사 총급여액 : 2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275,000원

A-1)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 ① 감면기간 5년, 감면을 90% 적용
-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총급여액/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 감면비율]  
= {500,000원 × (30,000,000/30,000,000) × 90%} = 450,000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감면비율\*)  
= 275,000원 × (1 - 450,000/500,000) = 27,500원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Q-2) 2017년 5월에 취업한 33세 청년의 2019년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A-2)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므로 2018.1.1.부터 2022.5.31.(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만, 2017년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님**

Q-3) 감면대상기간 증가로 인하여 2018년도에 감면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청년)의 경우 감면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하는지?

A-3) 법 개정 전에 이미 감면 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고자 하는 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세액공제]

❶ 근로소득세액공제

가. 세액공제 금액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 금 액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나.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 급 여 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
· 3천300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30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59①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급여비율\*)

\*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❷ 자녀세액공제

가. 기본공제대상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의 수	⇒	세 액 공 제 금 액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2)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00의30②)

#### 나. 출생·입양 공제대상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는 소득세법 §59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210, 2014.06.11.)

### ❶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 : 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 300만원)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미만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 세액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3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함)

즉, 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특별세액공제 요약 >

세 액 공 제		공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보 험 료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5%
의 료 비	㉔ 본인,장애인,만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급의료비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 (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비용(총급여 7천만원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 상 ㉔ 한도 제한 없음 ㉕ 연 700만원 한도	15% (난임시술비 20%)
	㉕ 그 외 부양가족			
교 육 비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등	전 액	15%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 액	
기 부 금	정치자금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초과 (15%, 25%)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우리사주+ 자정  15%(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 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지 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❶ 보험료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료(저축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를 입력  
하며 보장성 보험란에 공제대상 보험료 총액을 입력합니다.

※ 보험료 총액 중 한도 100만원을 자동 체크합니다.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이어야 합니다.

❶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전액을 입력하며 한도액 100만원을 자동 체크하여 한도 내 금액으로 <근로소  
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합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 ☞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 ❶ 의료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의료비 지출대상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가. ㉠ ≥ 총급여액 × 3%인 경우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 본인, 65세 이상 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 (총급여액 × 3% - ㉢)
㉢ 그 외 부양가족		다.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	㉠ - (총급여액 × 3% - ㉡ - ㉢)
	연 700만원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

####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 일반의료비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난임시술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여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진찰, 진료, 질병예방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용과 의약품(한약을 포함) 구입총액 및 장애인 보장구 (조특법 시행령 §105), 의료용구

2. 전액공제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난임시술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의료비 진찰, 진료, 질병예방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용과 의약품 구입총액 및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2015년부터 추가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의료비지급명세서 ⑫란에 입력

3. 의료비 입력

- 본인, 경로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료비 :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며 지출액 전액 공제됩니다. 단,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가 (총 급여 ×3%)에 미달 할 경우 해당금액 차감
- 그 밖의 공제 대상자의료비 : 일반 의료비를 입력합니다. [의료비지출액- (총급여 ×3%), 연 700만원 한도]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을 의료비 범위에서 제외  
 ※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내)

특별 세액 공제	60.보장성보험	0	>	
	61.의료비	0	>	
	62.교육비	0	>	
	63 기 부 금	정 치	10만원이하	>
		나.법정기부금	10만원초과	>
		다.우리사주기부금		>
		라.지정기부금(종교외)		>
	마.지정기부금(종교)		>	
	64.계			
	65.표준세액공제		>	

내역	지출액	실손의료보험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본인·장애인·65세이상·중증질환·결핵환자 등 난임시술자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합 계				

※ 작성방법 및 한도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중증질환자·회귀난치성질환자또는결핵환자·난임시술비해당자 : 지출액 전액공제  
 단,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가 (총급여 × 3%) 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금액 차감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 × 3%) 이대 연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5% (난임시술비는 2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한도) 총산 1회당 200만원  
 ※ [의료비]탭에서 의료비를 입력합니다.

확인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실손의료보험금)



### 참고사항

#### ● 실손의료보험금

- (개요)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제신고서 작성 Tip) 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
  -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 중 (1.15~2.28)까지 연말정산 간소화메뉴에서 실손의료비 제공예정
  -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참고사항

- 공제대상 의료비
  - 장애인이 보장구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예 : 의수족, 휠체어 등)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제출)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 ※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경부소득 46073-206, 2001.11.8.)
- 치열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서일 - 1334, 2005.11.03.)
  - ※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서 종업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서일 - 68, 2006.01.18.)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45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는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원천 - 471, 2009.02.12.).

● 교육비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한도액
근로자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기본공제대상자 (연령제한을 받지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1)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2)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3)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 ※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중· 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및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재료비 제외)를 포함
- ※ 체험학습비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1. 본인 교육비 (전액공제)

본인의 교육비 지출액을 입력합니다.(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포함)

2. 배우자 교육비

배우자의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자녀 등 교육비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입력하는 항목으로 [소득공제]-교육비란에 1.취학전 2.초중고 3.대학생 중 해당 학교를 선택한 후 일반교육비 또는 장애인교육비에 교육비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은 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입력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은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입력합니다.

4. 장애인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 교육비를 전액 공제합니다.

정산명세	소득명세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신용키	
관계 코드	성 명	기	이	교육비		
				구분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1	0 1	최대표 750315-*****	본인/세대주	본인		
2	4 1	신자녀 160101-*****	20세 이하	취학전	1. 취학전 00	
3	4 1	신일곱 120101-*****	20세 이하		2. 초중고	
4	4 1	신대답 110420-*****	20세 이하		3. 대학생	
계	4 명	4	0		300,000	0

교육비 ✕

내역		지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소득자 본인				
배우자	부			
취학전 아동	1명	300,000	300,000	45,000
초·중·고등학교	-명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장애인	-명			
합	계	300,000	300,000	45,000

※ 작성방법 및 한도  
 소득자 본인 : 지출액 전액 공제  
 취학전 아동 : 1인당 지출한 금액에 300만원까지 공제  
 초·중·고등학교 : 1인당 지출한 금액에 300만원까지 공제  
     교육구입비(중/고생 1명당 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초/중/고생 1명당 30만원 한도)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1인당 지출한 금액에 900만원까지 공제  
 장애인 : 지출액 전액 공제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5%

※ [소득공제]란에서 교육비를 입력합니다.

확인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원격대학 (일명 『사이버대학』)
  - ☞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예: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
  
- 학위취득과정 (04.1.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3①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 학습인정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9①-4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
  
- 대학의 시간제등록 학점취득비용 (2007.1.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은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음(고등교육법 §36)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2)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시설지정서 확인) 및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확인)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제외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받음
자녀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재라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참고자료 : 세액감면·공제 적용 순서

□ 세액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정치자금 기부금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주택차입금공제→월세액세액공제→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 \* (소득세법 §59의4④)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2013년에 지급한 기부금을 이월하여 소득 공제하는 경우 먼저 공제
- \* (소득세법 §59의4⑨)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특별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 \* (소득세법 §60) 세액감면·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서로 적용
- \* (소득세법 §6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❶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세액공제 계산 방법 (국세청 제공 자료)

※ 기부금 관련 프로그램 시 유의사항

공제 구분	공제 항목	내 용
소득공제	기부금(이월분)	○ '13년 지출분 중 이월된 기부금 ○ '특별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제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기부금과 '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 ○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공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1) 다음의 순으로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계산

-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법정기부금 (2013~2020년 지출분)
-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④ 지정기부금 (2013~2020년 지출분)

(2) 다음의 순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

-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이월 법정기부금(2013~2019) → ③ 당해연도 법정기부금 → ④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⑤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2013~2019) → ⑥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⑦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2014~2019) → ⑧ 당해연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3)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액 한도 및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입력 항목		입력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①정치 자금 기부금	소계	0원	0원 근로소득금액	0원 ㉠ + ㉡ + ㉢	0원 ㉠ + ㉡ + ㉢	
	10만원 이하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금액, 10만원)	㉠ 0원 대상금액 × 100/110	
	10만원 초과	소계		0원	0원 ㉡ + ㉢	0원 ㉡ + ㉢
		10만원 ~3천만원		0원	㉡ 0원 Max{Min(입력금액, 한도 금액, 3천만원) - 10만원, 0}	㉡ 0원 대상금액 × 15%
		3천만원 초과		0원	㉡ 0원 Max{Min(입력금액, 한도 금액) - 3천만원, 0}	㉡ 0원 대상금액 × 25%
②법정 기부금	소계	0원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0원 ㉠ + ㉡ + ㉢	0원 ㉠ + ㉡ + ㉢	
	이 월 분 ~ 당기	'14~'15년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 계액이 3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 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3천만원 이하 : 15% ㉢ 3천만원 초과 : 25%
		'16~'18년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 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 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30%
		'19년 이월분 ~당기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 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 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0원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30%	0원 Min(입력금액, 한도)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 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 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입력 항목		입력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②공제대상금액에는 13년 이월 법정기		㉞ 1천만원 초과 : 30%				
④지정 기부금	소계		0원	0원 ㉠ + ㉡ + ㉢	0원 ㉠ + ㉡ + ㉢				
	종교 단체외 기부금	이월분 ~ 당기	'14~'15년분	0원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30% (※ ②공제대상금액에는 13년 이월 법정기부금 포함)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3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3천만원 이하 : 15% ㉡ 3천만원 초과 : 25%		
			'16~'18년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30%
			'19년 이월분 ~ 당기분	0원					
	소계		0원	0원 ㉠ + ㉡ + ㉢	0원 ㉠ + ㉡ + ㉢				
	종교 단체 기부금	이월분 ~ 당기	'14~'15년분	0원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10%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3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3천만원 이하 : 15% ㉡ 3천만원 초과 : 25%		
			'16~'18년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30%
			'19년 이월분 ~ 당기분	0원					

(4) 지급명세서 기재 방법

- 1) '13년 이월 기부금은 “특별소득공제 중 기부금(이월분)” 항목에 기재
- 2)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기재
- 3) 세액공제액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초과분 구분 기재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의 각 항목별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기재

(5) 기부금 소득공제·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되는 시점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공제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차기 이월됨

사례) 소득금액 70,000,000원, 기부금액 전체 50,000,000원, 산출세액 10,000,000원

(1) 기부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이월액 계산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구 분		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초과 이월액
법정	당기	5,000,000	70,000,000	5,000,000	
	'15년이월	3,000,000		3,000,000	
	'18년이월	2,000,000		2,000,000	
우리사주		20,000,000	18,000,000	18,000,000	
지정 종교외	당기	3,000,000	12,200,000	3,000,000	
	'15년이월	2,000,000		2,000,000	
	'18년이월	3,000,000		3,000,000	
지정 종교	당기	5,000,000	12,200,000		5,000,000
	'15년이월	4,000,000		4,000,000	
	'18년이월	3,000,000		200,000	2,800,000
합 계		50,000,000		40,200,000	7,800,000

(2) 결정세액이 “0”이 되는 시점의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액(예시) : 7,950,000원

$$\begin{aligned}
 & \times \text{세액공제가능액} = \text{산출세액} - (\text{적용순서의 세액감면} \sim \text{월세액 세액공제까지의 합계}) \\
 & = 10,000,000 - (\text{세액감면} + \text{근로소득세액공제} + \text{자녀세액공제} + \text{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 \quad + \text{의료비세액공제} + \text{교육비세액공제} + \text{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text{표준세액공제} \\
 & \quad + \text{납세조합공제} + \text{주택차입금공제} + \text{월세액세액공제})
 \end{aligned}$$

(3) 공제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액(7,950,000원)까지의 세액공제액 계산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공제금액	공제율	세액공제액	공제초과 이월액
법정	당기	5,000,000	5,000,000	15%	750,000	
	'15년이월	3,000,000	3,000,000	15%	450,000	
	'18년이월	2,000,000	2,000,000	15%	300,000	
우리사주		18,000,000	18,000,000	30%	5,400,000	
지정 종교외	당기	3,000,000	0	30%	0	3,000,000
	'15년이월	2,000,000	2,000,000	15%	300,000	
	'18년이월	3,000,000	2,500,000	30%	750,000	500,000
지정 종교	'15년이월	4,000,000	0	-	0	4,000,000
	'18년이월	200,000	0	-	0	200,000
합 계		40,200,000	32,500,000		7,950,000	7,700,000

(4) 이월액 = 15,500,000원 (한도초과이월액 7,800,000원, 공제초과이월액 7,700,000원)

● 기부금 유형

1. 법정기부금 - 특별공제(법법 §24②, 소법§34②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치

2. 정치자금기부금 - 세액공제(조특법 §76)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중 3천만원까지는 15%, 초과분은 25%를 공제함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세액공제전환(조특법 §88의 4⑬)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4. 지정기부금 (30% 기부금)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 등 공익성(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5. 지정기부금 (10% 기부금) : 종교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76)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법정기부금 (소법 §34②)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초과분 30%)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88의4 ③)	(근로소득금액 - ①-②) × 30%	
④ 지정기부금(소법 §34조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 10% +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의 20% 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금액* 중 적은금액] * 당해년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⑤ 지정기부금(소법 §34조①)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 30%	

※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 6. 기부금 소득·세액공제 적용순서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 한다.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 순서
  - ① 이월된 기부금 공제
    -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 적용
  - ②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14년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순서

이월 법정기부금(2014~2019) → 당해연도 지출 법정기부금(2020) →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2014~2019) →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2020) →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2014~2019) →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2020)

- ※ 2015.12.31. 이전 기부금을 지출한 거주자가 2016.1.1. 이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재부 소득세제과-473. 2017.10.11.)



## 참고사항

-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기부금의 이월공제 허용기간**  
5년 → 10년으로 변경됨 (2013.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 ① 법정기부금 : 10년
  - ② 지정기부금 : 10년
  -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를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2 서식 07.4.17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부금명세서 제출 (2005.1.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 ① 작성대상 : 공제 받는 기부금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기부금 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제출
  - ② 제출방식 : 국세청홈택스 서비스(HTS)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 3①)**
  - ① 발급대상 작성의무자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 공제대상단체
  - ② 작성대상 :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
    - ※ 2010년 1월 1일부터는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 ③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④ 발급대상 의무적 보관기간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⑤ 발급내역 제출의무 : 국세청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
  
-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소법 §81②)**
  -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❶ 납세조합공제

1.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
2. 공제금액 :
  - 매월분의 급여 지급 시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연말정산 시 :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92, 2005.1.27.)

❶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구 조감법 §92의4)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1995.11.1.~1997.12.31. 기간 중 (구)조세감면규제법 §67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을 입력합니다.

1. 공제대상주택 : 미분양주택의 범위(구 조세감면규제법 §67의2, 동법시행령 §64의2)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2. 차입금의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3. 공제기한 : 상환완료 시 까지
4. 공제금액 :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 입력된 이자상환액의 30%한도로 주택자금 이자세액공제로 자동 반영됩니다.
  - ※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에 해당

## ❶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가능

### 3. 공제율 (세액공제 대상금액 750만원 한도)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0%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 12%

※ [세법개정안]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탭 별 설명』

연말정산입력과 관련한 정산명세, 소득명세(연말/종전), 소득공제명세를 확인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마감 및 인쇄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❶ 정산명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산명세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하는 탭입니다.

구분	공제대상액	구분	공제대상액
21. 총 급여액(16)	50,000,000	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2. 근로소득공제	12,250,000	48. 종합소득과세표준	36,115,000
23. 근로소득금액	37,750,000	49. 산출세액	4,337,250
24. 본인	1,500,000	50. 『소득세법』	
25. 배우자		51. 조세특례제한법(52제외)	
26. 부양가족	--명	52. 중소기업취업자감면/조특30	
27. 경로우대	--명	53. 조세조약(원어민교사)	
28. 장애인	--명	54. 세액감면계	
29. 부녀자			
30. 한부모가족			
31. 국민연금보험료	135,000	세액공제구분	세액공제액
32. 가. 공무원연금		55. 근로소득	660,000
나. 군인연금		56. 공제대상자녀	--명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출산입양	--명
라. 별정우체국연금		연금계좌	
33. 가. 건강보험	110,300	57. 과학기술인공제	
나. 고용보험	400,000	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4. 주택 -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59. 연금저축	
15년미만		60. 보장성보험	0
11년미전		61. 의료비	0
15~29년		62. 교육비	0

작업연도 기간 중에 중도 퇴사한 사원의 연말정산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중도]에서 입력하고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연말]에서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시 연말정산 구분에 해당 내용이 계속근로1, 중도퇴사2로 반영됩니다. [총괄]은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을 한 번에 입력하거나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❶ 소득명세(연말/종전)

정산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한 명세를 보여줍니다.

❷ 과세대상 추가금액

급여성 대가로 급여자료입력에 포함하여 지급이 안 된 경우 과세 대상에 추가할 금액 또는 제외할 금액을 연말에 입력합니다.

※ 제외 할 금액은 음수(-)로 입력합니다.

❸ 종전 근무지, 납세조합

1. 종(전)근무지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참조하여 입력합니다. 현근무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상단의 **전체비과세** 를 클릭한 후 해당 비과세 항목을 입력합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 2. 이종 근로자

근무처가 2 이상인 이종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근무지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사원(F7)	자동 재계산음..	표준세액공제 비교(Ctrl+F10)	마감(F3)	재계산	완료(F4)	해제(Ctrl+F4)	기능모음(F11)						
종도	연말	출발	정산년월	2020	년 01	월 ~	2021	년 02	월	전체비과세	종전근무지입력	정렬: 1.코드순		
<input type="checkbox"/> 코드	사원명	구분	완료	의기신	중소	정산명세								
<input type="checkbox"/> 20	최일동	연말	미완료	소득명세										
<input type="checkbox"/> 30	박일동	연말	미완료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40	박이동	연말	미완료	의료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3	미종전	연말	미완료	기부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연금투자명세										
				월세액명세										
인원 (마감인원)				4	(0)	구분/항목								
총급여액				486,000,000		계	11월	12월	연말	종전1				
비과세총계				65,000,000		15-2.우리사주조합인출금								
제출비과세				20,000,000		15-3.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액								
감면소득계				45,000,000		15-4.직무발명보상금								
결정세액				106,335,415		16.급여계	61,000,000	40,000,000	5,000,000		16,000,000			
기납부세액(현)				20,787,220		18-32.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90%	45,000,000	40,000,000	5,000,000					
기납부세액(종전)				170,000		20-1.감면소득계	45,000,000	40,000,000	5,000,000					
납부세액				85,378,190		미제출비과세								
						건강보험료	2,110,000	1,800,000	160,000		150,000			
						장기요양보험료	215,900	184,500	16,400		15,000			
						국민연금보험료	2,070,000	1,700,000	170,000		200,000			
						고용보험료	383,000	320,000	40,000		23,000			
						소득세	3,020,470	2,500,000	350,470		170,000			
						지방소득세	302,040	250,000	35,040		17,000			
						근무기간(시작일)					2020-01-01			
						근무기간(종료일)					2020-04-30			
						감면기간(시작일)								
						감면기간(종료일)								
						종전근무지영수증제출여부					제출			
						이종전	<input type="checkbox"/> 0.내국민	931107-*****	단일세출	<input type="checkbox"/> 0.부	<input type="checkbox"/> 0.거주자	KR	대한민국	
						생산직여부	<input type="checkbox"/> 0.부	연장근로비과세	<input type="checkbox"/> 0.부	국외근로적용	<input type="checkbox"/> 0.부	부서		
						귀속년도	2020-05-15	~	2020-12-31	감면기간		~	영수일자	2021-02-28

### ❶ 비과세금액 입력

#### 1. 지급명세서제출 비과세 (연말, 종전 입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표기되는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및 감면금액을 입력합니다.

2. 지급명세서미제출(연말, 종전 입력)

당기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대상의 금액을 필요에 따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미제출 비과세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❶ 소득공제명세

당해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 받을 항목이 있는 부양가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사원(F7) 자동 재계산... 표준세액공제 비교(Ctrl+F10) 마감(F3) 재계산 완 료(F4) 해제(Ctrl+F4) 기능모음(F11)

종도 연말 총괄 정산년월 2020년 01월 ~ 2021년 02월 월 소득공제신고서액셀업로드 정렬: 1, 코드순

코드	사원명	구분	완료	의 기 신 종 소
<input type="checkbox"/>	20	최일동	연말 미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30	박일동	연말 미완료	
<input type="checkbox"/>	40	박이동	연말 미완료	
<input type="checkbox"/>	113	이종전	연말 미완료	○

관계 코드	성 명	기 부 한 장 경 출 산 자 구	보험료			
			건강	고용	보장성	
0	박일동	본인/세대주				1,000,000
1	700516-*****					
8	박세롬	20세 이하				
1	001512-*****					
8	직접입력	20세 이하				
1	010101-*****					
계			3명	3	0 0 0 0 0 0 2	국세청 0 0 1,000,000 기타 422,800 200,000 0

인 원 (마감인원) 4 (0) 명  
 총 급 대 액 486,000,000 원  
 비 과 세 총 계 65,000,000 원  
 제 출 비 과 세 20,000,000 원  
 감 면 소 득 계 45,000,000 원  
 결 정 세 액 106,335,415 원  
 기 납 부 세 액 ( 현 ) 20,787,220 원  
 기 납 부 세 액 ( 종 전 ) 170,000 원  
 납 부 세 액 85,378,190 원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등은 공제 대상 실제 지출금액 입력. [교육비공제]는 [학생구분]입력요망  
 ※ 관 계 : 0.소득자본인 1.소득자의 직계존속 2.배우자의 직계존속 3.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입양자) 4.직계비속(자녀,입양자) 5.직계비속(코드 4제외) 6.형제자매 7.수급자 (코드1~6제외) 8.위탁아동  
 ※ 《기본코드 : 6.가족수급》을 선택한 부양가족은 관계코드를 : 7. 수급자 로 입력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에 입력후 사원등록에서 [전년도 자료 불러오기 - 전년도 부양가족]을 입력하면 데이터가 변경됩니다. 반드시 전년도부양가족을 반영후 연말정산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 소득공제명세서의 인적공제 항목과 『사원등록』의 부양가족 명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단 각 기능버튼 설명』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사원(F7) 자동 재계산음, 표준세액공제 비교(Ctrl+F10) 마감(F3) 재계산 완 료(F4) 해제(Ctrl+F4) 기능모음(F11)

중도 연말 출괄 정산년월 2020 년 01 월 ~ 2021 년 02 월 소득공제신고서역셀업로드 정렬: 1,코드순

코드	사원명	구분	완료	의기신	중소
<input type="checkbox"/> 20	최일동	연말	미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30	박일동	연말	미완료		
<input type="checkbox"/> 40	박이동	연말	미완료		
<input type="checkbox"/> 113	미중전	연말	미완료		○

정산명세	소득명세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투자명세	월세액명세						
관계 코드	성 명	기	부	한	장	경	출	자	구	보험료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본	녀	부	매	로	입	양	녀	분	건강	고용	보장성
0	박일동	본인/세대주								국세청			1,000,000
1	700516-*****									기타	422,800	200,000	
8	박세를	20세 이하								○ 국세청			
1	001512-*****									○ 기타			
8	직접입력	20세 이하								○ 국세청			
1	010101-*****									○ 기타			
4										국세청			
										기타			
계	3명	3	0	0	0	0	0	0	2	국세청	0	0	1,000,000
										기타	422,800	200,000	0

인 원 (마감인원)	4	(0)	명
총 급 대 액	486,000,000 원		
비 과 세 총 계	65,000,000 원		
제 출 비 과 세	20,000,000 원		
감 면 소 득 계	45,000,000 원		
결 정 세 액	106,335,415 원		
기 납 부 세 액 ( 현 )	20,787,220 원		
기 납 부 세 액 ( 중 전 )	170,000 원		
납 부 세 액	85,378,190 원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등은 공제 대상 실제 지출금액 입력, [교육비공제]는 [학생구분]입력요망  
 ※ 관 계 : 0. 소득자본인 1. 소득자의 직계존속 2. 배우자의 직계존속 3. 배우자 4.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5. 직계비속(코드 4제외) 6. 형제자매 7. 수급자 (코드1~6제외) 8. 위탁아동  
 ※ 《기본코드 : 6. 기초수급》을 선택한 부양가족은 관계코드를 : 7. 수급자 로 입력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에 입력후 사원등록에서 [전년도 자료 불러오기 - 전년도 부양가족]을 입력하면 데이터가 변경됩니다. 반드시 전년도부양가족을 반영후 연말정산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 전사원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전체 사원을 불러옵니다. 중도 탭에서 클릭하면 중도 퇴사에 해당하는 당해 퇴사자를, 연말 탭에서 클릭하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계속 근무자를 모두 불러옵니다.

● 표준세액공제 비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②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후 결정세액

②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시 결정세액

-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 이하분, 10만원 초과분 제외), 월세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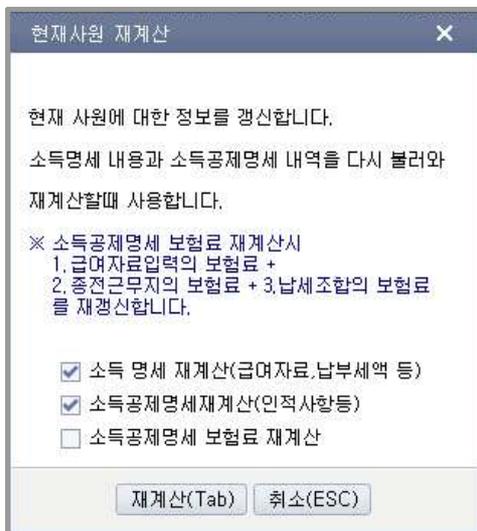
## ❶ 마감 / 마감해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감하여 전자신고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 ※ 전자신고 시 전사원 전체를 신고하는 경우 총괄로 마감합니다.
- ※ 차감소득금액이 0인 경우는 그 이후의 소득공제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며,
- ※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 마감(마감해제)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마감(마감해제)시 같이 마감(마감해제)됩니다.

## ❷ 재계산

해당 사원에 대한 정보와 소득명세를 다시 불러와 계산합니다.



1. 현재 사원과 전체 사원을 선택하여 재계산 할 수 있습니다.
2. 사원등록에 입력된 부양가족 명세와 소득명세에 대해 선택하여 재계산 할 수 있습니다.

## ❸ 재계산 옵션

재계산에 대한 조건(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원 선택 시 자동 재계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❹ 불러오기

소득공제신고서와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탭에서 작성된 내용을 불러옵니다. 정산명세는 재계산되며 기존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 ① 완료 / 해제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완료했다는 의미로 [완료]로 적용한 사원은 재계산, 금액변경, 입력, 삭제를 할 수 없으며, [해제]를 해야만 수정 가능합니다.

### ① 비과세항목별총계 (기능모음 - 비과세항목별총계)

[중도] [연말] [총괄]에 입력된 총인원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 항목별 총금액을 조회하고 출력합니다.

### ① 인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명세서, 신용카드신청서, 기부금명세서를 출력합니다.

의료비명세서, 신용카드신청서, 기부금명세서는 해당 탭에서 인쇄합니다.

### ① 조건검색

다양한 검색조건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사원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건검색 후 [조건검색해제]를 하여 입력화면으로 복귀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검색

정 산 년 월 2020 년 01 월 ~ 2021 년 02 월

내 / 외 국 인 구 분 0.전체

거 주 구 분 0.전체

단 일 세 율 적 용 0.전체

표 준 세 역 공 제 적 용 0.전체

중 소 기 업 취 업 감 면 0.전체

부서코드 [ ] ? [ ] ~ [ ] ? [ ]

검색(Tab) 취소(Esc)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사원(F7)	자동 재계산...	표준세액공제 비교(Ctrl+F10)	마감(F3)	재계산	완료(F4)	해제(Ctrl+F4)	기능모음(F11)					
종도	연말	출발	정산년월	2020	년 01	월 ~	2021	년 02	월					
조건검색해제		공제신고서인쇄		편리한연말정산		정렬: 1.코드순								
코드	사원명	구분	완료	의기신	종소	정산명세	소득명세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투자명세	월세액명세	
40	박이동	연말	미완료			34. 주택	11년미전 차입분	15~29년					61. 의료비	0
						소	나. 장기주택 차입분 (15년이상)	고정or비거치					62. 교육비	0
						공	12년미후 차입분 (15년이상)	고정&비거치					63. 기부금	10만원이하
						제	15년미후 차입분 (15년이상)	고정or비거치					나. 법정기부금	10만원초과
						제	15년미후 차입분 (10~15년)	고정or비거치					다. 우리사주기부금	
						35. 기부금(이월분)							라. 지정기부금(종교외)	
						36. 계							마. 지정기부금(종교)	
						37. 차감소득금액			36,115,000				64. 계	
						38. 개인연금저축							65. 표준세액공제	130,000
						39.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66. 납세조합공제	
						40. 가. 청약저축							67. 주택차입금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68. 외국납부	
						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69. 월세액	
						41. 투자조합출자 등								
						42. 신용카드등			0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44.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70. 세액공제계	790,000
													71. 결정세액(49-54-70)	3,547,250

< 부표 > 의료비지급 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국세청의 전자신고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귀속분은 2020년 1월~2020년 12월의 지출분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기간으로 합니다.

< 부표 > 기부금 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받는 기부금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국세청홈텍스서비스(HTS) 또는 전산매체로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고용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코드유형이 일치할 경우 합산되어 보입니다.
- ※ 기부금 유형코드를 입력하면 하단의 해당 기부금의 합계가 보여 집니다.
- ※ 근로자 기부금 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이월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지정기부금 10년, 법정기부금 10년
- ※ 전자신고시 기부금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부표로 추가(2017년 귀속부터)

< 부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전자신고 제출 제외 서식)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원별 개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직원신용카드경비사용명세서]의 금액을 반영합니다. 해당 금액을 확인하여 회사경비에 사용된 금액을 차감후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Credit Card Income Tax Deduction Application Form) in a tax software interface. The main window displays the following data:

- 카드등경비사용액:** 5,840,000
- 차감:** 내역보기
-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9,000,000

The application form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 [1. 회사경비 차감됨]** (Company Expense Deduction):
 

신용카드등 회사 경비사용액		
① 신용카드	3월 사용액	1,000,000
	4~7월 사용액	3,000,000
	그외 사용액	1,220,000
	소계	5,220,000
② 현금영수증	3월 사용액	70,000
	4~7월 사용액	200,000
	그외 사용액	350,000
	소계	620,000
<b>합계</b>		<b>5,840,000</b>
- [2. 회사경비 차감안됨]** (Company Expense Not Deducted):
 

회사경비 차감전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액		
① 신용카드(국)	3월 사용액	1,000,000
	4~7월 사용액	1,000,000
	그외 사용액	1,000,000
	소계	3,000,000
② 신용카드(기)	3월 사용액	1,000,000
	4~7월 사용액	1,000,000
	그외 사용액	1,000,000
	소계	3,000,000
③ 현금영수증	3월 사용액	1,000,000
	4~7월 사용액	1,000,000
	그외 사용액	1,000,000
	소계	3,000,000
<b>합계</b>		<b>9,000,000</b>

Additional notes and instructions are provided at the bottom of the form:

- ※ 회사경비를 차감후 회사경비로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하면 [차감취소]후 [차감적용]을 재적용하여 재계산하도록 합니다.
- [차감액틀림]이라고 표시되면 차감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e interface also shows various tax calculation fields on the right side, including '공제제외금액' (Excluded Deduction Amount) and '최저 (39) 5%' (Minimum 39% 5%).

## II-5. 직원신용카드경비사용명세서

사원별 개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일반전표 및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불러와 조회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전표에서 불러온 데이터는 금액편집만 가능하며, 전표에서 불러오지 않고 직접입력도 가능합니다.)

직원신용카드경비사용명세서				일반전표 불러오기 설정	회계사원등록[F6]	사원별 불러오기[F8]	전체사원 불러오기[F7]	기능모음(F11)					
<input type="checkbox"/>	인사코드	사원명	회계코드	사용금액	* 일반전표 현금영수증 사용분 포함여부 : 포함								
<input type="checkbox"/>	20	최일동	2020	5,840,000	* 일반전표 3만원 이하 경비사용분 적요로 불러오기 : 부								
<input type="checkbox"/>	30	박일동	2030		전표	전표일자	코드	계정과목	사용금액	구분	코드	카드명	카드번호
<input type="checkbox"/>	40	박이동	2040		일반	2020-01-02	811	복리후생비	100,000	현금	99600	최일동	4215-5125-2114-5555
<input type="checkbox"/>	50	미일동	2050		일반	2020-02-02	811	복리후생비	70,000	현금	99600	최일동	4215-5125-2114-5555
<input type="checkbox"/>	60	정일동	2060		일반	2020-02-05	811	복리후생비	180,000	카드	99600	최일동	4215-5125-2114-5555
<input type="checkbox"/>	70	송일동	2070		일반	2020-03-02	811	복리후생비	70,000	현금	99600	최일동	4215-5125-2114-5555
<input type="checkbox"/>					일반	2020-03-05	811	복리후생비	1,000,000	카드	99600	최일동	4215-5125-2114-5555
<input type="checkbox"/>					일반	2020-04-02	811	복리후생비	100,000	현금	99600	최일동	4215-5125-2114-5555
<input type="checkbox"/>					일반	2020-04-05	811	복리후생비	300,000	카드	99600	최일동	4215-5125-2114-5555
<input type="checkbox"/>					일반	2020-05-02	811	복리후생비	200,000	카드	99600	최일동	4215-5125-2114-5555
<input type="checkbox"/>					일반	2020-06-05	811	복리후생비	2,000,000	카드	99600	최일동	4215-5125-2114-5555
<input type="checkbox"/>					일반	2020-07-02	811	복리후생비	100,000	현금	99600	최일동	4215-5125-2114-5555
<input type="checkbox"/>					일반	2020-07-05	811	복리후생비	500,000	카드	99600	최일동	4215-5125-2114-5555
<input type="checkbox"/>					일반	2020-08-02	811	복리후생비	60,000	현금	99600	최일동	4215-5125-2114-5555
<input type="checkbox"/>					일반	2020-08-05	811	복리후생비	300,000	카드	99600	최일동	4215-5125-2114-5555
					카	드			5,220,000				
					현금영수증				620,000				
					합	계			5,840,000				
계속근로자		6명		5,840,000원	① 사원을 선택시 회계사원등록(F6)에 입력된 사원의 회계전표를 반영합니다.								
퇴사자		0명		0원	② 카드사용금액이 있는 사원을 기준으로 상단의 정렬방법으로 정렬됩니다. (코드순, 입력순 등)								
합		6명		5,840,000원	③ 카드사용금액이 있는 사원을 기준으로 인원수, 금액이 집계되고 출력됩니다.								
					④ 일반전표의 3만원 이하 경비사용분은 해당 전표의 적요란에 카드 사용분은 '직원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직원현금영수증' 키워드를 포함하는 경우 불러옵니다.								
					([일반전표 불러오기 설정] > [일반전표 3만원 이하 경비사용분 적요로 불러오기] 에 체크후 불러오기 합니다.)								

- ① 일반전표 및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개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하여 해당 회계사원 코드를 관리항목에 입력합니다. (일반전표의 경우 카드계좌에 '2.현금영수증 또는 3.개인신용카드 (개인회사인 경우 1.신용카드)'로 설정되어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며, 법인인 경우 카드계좌에 1.신용카드로 입력된 전표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 ② 직원신용카드사용경비명세서 메뉴에서 [회계사원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인사사원코드와 회계사원 코드를 연결 설정합니다.
- ③ 좌측 사원리스트에서 코드도움 또는 [전체사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원을 불러오면 [회계사원등록]에 설정된 코드로 전표데이터를 불러옵니다.
- ④ 사원 및 데이터 불러오기 후 회계전표데이터를 수정 또는 삭제, 추가입력 한 경우 [사원별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원별로 데이터를 새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⑤ 일반전표 불러오기 설정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 ☞ 일반전표 현금영수증 사용분 포함여부  
일반전표의 현금영수증 사용분 불러오기 여부를 설정합니다.
- ☞ 일반전표 3만원 이하 경비사용분 적으로 불러오기  
일반전표 3만원 이하 경비사용분 전표지만, 적요란에 ‘직원카드’ 또는 ‘직원현금영수증’ 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전표를 불러올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 II-6.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Income Statement by Taxpayer) application. The main window shows a list of monthly payments from January to December 2020, with a total of 36,000. A smaller window in the foreground shows the '원천징수' (Withholding) settings, including '연상액' (Withholding Allowance) set to 100,000. Another window on the right shows a detailed summary table of the income statement.

월	지급일	급여액	상여액	연봉상여	근로소득원천징수액	우려사유조합의 출금	합계합의소득금액	제한소득금액	22
01월	2020-01	3,000,000							
02월	2020-02	3,000,000							
03월	2020-03	3,000,000							
04월	2020-04	3,000,000							
05월	2020-05	3,000,000							
06월	2020-06	3,000,000							
07월	2020-07	3,000,000							
08월	2020-08	3,000,000							
09월	2020-09	3,000,000							
10월	2020-10	3,000,000							
11월	2020-11	3,000,000							
12월	2020-12	3,000,000							
연말									
합계		36,000,000							

- ① 지급일자 : <급여자료입력>의 지급 일자를 재조회합니다. 지급 일자를 수정한 경우 급여의 지급 일자를 다시 반영할 때 사용합니다.
  - ② 급여자료입력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기부금(노동조합비)은 출력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는 기부금란에 금액이 합산됩니다.)
- ※ 인쇄 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지급명세(총급여),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등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II-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I-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일 보내기 | 마감(F4) | 불러오기(F3) | 저장(Ctrl+S) | One-Shot(Ctrl+O) | 기능모음(F11)

귀속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 지급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 0.정기신고

1.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 2. 귀속연월 202102 | 3. 지급연월 202102 | 4. 월급납부  여  부 | 사업자단위  여  부

원천징수내역	구분	코드	소득지급(과세미달,비과세포함)			징수세액			9. 당월 조정 환급세액	10.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 농어촌 특별세
			4. 인원	5. 총지급액	6. 소득세 등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3	10,000,000	485,11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합계	A04	3	120,000,000	-1,984,540						
	연말납부금액	A05									
	연말납부금액	A06			-1,984,540						
퇴직소득	가감계	A10	6	130,000,000	-1,499,430						
	연금계좌	A21									
	그외	A22									
사업소득	가감계	A20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기타소득	가감계	A30									
	연금계좌	A41									
	종교매월징수	A43	1	5,000,000	248,520						
	종교연말정산	A44	1	50,000,000	-715,140						
합계	가감계	A40	2	55,000,000	-466,620						
	연금계좌	A48									

전월미환급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18. 조정대상환급 (14+15+16+17)	19. 당월 조정 환급액계	20. 차월미환급액 (18-19)	21. 환급신청액
12. 전월미환급	13. 기환급신청	14. 잔액 12-13	15. 일반환급	16. 신탁재산	17. 금융등	17. 합병등				
			1,966,050				1,966,050		1,966,050	

- 근로소득 계속근무자 및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을 조회하려면 귀속과 지급연월을 2021년 2월로 입력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의 정산연월이 2021년 2월인 사원 중, 퇴사일이 입력된 사원의 경우 근로소득은 중도퇴사(A02)란으로, 종교인소득은 종교연말정산(A44)란에 합계가 됩니다.
- 근로소득의 연말정산합계(A04), 사업소득의 연말정산(A26),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A44)란에 인원 및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1. 신고구분]의 『연말』란은 체크되지 않습니다.
- 반기의 경우
  - 상반기 제출(7월 12일)하는 신고서는 귀속연월이 1월, 지급연월이 6월로 표기되고
  - 하반기 제출(익년 1월 10일)하는 신고서는 귀속연월이 7월, 지급연월이 12월로 표기됩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원천징수미행상환신고서 #매일 보내기 마감(F4) 불러오기(F3) 저장(Ctrl+S) One-Shot(Ctrl+O) 기능모음(F11)

귀속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지급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0.정기신고

1.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2. 귀속연월 202102 3. 지급연월 202102 일괄납부  여  부 사업자단위  여  부

원천징수내역 부표-거주자 부표-비거주자 부표-법인원천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전월미환급조정 차월미환급계

구분	코드	소득지급(과세미달,비과세포함)		징수세액			9. 당월 조정 환급세액	10.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 농어촌 특별세
		4. 인원	5. 총지급액	6. 소득세 등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3	10,000,000	485,11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합계 A04	3	120,000,000	1,984,540					
	연말분납금액 A05								
	연말납부금액 A06			1,984,540					
가감계 A10	6	130,000,000	2,469,650			466,620	2,003,03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1	3,500,000	200,000					
	연말정산 A26	1	40,000,000	1,000,000					
	가감계 A30	2	43,500,000	1,200,000				1,200,00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매월징수 A43	1	5,000,000	248,520					
전월미환급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18. 조정대상환급 (14+15+16+17)		19. 당월 조정 환급액계	20. 차월미환 환급액(18-19)	21. 환급신청액
12. 전월미환급	13. 기환급신청	14. 잔액 12-13	15. 일반환급	16. 신특재산	17. 금융등	17. 합병등	466,620	466,620	

1.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조회하려면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2021년 2월로 입력합니다.
2.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전기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신규개업자 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배달원이 지급받는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므로 연말정산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주의하여 작성합니다.



예 제

< 급여조건 등 : 종업원 10명 >  
 2020년 연간 지급액 : 300,000,000원 (연말정산결과 3,500,000원 환급 발생)  
 월 급여 : 35,000,000원 (간이세액에 의한 세액 : 60만원 ) ※ 매월 동일

<<조건 ① : 2021년 2월분의 급여 등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

- 월별납부자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 연말정산	2021년 2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 보내기 | 마감(F4) | 불러오기(F3) | 저장(Ctrl+S) | One-Shot(Ctrl+O) | 기능모음(F11)

귀속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 지급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 0.정기신고

1.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 2. 귀속연월 202102 | 3. 지급연월 202102 | 월별납부  매  부 | 사업자단위  매  부

구분	코드	소득지급(과세미달, 비과세포함)	정수세액
		4. 인원	5. 총지급액
과세표준	간이세액	A01	1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합계	A04	10
	연말분납금액	A05	
	연말분납금액	A06	
과세표준	가감계	A10	20
	연금계좌	A21	
과세표준	그외	A22	
	가감계	A20	
과세표준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과세표준	연금계좌	A41	
	종교매월징수	A43	

전월미환급세액의 계산 | 당월 발생 환급세액 | 18. 조정대상환급 (14+15+16+17) | 19. 당월조정 환급액계 | 20. 차월미환급액(18-19) | 21. 환급신청액

12. 전월미환급 | 13. 환급신청 | 14. 잔액 12-13 | 15. 일반환급 | 16. 신탁재산 | 17. 금융등 | 17. 합병등 | 18. 조정대상환급 (14+15+16+17) | 19. 당월조정 환급액계 | 20. 차월미환급액(18-19) | 21. 환급신청액

- 반기별납부자 [연말정산 환급신청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 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21년 1-2월	2021년 1-2월	2021년 3월 10일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연말환급신고>

<연말 환급 후 정기신고>

※ 1-2월 귀속 분은 연말 정산 시 기반영하여 신고했으므로 신고제외하고 3월~6월 귀속분을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정상 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21년 1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12일

<<조건 ② : 2021년 1월분의 급여 등을 2월에 지급 (전년도 12월분은 1월 지급) >>

◎ 월별납부자 (각각 한 장씩 작성 -> 귀속기준으로 두 장 제출)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1월 귀속분)	2021년 1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10일
연말정산	2021년 2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10일

※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조정 환급하는 경우 2021년 1월 귀속분에서 조정 (동시 신고)

<연말 정산 분>

구분	코드	소득지급 (과세미달, 비과세포함)		징수세액			9. 당월 조정 환급세액	10.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 농어촌 특별세
		4. 인원	5. 총지급액	6. 소득세 등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연말정산합계	A01								
	A02								
	A03								
	A04	10	300,000,000	-3,500,000					
	A05								
	A06				-3,500,000				
가감계	A10	10	300,000,000	-3,500,000					
연금계좌	A21								
	A22								
	A20								
매월징수	A25								
	A26								
	A30								
연금계좌	A41								
	A43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18. 조정대상환급 (14+15+16+17)	19. 당월조정 환급액계	20. 차월미환급액(18-19)	21. 환급신청액
12. 전월미환급	13. 기환급신청	14. 잔액 12-13	15. 일반환급	16. 신착재산	17. 금융등	17. 합병등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1월 귀속 분>

원천징수내역상환신고서 #매월 보내기 마감(F4) 불러오기(F3) 저장(Ctrl+S) One-Shot(Ctrl+O) 기능모음(F11)

귀속기간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지급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0.정기신고

1.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2. 귀속연월 202101 3. 지급연월 202102

구분	코드	소득지급(과세미달, 비과세포함)			정수세액			9. 당월 조정 환급세액	10.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 농어촌 특별세	
		4. 인원	5. 총지급액	6. 소득세 등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개소:비내주	간이세액 A01	10	35,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합계 A04										
	연말분납금액 A05										
	연말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10	35,000,000	600,000				600,000				
개소: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소득: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매월징수 A43										
	가감계 A40										
전월미환급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18. 조정대상환급 (14+15+16+17)			19. 당월 조정 환급액계	20. 차월미환급액(18-19)	21. 환급신청액	
12. 전월미환급	3,500,000	13. 기환급신청	3,500,000	14. 잔액12-13	15. 일반환급	16. 신학자금	17. 금융통	17. 합계	3,500,000	600,000	2,900,000

※ 귀속과 지급이 다른 경우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먼저 작성한 후, 1월 귀속 급여분을 작성해야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1월 귀속 급여분 신고서의 12.전월미환급세액으로 반영됩니다.

◎ 반기별납부자 (각각 한 장씩 작성 -> 귀속기준으로 두 장 제출)

연말정산 환급 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년12월-21년1월	21년1월-21년2월

↳ ※ 2020년 12월분과 연말정산분을 함께하여 신고합니다.

구분	코드	소득지급(과세미달, 비과세포함)			정수세액			9. 당월 조정 환급세액	10.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 농어촌 특별세
		4. 인원	5. 총지급액	6. 소득세 등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개소:비내주	간이세액 A01	10	70,000,000	1,2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합계 A04	10	300,000,000	-3,500,000						
	연말분납금액 A05									
	연말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20	370,000,000	-2,300,000							
개소: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소득: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매월징수 A43									
	가감계 A40									
전월미환급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18. 조정대상환급 (14+15+16+17)			19. 당월 조정 환급액계	20. 차월미환급액(18-19)	21. 환급신청액
12. 전월미환급	2,900,000	13. 기환급신청	2,900,000	14. 잔액12-13	15. 일반환급	16. 신학자금	17. 금융통	17. 합계	2,900,000	2,900,000

원천징수내역상환신고서 #매월 보내기 마감(F4) 불러오기(F3) 저장(Ctrl+S) One-Shot(Ctrl+O) 기능모음(F11)

귀속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05월 지급기간 2021년 03월 ~ 2021년 06월 0.정기신고

1.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2. 귀속연월 202101 3. 지급연월 202106

구분	코드	소득지급(과세미달, 비과세포함)			정수세액			9. 당월 조정 환급세액	10.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 농어촌 특별세	
		4. 인원	5. 총지급액	6. 소득세 등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개소:비내주	간이세액 A01	10	140,000,000	2,4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합계 A04										
	연말분납금액 A05										
	연말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10	140,000,000	2,400,000				2,400,000				
개소: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소득: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매월징수 A43										
	가감계 A40										
전월미환급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18. 조정대상환급 (14+15+16+17)			19. 당월 조정 환급액계	20. 차월미환급액(18-19)	21. 환급신청액	
12. 전월미환급	2,900,000	13. 기환급신청	2,900,000	14. 잔액12-13	15. 일반환급	16. 신학자금	17. 금융통	17. 합계	2,900,000	2,400,000	500,000

<연말환급신고>

<연말환급 후 정기신고>

※ 12-1월 귀속분은 연말정산 시 기반영해서 신고했으므로 신고제외하고 2-6월 귀속분을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정상 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20년 12월 -2021년 5월	2021년 1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12일

원천징수미행상황신고서

#메일 보내기   마감(F4)   불러오기(F3)   저장(Ctrl+S)   One-Shot(Ctrl+O)   기능모음(F11)

귀속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05월   지급기간 2021년 01월 ~ 2021년 06월   0.정기신고

1.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2. 귀속연월 202101   3. 지급연월 202106   일괄납부    여    부   사업자단위    여    부

원천징수내역   부표-거주자   부표-비거주자   부표-법인원천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전월미환급조정   차월미환급계   반기별

구분	코드	소득지급 (과세미달, 비과세포함)		정수세액			9. 당월 조정 환급세액	10.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 농어촌 특별세
		4. 인원	5. 총지급액	6. 소득세 등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210,000,000	3,600,000				
	종 도 퇴 사	A02							
	일 용 근 로	A03							
	연말정산합계	A04	10	300,000,000	-3,500,000				
	연말분납금액	A05							
	연말납부금액	A06			-3,500,000				
가 감 계	A10	20	510,000,000	100,000		100,000			
퇴직소득	연 금 계 좌	A21							
	그 외	A22							
사업소득	가 감 계	A20							
	매 월 징 수	A25							
	연 말 정 산	A26							
기타소득	가 감 계	A30							
	연 금 계 좌	A41							
종교매월징수	A43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18. 조정대상환급 (14+15+16+17)	19. 당월조정 환급액계	20. 차월미환급액(18-19)	21. 환급신청액
12. 전월미환급	13. 기환급신청	14. 잔액 12-13	15. 일반환급	16. 신탁재산	17. 금융등	17. 합병등	2,900,000	100,000	2,800,000	

※ 귀속과 지급이 다를 경우 연말정산 환급 신고 시 월별납부자는 12-1월분과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각각 한 장씩 두 장을 작성을 하지만, 반기별납부자는 12-1월분과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조 건

- 2021년 2월분의 급여 등을 3월에 지급 [1월분은 2월 지급]
- 종업원 10명  
 2020년 연간 지급액 : 300,000,000원 (연말정산결과 3,500,000원 환급 발생)  
 1월 급여 : 35,000,000원 (간이세액에 의한 세액 :60만원)

1.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귀속 2월 / 지급 2월로 입력하여 연말정산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구분	코드	소득지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9. 당월 조정 환급세액	10.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 농어촌 특별세
간이세액	A01					
종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합계	A04	10	300,000,000	-3,500,000		
연말납부금액	A05					
연말납부금액	A06			-3,500,000		
가감계	A10	10	300,000,000	-3,500,000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연금계좌	A41					
중교매월징수	A43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18. 조정대상환급 (14+15+16+17)	19. 당월조정 환급액계	20. 차월미환급 환급액(18-19)	21. 환급신청액
12. 전월미환급	13. 기환급신청	14. 잔액 12-13	15. 일반환급	16. 신약재산	17. 금융등	17. 합병등	3,500,000	3,500,000	3,500,000	

2. 간이세액분 신고서를 귀속 2021년 1월, 지급 2021년 2월로 입력해서 1월 급여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12.전월미환급세액에 반영되고, 1월분 소득세가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반영된 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세액 신청을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일 보내기 마감(F4) 불러오기(F3) 저장(Ctrl+S) One-Shot(Ctrl+O) 기능모음(F11)

귀속기간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지급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0.정기신고

1.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2.귀속연월 202101 3.지급연월 202102 4.월급납부  여  부 사업자단위  여  부

원천징수내역	부표-거주자	부표-비거주자	부표-법인원천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전월미환급조정	차월미환급계			
구분	코드	소득지급(과세미달,비과세포함)	4.인원	5.총지급액	6.소득세 등	7.농어촌특별세	8.가산세	9.당월 조정 환급세액	10.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농어촌 특별세
과세소득	간이세액	A01	10	35,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합계	A04								
	연말분납금액	A05								
	연말납부금액	A06								
과세소득	가감계	A10	10	35,000,000	600,000			600,000		
	연금액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과세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연금액좌	A41								
합계	종교매월징수	A43								
	합계									

전월미환급세액의 계산 12.전월미환급 13.기환급신청 14.잔액 12-13 15.일반환급 16.신택재산 17.금융등 17.합병등 18.조정대상환급 (14+15+16+17) 19.당월조정 환급액계 20.차월이월 환급액(18-19) 21.환급신청액

3,500,000 3,500,000 3,500,000 600,000 2,900,000 2,900,00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일 보내기 마감(F4) 불러오기(F3) 저장(Ctrl+S) One-Shot(Ctrl+O) 기능모음(F11)

귀속기간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지급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0.정기신고

1.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2.귀속연월 202101 3.지급연월 202102 4.월급납부  여  부 사업자단위  여  부

원천징수내역	부표-거주자	부표-비거주자	부표-법인원천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전월미환급조정	차월미환급계				
소득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소득지급액	1.결정세액	2.계 기납부(현) 기납부(중)	3.차감세액	4.분납금액	5.조정환급	6.환급신청액
근로	2021-02	2021-02	A04	10	300,000,000	3,700,000	7,200,000	7,200,000	-3,500,000	600,000	2,900,000
합계				10	300,000,000	3,700,000	7,200,000	7,200,000	-3,500,000	600,000	2,900,000

매입처 088 신한은행 \* 환급은행 \* 21.환급신청액에 금액을 입력시 환급은행 입력가능(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환급계좌계좌로 신청)  
 \* 환급신청액 유의사항  
 1. 수정, 기한후 신고시에도 환급신청서 전자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2. 국세청 정기신고 변경으로 수정신고 입력시 최종 수정분만 표시됨(출력물에 당초분, 수정분 반영됨)

계좌번호 123123123456 \* "-" 제외

3. 20.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 받고자 하는 금액을 21.환급신청액란에 입력 후 [환급신청] 탭을 작성해야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며, 좌측 하단의 예입처(은행명) 등은 환급신청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기재합니다.

환급신청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로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납부세액명세서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연월 1월부터 환급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납부하였던 내용을 소득 별로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이 발생한 소득자들을 개인별, 소득별, 근무지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①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의 징수세액 소득세 등(농어촌특별세)의 합계 금액과
- ②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소득세 등(농어촌특별세)의 합계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 ③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현황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 및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미행상환신고서 #매일 보내기 마감(F4) 불러오기(F3) 저장(Ctrl+S) One-Shot(Ctrl+O) 기능모음(F11)

귀속기간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월 지급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월 0.정기신고

1.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2. 귀속연월 202101 3. 지급연월 202102 일괄납부  여  부 사업자단위  여  부

원천징수내역 부표-거주자 부표-비거주자 부표-법인원천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전월미환급조정 차월이월승계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 환급신청서 작성시 1번 - 3번 반드시 입력하세요) 연말 중도 불러오기 전체화면보기

귀속연월	지급연월	소득구분	코드	인원	총지급액	1. 소득세 등 징수	2. 농특세 징수	가산세 징수
2020-11	2020-11	근로	A01	10	35,000,000	600,000		
2020-12	2020-12	근로	A01	10	35,000,000	600,000		
합 계				120	420,000,000	7,200,000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입력 현황 연말 중도 불러오기 전체화면보기

소득	사번	성명	주민번호	주/전(중/전)근무지				
				TV	근무지명	사업자번호	3. 소득세 등	4. 농특세
근로		김사원	760005-*****	0.주			1,500,000	
근로		박사원	651031-*****	0.주			2,000,000	
근로		이사원	831206-*****	0.주			1,000,000	
근로		최사원	871011-*****	0.주			800,000	
합 계							7,200,000	

3. 기납부세액 차액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유				
1. 소득세 등합계	3. 주 소득세합계 차액금액(3-1)	2. 농특세합계	4. 주 농특세합계 차액금액(4-2)	중립	전입	전출	합병	기타
7,200,000	7,20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유내용								

5.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환급신청 시 전월 미환급 세액 내역은 미환급 세액이 최초로 발생한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환급신청 시 환급세액 조정현황은 미환급 세액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의 환급금 발생 내역 및 조정사항을 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 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현재 작성중인 신고서의 12.전월미환급세액의 금액은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의 10.차월이월 환급세액 동일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미행상환신고서 #매일 보내기 마감(F4) 불러오기(F3) 저장(Ctrl+S) One-Shot(Ctrl+O) 기능모음(F11)

귀속기간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월 지급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월 0.정기신고

1.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2. 귀속연월 202101 3. 지급연월 202102 일괄납부  여  부

원천징수내역 부표-거주자 부표-비거주자 부표-법인원천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전월미환급조정 차월이월승계

1. 환급신청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 전체화면보기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	세목코드	1. 발생환급세액	2. 같은세목의납부할세액	3. 당월발생환급세액(1-2)
2020-02	2020-02	연말	근로	3,500,000		3,500,000
2020-02	2020-02					
합 계				3,500,000		3,500,000

2. 환급세액 조정 현황 전체화면보기

귀속연월	지급연월	전월미 환급세액			7. 당월 발생 환급	8. 조정대상환급	9. 당월 조정환급	10. 차월이월 환급
		4. 전월미환급	5. 기 환급세액	6. 차감잔액				
2020-02	2020-02				3,500,000	3,500,000		3,500,000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 납부자도 매월 납부자와 같이 소득처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인 사항으로 소득처분이 있고,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 연도분을 소득 처분하는 경우  
 ⇒ 이미 종료된 연말정산이 속하는 귀속연도분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처분 한 금액을 증가시키는 신고만으로 종결합니다.



조 건

12월말 법인으로 2021년 3월 소득(상여)처분이 1명에 1억원, 세액 3천만원과 2021년 3월분(정기분) 급여가 20명에 8천만원, 세액은 1백만원이 있는 경우

<<당초 연말정산분>>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연말정산	2021년 2월	2021년 2월	2021년 3월10일	20명	10억원	△천만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 각각 별도 작성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1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	2021년 3월	2021년 3월	2021년 4월12일	20명	8천만원	1백만원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1인원	지급액	세액
소득처분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4월12일	1명	1억원	3천만원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일 보내기 마감(F4) 불러오기(F3) 저장(Ctrl+S) One-Shot(Ctrl+O) 기능모음(F11)

귀속기간 2021년 03월 ~ 2021년 03월 지급기간 2021년 03월 ~ 2021년 03월 0.정기신고

1.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2.귀속연월 202103 3.지급연월 202103  월급납부  여  부

원천징수내역 부표-거주자 부표-비거주자 부표-법인원천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전월미환급조정 차월이월승계

구분	코드	소득지급(과세미달,비과세포함)			징수세액			9.당월 조정 환급세액	10.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농어촌 특별세
		4.인원	5.총지급액	6.소득세 등	7.농어촌특별세	8.가산세				
폐사제외	간이세액 A01	20	80,000,000	1,0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합계 A04									
	연말분납금액 A05									
	연말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20	80,000,000	1,000,000				1,000,000			
폐사제외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당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매월징수 A43									
	가감계 A41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18.조정대상환급 (14+15+16+17)	19.당월조정 환급액계	20.차월미환 환급액(18-19)	21.환급신청액
12.전월미환급	13.기환급신청	14.잔액 12-13	15.일반환급	16.선택재산	17.금융등	17.합병등	2,900,000	2,900,000	1,000,000	1,900,000	

※ 반기납부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분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거나, 연말정산 이후 증가액만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일 보내기 마감(F4) 불러오기(F3) 저장(Ctrl+S) One-Shot(Ctrl+O) 기능모음(F11)

귀속기간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지급기간 2021년 03월 ~ 2021년 03월 0.정기신고

1.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2.귀속연월 202102 3.지급연월 202103  월급납부  여  부

원천징수내역 부표-거주자 부표-비거주자 부표-법인원천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전월미환급조정 차월이월승계

구분	코드	소득지급(과세미달,비과세포함)			징수세액			9.당월 조정 환급세액	10.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농어촌 특별세
		4.인원	5.총지급액	6.소득세 등	7.농어촌특별세	8.가산세				
폐사제외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합계 A04	1	100,000,000	30,000,000						
	연말분납금액 A05									
	연말납부금액 A06			30,000,000						
가감계 A10	1	100,000,000	30,000,000				2,900,000	27,100,000		
폐사제외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당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매월징수 A43									
	가감계 A41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18.조정대상환급 (14+15+16+17)	19.당월조정 환급액계	20.차월미환 환급액(18-19)	21.환급신청액
12.전월미환급	13.기환급신청	14.잔액 12-13	15.일반환급	16.선택재산	17.금융등	17.합병등	2,900,000	2,900,000			

※ 소득처분에 대한 신고서 작성시, 1.신고구분의 ‘소득처분’란에 직접 체크후 A04.연말정산합계란에 입력합니다. (‘소득처분’란에 체크하지 않는 경우 A04.연말정산합계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주요 기능모음>

1. 제출정보 :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월근로소득 : 귀속, 지급연월별로 급여 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 : 비과세 항목의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리스트 : 저장 및 마감된 신고서 리스트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1) 일괄출력(F9) : 신고서 리스트에서 체크한 신고서를 일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2) PDF내보내기 : 신고서 리스트에서 체크한 신고서를 PDF파일로 일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 ※ 기한 후 신고 및 수정 신고

### 1. 기한 후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 기한후신고로 마감한 뒤, 원천징수전자신고에서 마감된 신고서 데이터를 조회하여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Source Withholding Status Report) and '원천징수 전자신고' (Source Withholding Electronic Reporting) screens. The '기한후신고' (After Deadline Reporting) option is selected in the top right of the reporting screen. The table below shows the tax items for a company with code 8888.

구분	코드	4.인원	5.총지급액	6.소득세 등	7.농어촌특별세	8.가산세	9.당첨 조정 환급액	10.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농어촌 특별세
간 이 세 액	A01	3	7,800,000	155,640					
종 도 퇴 사	A02								
임 용 근 로	A03								
연 말 장 산 합 계	A04								
연 말 분 납 금 액	A05								
연 말 분 납 금 액	A06								
가 랑 계	A10	3	7,800,000	155,640			155,640		

### 2. 수정 신고

마감된 정기신고서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정기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마감한 뒤, 원천징수 전자신고에서 마감된 수정신고서 데이터를 조회하여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Source Withholding Status Report) and '원천징수 전자신고' (Source Withholding Electronic Reporting) screens. The '정기수정신고' (Regular Amendment Reporting) option is selected in the top right of the reporting screen. The table below shows the tax items for a company with code 8888.

구분	코드	4.인원	5.총지급액	6.소득세 등	7.농어촌특별세	8.가산세	9.당첨 조정 환급액	10.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농어촌 특별세
간 이 세 액	A01	3	9,800,000	197,000					
종 도 퇴 사	A02	3	8,400,000	187,000					
임 용 근 로	A03								
연 말 장 산 합 계	A04								
연 말 분 납 금 액	A05								
연 말 분 납 금 액	A06								
가 랑 계	A10	3	7,800,000	155,640			155,640		
가 랑 계	A10	3	8,400,000	187,000			187,000		

II-8. 원천징수신고대사표(원천신고현황) - (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현황

원천징수신고대사표(원천신고현황)											
기능모음(F11)											
귀속기간 2020년 01월 ~ 2020년 12월 지급기간 2020년 01월 ~ 2020년 12월 0.정기신고 << < 귀속:202001 지급:202001 > > 월 별											
전 체 <b>근로/퇴직</b> 일용근로    사업/기타    이자/배당    법인원천    환급세액    조회설정: <input checked="" type="radio"/> 연간 <input type="radio"/> 월별											
코드	사원명	주민(외국인)번호	급여(간이세액) 5명			연말정산(종도/연말) 5명				퇴직소득	
			지급총액	소득세	농특세	지급총액	소득세	농특세	중전	지급총액	소득세
1	1000	김사원	870727-*****	48,000,000	126,960	0	48,000,000	2,186,400	0	0	0
2	2000	서대리	870727-*****	36,000,000	1,018,200	0	36,000,000	278,560	0	0	0
3	3000	홍과장	860107-*****	36,000,000	101,760	0	36,000,000	1,195,000	0	0	0
4	4000	강차장	650415-*****	36,000,000	1,018,200	0	36,000,000	278,560	0	0	0
5	5000	최부장	670315-*****	36,000,000	1,018,200	0	36,000,000	278,560	0	0	0
지급총액 계 (급여/연말외)				192,000,000	3,283,320	0	192,000,000	4,217,080	0	0	0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계 [A01.(A02+A04)]				193,300,000	3,269,710	0	1,530,000	1,500	0	0	0
차액(종도퇴사자 급여포함)				-1,300,000	13,610	0	190,470,000	4,215,580	0	0	0
중전근무지 계				0							

근로, 퇴직 등 각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내역 대조를 기존에 월단위로만 조회 가능 했으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현황 메뉴를 개선하여 화면 우측 상단의 조회옵션에 따라 각 사원별 연간 합계금액을 한 화면에서 조회 할 수 있어, 연말정산 시 1년간 급여자료데이터와 원천징수신고내역 비교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9. 연말정산 등 신고검토표

### 1. 급여신고검토표

급여신고검토표 탭에서는 1년 동안 지급한 급여자료입력의 데이터와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에 입력한 자료를 월별로 조회합니다.

월	인원(명)	급여자료... 미제출비...	원천신고서 총지급액	연말정산				급여자료입력		
				① 과세	② 감면소득	③ 제출비과세	①~③ 합계	미제출비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1월	계속근무자	35	3,200,000	176,627,053					12,708,690	1,270,710
	퇴사자	1		8,983,000	8,983,000		8,983,000	100,000		
	퇴사자전근무지									
2월	계속근무자	34	3,100,000	162,066,667					11,836,630	1,183,520
	퇴사자									
	퇴사자전근무지									
3월	계속근무자	34	3,100,000	161,916,667					11,804,090	1,180,260
	퇴사자				6,000,000		6,000,000		19,520	1,950
	퇴사자전근무지									
4월	계속근무자	35	3,200,000	174,728,383					14,674,580	1,467,270
	퇴사자	1		13,473,888		13,473,888	13,473,888	400,000	-45,600	-4,560
	퇴사자전근무지									
5월	계속근무자	36	3,300,000	166,776,667					11,968,980	1,196,730
	퇴사자									
	퇴사자전근무지									
6월	계속근무자	36	3,300,000	333,033,333					67,515,010	6,751,310
	급여신고액(A01)합계		32,358,065	1,849,336,363					180,748,440	18,073,160
	중도퇴사자(A02)합계			167,608,253	130,342,430	42,215,823	1,200,000	173,758,253	3,058,065	-1,553,230
퇴사자 전근무지합계				0	0	0	0	0	0	
연말(A04)합계(중전 포함)				0	309,450,004	0	0	309,450,004	1,000,000	-5,086,950
연말(A04)합계(중전미 포함)				0	309,450,004	0	0	309,450,004	1,000,000	-508,620

- ① 인원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입력한 인원을 불러옵니다.
- ② 연말정산 란은 중도퇴사 사원의 정산금액을 불러옵니다.
- ③ 하단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 란에 금액을 불러옵니다.

2. 퇴직일용사업기타 신고검토표

각 소득자료입력에서 입력한 자료의 내용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조회합니다. 각 소득별 입력자료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자료가 다른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 합니다.

귀속기간		2020년 01월 ~ 2020년 12월		지급기간		2020년 01월 ~ 2020년 12월		구분		0.전체	
구분	귀속년월	지급년월	자료입력				이행상황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등	지방소득세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등	지방소득세	
일용근로	2020-01	2020-01	2	4,120,000	34,020	3,330	2	4,120,000	34,020	3,330	
	2020-02	2020-02	2	4,120,000	34,020	3,330	2	4,120,000	34,020	3,330	
	2020-03	2020-03	2	4,120,000	34,020	3,330	2	4,120,000	34,020	3,330	
	2020-04	2020-04	2	4,120,000	34,020	3,330	2	4,100,000	34,020	3,330	
	2020-05	2020-05	2	4,120,000	34,020	3,330				3,330	
	2020-06	2020-06	2	1,390,000							
	합계		12	21,990,000	170,100	16,650	8	16,460,000	136,060	16,650	
사업(월)	2020-01	2020-01	1	5,000,000	150,000	15,000	1	5,000,000	150,000	15,000	
	2020-02	2020-02	1	4,000,000	120,000	12,000	1	4,000,000	120,000	12,000	
	2020-03	2020-03	1	1,600,000	48,000	4,800	1	1,600,000	48,000	4,800	
	2020-04	2020-04	1	3,000,000	90,000	9,000	1	3,000,000	90,000	9,000	
		합계		4	13,600,000	408,000	40,800	4	13,600,000	408,000	40,800
기타소득	2020-01	2020-01	1	2,000,000	160,000	16,000	1	2,000,000	160,000	16,000	
	2020-02	2020-02	1	4,000,000	320,000	32,000	1	4,000,000	320,000	32,000	
	2020-03	2020-03	1	3,000,000	240,000	24,000	1	3,000,000	240,000	24,000	
	2020-04	2020-04	1	4,000,000	320,000	32,000	1	4,000,000	320,000	32,000	
	합계		4	13,000,000	1,040,000	104,000	4	13,000,000	1,040,000	104,000	

- ①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입력합니다.
- ② 구분을 선택 합니다.  
(전체/01.일용근로/02.퇴직소득/03.사업소득(매월)/04.사업소득(연말)  
/05.기타소득/06.이자소득/07.배당소득)
- ③ 선택한 조회 구분 중 해당기간의 각 소득자료입력에 입력한 데이터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별로 조회합니다.
- ④ 이행상황에 조회되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신)의 명세서 탭에 저장된 자료를 조회합니다.

## II-10.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 1. 납부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작성방법    마감    불러오기    일괄삭제    기능모음(F11)

납부서/명세서 작성    서울시 전자신고    부산시전자신고    납부서신고현황(일괄출력)    ※ 위택스로 전자신고 할때는 「납부서/명세서 작성」 탭에서 마감합니다.

신고:매월    귀속년월 2021년 02월    지급년월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작성조회    명세서 불러오기

납부서    명세서

당초납부기한 전자납부번호	2021년 03월 10일 ?	신고일	2021년 03월 10일 ?	납부지연일수	일
구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액	가산세	비고
(4) 미자소득					
(5) 배당소득					
(6) 사업소득					
(7) 근로소득	4	323,430	32,320		
(8) 연금소득					
(9) 기타소득					
(10) 퇴직소득					
(11)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12) 비거주자 양도소득					
(13) 내국법인(법 제73조)					
(14) 외국법인(법 제98조)					
(15) 가감세액(조정액)	>		-2,120		
(16) 가산세					
합계	4	323,430	30,200	가산세액 과표 포함	323,430
납부총액(4-16)			30,200	차감후환급잔액(0월환급잔액)	

※ 가감세액의 과세표준금액은 직접입력합니다. (인세에만 반영되고 신고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특별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 가산세액 합계	①미납세액 X 3% ②미납.과소납부지연일수 합계	가산세 총액(16) 합계(①+②)	(2)취급청 법정동 기관코드	출천시청 4211034025 ? 후동리 1103405 ? 남면
--------------------	----------------------------------	--------------------------	-----------------------	--

환급 조정 >	1. 전월미환금액	2. 당월발생환금액	3. 조정대상환금액(1+2)	4. 당월조정환금액	5. 차월미환환금액(3-4)
		53,200	53,200	53,200	

#### (1) 귀속년월 / 지급년월 / 당초납부기한 / 신고일 / 납부지연일수

- ① 귀속년월/지급년월 : 작성하는 귀속년월/지급년월을 입력합니다.
- ② 당초납부기한 : 지급년월의 익월 10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 ③ 신고일 : 당초납부기한과 동일한 일자로 조회되며 실제 신고하는 일자로 입력합니다.
- ④ 납부지연일수 : 당초납부일이 지난 신고일인 경우 작성하며 납부지연일수로 가산세액을 계산합니다.

#### (2) 불러오기

- ① 각 입력메뉴(급여자료입력 등)에서 입력된 자료를 납부서와 명세서로 불러오기 합니다.
- ② 기간 입력 후 최초 조회시 불러오기 실행없이 바로 소득자료를 불러오기 합니다.

#### (3) 명세서불러오기

- ① 명세서 탭에 입력된 자료를 납부서로 불러오기 합니다.  
특히, 각 입력메뉴에서 입력하지 않고 명세서에서 직접 입력한 경우 이용합니다.

(4) (15)가감세액(조정액)

- ① > 버튼을 클릭하여 「가감조정내역」 화면에서 가감조정내역을 입력합니다.
- ② 당(전)월환급액란은 (-)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③ 2020년 귀속 연말정산한 내역을 입력하는 경우 연말정산추가납부액/연말정산환급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자료 조회 예

구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액	가산세	비고
(4) 이자소득					
(5) 배당소득					
(6) 사업소득					
(7) 근로소득	4	323,430	32,320		
(8) 연금소득					
(9) 기타소득					
(10) 퇴직소득					
(11) 저축해지추정세액 등					
(12) 비거주자 양도소득					
(13) 내국법인(법 제73조)					
(14) 외국법인(법 제98조)					
(15) 가감세액(조정액)				-2,120	
(16) 가산세					
합계	4	323,430	30,200	가산세액 과표 포함	323,430

**가감조정내역**

가감조정내역

**1. 추가납부액**

당월 추가납부액: 51,080

연말정산추가납부액: 51,080

합계: 51,080

**2. 당(전)월환급액**

전월기타환급액: 53,200

당월기타환급액: 53,200

연말정산환급액: 53,200

종도퇴사자환급액: 53,200

환급액 합계: 53,200

**3. 가산세대상(연말정산 등)추가납부액**

금여(가산세대상)지급월: [ ]년 [ ]월

당초납부일자: [ ]년 [ ]월 [ ]일

납부지연일수: [ ]일

추가납부합계금액(1+3): 51,080

납부총금액((4-14)+16+1-2+3): 30,200

①가산세대 상추가납부액

②추가납부 가산세 3%

③추가납부 가산세 (결과일수) 0.025%

가산세대 상추가납부 + 가산세합계(①+③): -2,120

가감조정금액(1-2+3): -2,120

차감후환급잔액(이월환급잔액)

확인(Tab)

납부서		명세서													
근로퇴직연말		이자배당	사업	기타종교	내외국법인	전체	근로소득		퇴직소득		조정	연말정산(조정환급)		지	
순	□	소득	코드	사원명	주민(외국인)	번호	합계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1	□	근로	1000	김철수	800601-*****		112,340	1,280	92,550	9,250			연말	19,790	2,030
2	□	근로	2000	서나리	890210-*****				7,290	720			연말	-87,520	-8,740
3	□	근로	3000	홍원삼	890913-*****		497,720	19,770	7,290	720			연말	490,430	49,050
4	□	근로	4000	김지훈	740504-*****				216,300	21,630			연말	-444,850	-44,460
5	□														
합 계							610,060	11,050	323,430	32,320				-22,150	-2,120

(5) 가산세(특별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 ① 미납과소납부세액 : 미납세액의 3%  
미납과소납부지연일수 : 과소,미납세액의 0.025% X 납부지연일수
- ② 납부지연일수가 있는 경우 계산되나 (15)가감세액(조정액)이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합니다.

(6) 환급조정

환급 조정	1. 전월미환급액	2. 당월발생환급액	3. 조정대상환급액(1+2)	4. 당월조정환급액	5. 차월미환급액(3-4)
		53,200	53,200	53,200	

가감조정내역

● 가감조정내역

**1. 추가납부액**

당월 추가납부액	51,080
연말정산추가납부액	
합계	51,080

**3. 가산세대상(연말정산 등)추가납부액**

급여(가산세대상)지급월  년  월

당초납부일자  년  월  일 ?

납부지연일수  일

추가납부합계금액(1+3)	51,080
납부총금액((4-14)+16+1-2+3)	30,200

**2. 당(전)월환급액**

전월기타환급액	
당월기타환급액	
연말정산환급액	53,200
중도퇴사자환급액	
환급액 합계	53,200

**①가산세대 상추가납부액**

**②추가납부 가산세 3%**

**③추가납부 가산세 (경과일수) 0.025%**

가산세대상 추가납부 + 가산세합계(①+②)

가감조정금액(1-2+3)	-2,120
차감후환급잔액(미환급잔액)	

확인(Tab)

- ① 1.전월미환급액 : 전월기타환급액에 입력 된 자료가 반영합니다.  
전월자료에 5.차월이월환급액이 있는 경우 전월미환급액으로 조회합니다.
- ② 2.당월발생환급액  
: 당월기타환급액 + 연말정산환급액 + 중도퇴사자환급액에 입력 된 자료가 반영합니다.
- ③ 조정대상환급액 : 1.전월미환급액 + 2.당월발생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④ 당월조정환급액  
: 지방소득세(4~14) + 가감조정내역의 추가납부액,가산세대상추가납부액을 반영합니다.  
(3.조정대상환급액 범위)
- ⑤ 5.차월이월환급액 : 3.조정대상환급액 - 4.당월조정환급액을 계산합니다.

2. 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서

작성방법 불러오기 일괄삭제 기능

납부서/명세서 작성 서울시 전자신고 부산시전자신고 납부서신고현황(일괄출력) ※ 위택스로 전자신고 할때는 「납부서/명세서 작성」 탭에서 마감합니다.

신고:매월 귀속년월 2021 년 02 월 지급년월 2021 년 02 월 ~ 2021 년 02 월

납부서 명세서

근로퇴직연말 이자배당 사업 기타종교 내외국법인 전체

순번	소득구분	코드	사원명	주민(외국인)번호	합계		근로소득		퇴직소득		조정구분	연말정산(조정환급)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1	근로	1000	김철수	800601-*****	112,340	1,280	92,550	9,250			연말	19,790	2,030
2	근로	2000	서나리	890210-*****			7,290	720			연말	-87,520	-8,740
3	근로	3000	홍원삼	890913-*****	497,720	19,770	7,290	720			연말	490,430	49,050
4	근로	4000	김지훈	740504-*****			216,300	21,630			연말	-444,850	-44,460
5													
합 계					610,060	31,050	323,430	32,320				-22,150	-2,120

- (1) 근로퇴직 등 세목별로 구분하여 조회되며 전체탭에서 전체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 조정구분 :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조정환급)을 입력하는 경우 조정구분(1.중도,2.연말)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15)가감세액(조정액)에 불러오기 하기위함)

## II-11. 지방소득세특별징수전자신고

### ❶ 전자신고 파일 제작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메뉴에서 마감된 파일을 제작한 뒤 위택스 (<http://www.wetax.go.kr>)에서 '일괄납부 회계프로그램 이용'을 통하여 신고합니다.

### III. 사업소득 연말정산 안내

#### III-1. 사업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3개 업종의 사업 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 보험모집인(940906)                      ◇ 방문판매인(940908)                      ◇ 음료배달인(940907)

#### III-2.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소득세법 §144의 2)

1. 간편장부대상자(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②, ③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보험모집인
- ② 「방문판매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 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 방문판매원(다단계판매원 : 2000년 귀속분부터 제외)
-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음료품배달원 (2013년 귀속분부터 적용)

2.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 당해 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최종월분의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자
- 당해 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III-3.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 방문 판매수당 · 음료품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25의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당해 과 세기간의 종료일 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25의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III-4. 연말정산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2월분의 사업소득을 2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합니다.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합니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월~11월분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12월분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

### III-5.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구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수당	22.4%	31.4%
방문판매수당	25.0%	35.0%
음료배달인	20.0%	28.0%

### III-6. 소득공제

1.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시 해당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 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2.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액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을 적용합니다.
4. 제출증명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 III-7.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 계산

1.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4.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합니다.
  -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III-8. 사업소득 전산매체, 전자신고 제작 시 유의 사항

1. <사업소득자입력> 메뉴의 연말정산적용 '여'로 체크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코드	소득자명	주민(외국)등록번호	코드	소득구분
<input type="checkbox"/> 00001	사업일	내 610101-*****	940600	자문/고문
<input type="checkbox"/> 00002	사업미	내 620202-*****	940600	자문/고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00003	김보형	내 770101-*****	940906	보험설계
<input type="checkbox"/> 00004	나미래	내 880101-*****	940906	보험설계
<input type="checkbox"/> 00005				

전 체 4 명

※ 사업소득에서 병의원코드 (851101)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일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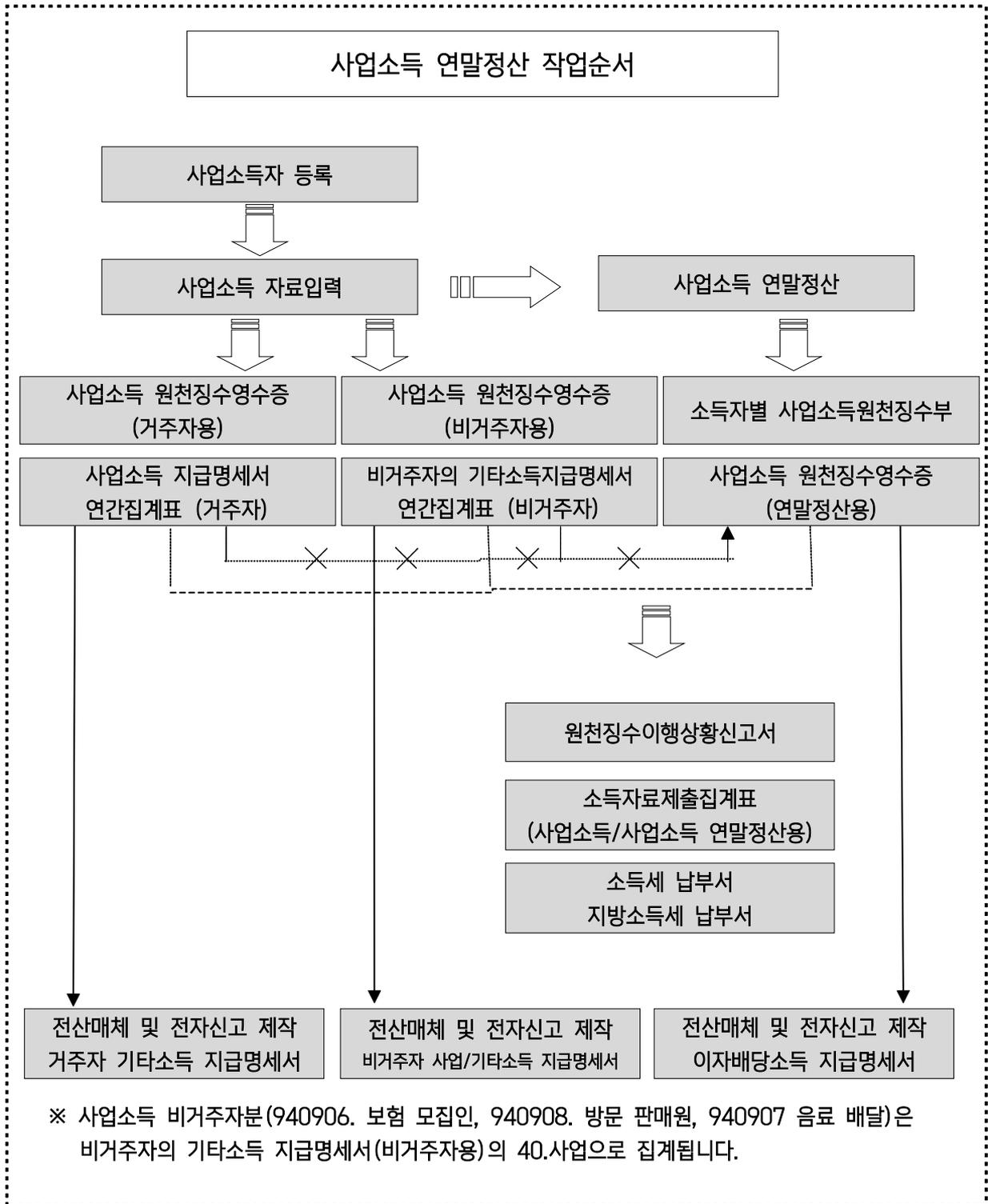
2. <사업소득자입력> 메뉴의 연말정산적용 '부'로 체크된 사업소득자 중

1) 거주자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2) 비거주자 사업소득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비거주자용>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소득 비거주자분(940906.보험모집인, 940908방문판매원, 940907음료배달)은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비거주자용)의 40.사업으로 집계됩니다.

#### IV. 사업소득 연말정산



### IV-1. 사업소득자 등록

※ 연말정산대상자인 경우는 (940906)보험모집인, (940908)방문판매원, (940907)음료배달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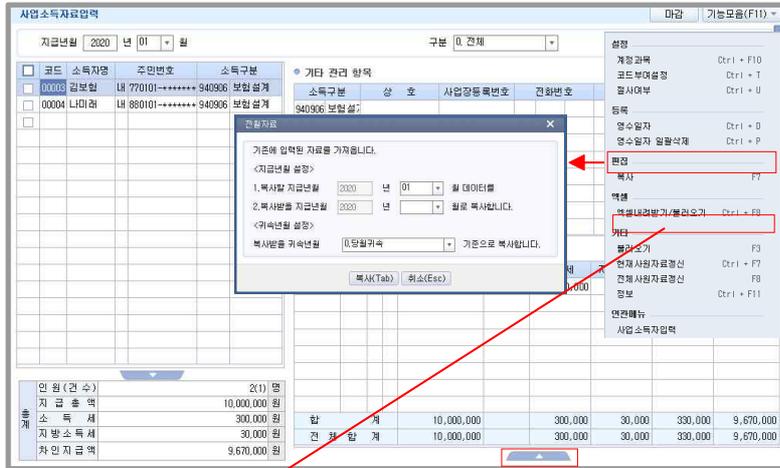
※ 등록사항은 전산매체 수록 대상이므로 정확히 표기하여 주십시오.

### IV-2. 사업소득 자료 입력



1. 툴바의 코드도움 또는 코드란에서 (F2)를 클릭하여 지급대상 사업소득자를 선택 입력합니다.
2. 소득 지급 내역에 귀속연월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사업소득자료입력 버튼 기능>



1. 불러오기-소득자를 전체 또는 소득구분 별로 사업소득자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2. 우측하단 작은 화살표 클릭 시 소득자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복사-특정 월의 자료를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IV-3. 사업소득자연말정산

본 메뉴는 사업소득자료입력에서 소득구분 코드가 (940906)보험설계, (940908)방판/외판 또는 (940907)음료배달이면서 연말 '0.여'인 데이터를 자동반영 하여 사업소득자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 받아 자동 정산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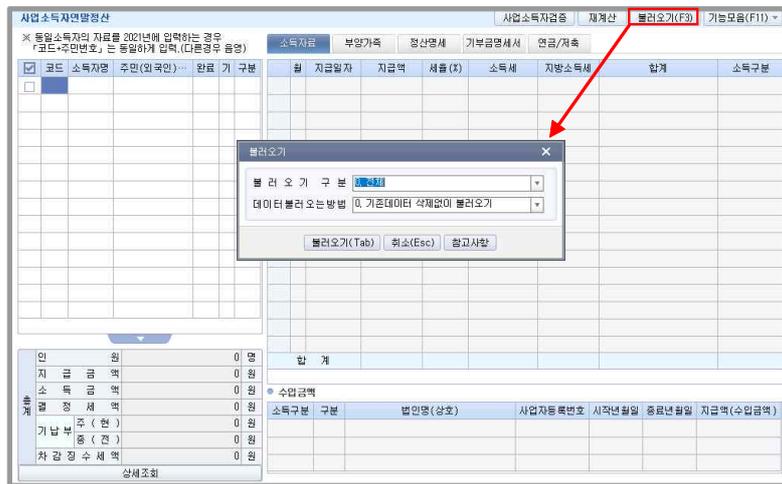


## 『사업소득자연말정산 탭 별 설명』

별도의 메뉴 실행 없이 소득자료, 부양가족, 정산명세를 사업소득자연말정산 메뉴에서 모두 입력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❶ 소득자료

1. ‘불러오기(F3)’로 사업소득자료입력의 연말 ‘여’인 데이터를 반영하며 월별 입력도 가능 합니다.



※ 종전 근무지에 대한 입력은 기능모음의 전근무지소득입력(F7)을 열어 입력합니다.

2. 사업소득자검증 : 작업연도와 다음연도에 「코드+주민등록번호」로 중복입력 된 소득자를 검증합니다. 작업연도(2020년) 귀속 자료를 다음연도(2021년)에 지급하여 다음연도에 입력하는 경우 소득자의 「코드+주민등록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해야 불러오기 실행시 해당 자료를 조회합니다.  
: 빨간음영으로 체크 된 경우 다음연도에 입력 된 소득자의 코드+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❶ 부양가족

당해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입력된 부양가족은 정산명세에 바로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자연말정산

※ 동일소득자의 자료를 2021년에 입력하는 경우 「코드+주민번호」는 동일하게 입력. (다른경우 음영)

소득자료 부양가족 정산명세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

코드	소득자명	주민(외국인)...	원료	기	구분
00003	김보림	770101-*****			사업
00004	나미래	880101-*****			사업

연력공제내역

기본공제	배우자 유/무	20세이하	2명	60세이상	1명
○					

추가공제

부녀자 여/부	70세이상	1명	출생입양	1명

한부모

장애인	1명	자녀	1명

부양가족

연말정산관계	기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장로유대	출생입양	자녀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1	본인							나미래	내 880101-*****
2	소득자의직계존속	장애인		○	○			나대수	내 410101-*****
3	배우자	배우자						이부민	내 890210-*****
4	직계비속(자녀, 입 20세 이하)						○	나영삼	내 130616-*****
5	직계비속(자녀, 입 20세 이하)					○(2)		나영희	내 200810-*****
6									
합 계					1	1	1	1	

인 원 2명  
 지급금액 365,500,000 원  
 소득금액 107,567,000 원  
 결정세액 12,758,450 원  
 가납부주(현) 10,800,000 원  
 종(건) 165,000 원  
 차감징수세액 1,793,450 원

상세조회

부녀자공제 : 사업소득자 본인이 여성(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 : 7세이상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❶ 정산명세

사업소득연말원천징수영수증 메뉴를 실행하지 않아도 정산 명세에 공제사항을 입력 할 때 마다 자동계산 되어 정산내역을 한 번에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❷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51의 3]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 납입금액을 입력합니다. (한도:전액 공제)

❸ 기부금(이월분)

기부금(이월분) 공제금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이월 된 법정/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탭의 기부금조정명세-[전년도]기부금조정명세서에 해당내역을 입력하고,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하여 정산명세탭 기부금(이월분)에 공제금액을 반영합니다.

❹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사업소득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제금액 : 불입액의 40%, 공제한도 : 72만원) [소득법 §86]

❶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❷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기존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입력합니다.

※ 한 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 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 §16]

투자시기	투자구분	공제율		한도액
2018년 이후	일반	10%		사업소득금액의 50%
	벤처	3,000만원 이하	100%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❸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항목

：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2018년 이후 투자분 중 공제율 30%, 50%, 70%, 100% 적용분은 제외)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공제금액 합 - 2,500만원

❶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공제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초과금액의 15%)
4,600만원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초과금액의 24%)
8,800만원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❷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7세이상)
    - 1명:15만원, 2명:30만원, 3명이상: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2020.1.1.이후 출생·입양 된 자녀가 첫째, 둘째, 셋째이상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이 다릅니다.
- 출산·입양공제에 해당하는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연말정산관계	기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경로우대	출산 입양	자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1	본인	본인							나미래	내 880101-*****
2	소득자의직계존속	장애인			○	○			나대수	내 410101-*****
3	배우자	배우자							이부민	내 890210-*****
4	직계비속(자녀, 입 20세 이하)							○	나영심	내 130616-*****
5	직계비속(자녀, 입 20세 이하)						○(2)		0. 부 1. 첫째 2. 둘째 3. 셋째이상	내 200810-*****
6										

❸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퇴직연금합산시 한도)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4천만원 이하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
1억원 초과	300만원(700만원)		

❶ 기부금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지출액) 기부금 입력란에 지출액을 입력하면 10만원 이하분에 대하여 110분의 100 세액공제로 계산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명세서 탭에서 자료입력 후 기능모음 -> 기부금명세서불러오기를 실행하면 입력 된 정치자금 기부금이 정치자금(지출액)금액으로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 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 공제액
①정치자금기부금	사업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 : 100/110
②법정기부금	(사업소득금액 - ①) × 100%	-2014~2015년 3천만원이하 : 15% 3천만원초과 : 25% -2016~2018년 2천만원이하 : 15% 2천만원초과 : 30% -2019~2020년 1천만원이하 : 15% 1천만원초과 : 30%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사업소득금액 - ① - ②) × 30%	
④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text{사업소득금액} - \text{①} - \text{②} - \text{③})] \times 10\%$ + min[(사업소득금액-①-②-③) × 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전년도이월액과 해당과세기간 지출 기부금의 합계액	
⑤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금액-①-②-③) × 30%	

\*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부금세액공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91 )

❶ 세액공제

사업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합니다.

## 『사업소득자연말정산 상단 기능모음(F11) 버튼 설명』

### ① 전근무지소득입력(F7)

종전근무지(이종근로 및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소득을 입력합니다.

번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발생기간	지급액(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1	다조은상상	123-81-12341	940906	보통설계	2020-01-01 ~ 2020-01-31	5,500,000	1,232,000	165,000
2								
합 계					5,500,000	1,232,000	165,000	16,500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분란에 코드를 직접입력해주세요.(940906:보통설계, 940907:음료비달, 940908:방관/외관)

### ① 입력내역완료(F4), 완료내역해제(Ctrl+F4)

연말정산 입력 후 완료버튼을 클릭하면 완료 항목에 'O'로 표시되며 수정, 삭제 할 수 없습니다. 완료내역해제 버튼으로 완료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월	지급일자	지급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소득구분
1	01	2020-01-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설계
2	02	2020-02-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설계
3	03	2020-03-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설계
4	04	2020-04-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설계
5	05	2020-05-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설계
합 계					120,000,000	3,600,000	360,000	3,960,000

1 소득자료갱신 (F8)

사업소득자료입력에 입력한 자료를 갱신 할 수 있습니다.

기능모음(F11)

- 연동
  - 기부금명세서불러오기 Ctrl + F3
  - 소득자료갱신 F8
- 편집
  - 전근무지소득입력 F7
  - 소득구분일괄적용 Ctrl + F10
  - 사업기간종료일일괄적용 Ctrl + F11
- 기타
  - 입력내역완료 F4
  - 완료내역해제 Ctrl + F4
  - 표준세액공제적용옵션 F6
  - 재정산이전데이터복원 Ctrl + R
- 연관 메뉴
  - 사업소득자료입력
  - 사업소득자료입력
  - 사업소득 연말정산원리수업수강
  - 기부금명세서

사업소득자료연말정산

※ 동일소득자의 자료를 2021년에 입력하는 경우 '코드+주민번호'는 동일하게 입력. (다중종류 있음)

코드	소득자명	주민(외국인)...	완료 기	구분	월	지급일자	지급액	세율 (%)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소득구분	
0000	김부원	770101-*****	○	사업	1	01	2020-01-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소득
0000	김부원	770101-*****	○	사업	2	02	2020-02-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소득
0000	김부원	770101-*****	○	사업	3	03	2020-03-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소득
0000	김부원	770101-*****	○	사업	4	04	2020-04-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소득
0000	김부원	770101-*****	○	사업	5	05	2020-05-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소득
0000	김부원	770101-*****	○	사업	6	06	2020-06-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소득
0000	김부원	770101-*****	○	사업	7	07	2020-07-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소득
0000	김부원	770101-*****	○	사업	8	08	2020-08-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소득
0000	김부원	770101-*****	○	사업	9	09	2020-09-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소득
0000	김부원	770101-*****	○	사업	10	10	2020-10-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소득
0000	김부원	770101-*****	○	사업	11	11	2020-11-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소득
0000	김부원	770101-*****	○	사업	12	12	2020-12-10	10,000,000	3	300,000	30,000	330,000	보통소득
					합계			120,000,000	3,600,000	360,000	3,960,000		

인원 2명  
 지급금액 365,500,000 원  
 소득금액 107,567,000 원  
 결정세액 12,758,450 원  
 가납부액(원) 10,800,000 원  
 차감할 수액 165,000 원  
 차감할 수액 1,793,450 원

1 기부금명세서불러오기 (Ctrl+F3)

기부금명세서탭에 입력한 자료를 불러오기 하여 정산명세서 기부금 항목에 반영 가능합니다.

기능모음(F11)

- 연동
  - 기부금명세서불러오기 Ctrl + F3
  - 소득자료갱신 F8
- 편집
  - 전근무지소득입력 F7
  - 소득구분일괄적용 Ctrl + F10
  - 사업기간종료일일괄적용 Ctrl + F11
- 기타
  - 입력내역완료 F4
  - 완료내역해제 Ctrl + F4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기부금명세서 내용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사업소득자료연말정산

※ 동일소득자의 자료를 2021년에 입력하는 경우 '코드+주민번호'는 동일하게 입력. (다중종류 있음)

구분	수입금액	적용소득률	4천만원이하	4천만원이상	소득금액	합계
보통소득	125,500,000	22.4%	31.4%	8,900,000	26,647,000	35,987,000
지방소득	0	25.00%	35.00%	0	0	0
합계	125,500,000	0	28.00%	0	0	35,987,000

내역 | 지급액 | 공제대상금액 | 내역 | 지급액 | 공제대상금액

기부금공제 | 본인 | 1,500,000 | 종합소득공제표준 | 34,307,000

기부금공제 | 부양가족 | 0 | 산후휴가 | 4,666,667

기부금공제 | 정공무대 | 0 | 자녀공제대상자녀 | 0

기부금공제 | 장애인 | 0 | 생계유지 | 0

기부금공제 | 부녀자 | 0 | 연금기여금공제 | 0

기부금공제 | 한부모가족 | 0 | 의료비환원금 | 0

기부금공제 | 기부금(이월분) | 0 | 연금기여금공제 | 0

기부금공제 | 기부금(이월분) | 1,500,000 | 연금기여금공제 | 0

기부금공제 | 개인연금저축소득 | 0 | 기부금 | 0

기부금공제 | 소기업공제부금 | 0 | 기부금세액공제 | 0

기부금공제 | 투자조합출자원소득 | 0 | 기부금세액공제 | 0

기부금공제 | 소기업공제특별공제 | 0 | 기부금세액공제 | 0

기부금공제 | 후원회기부금 | 0 | 기부금세액공제 | 0

합계 | 44,000,000 | 소득세 | 3,951,000 | 지방소득세 | 395,100 | 4,34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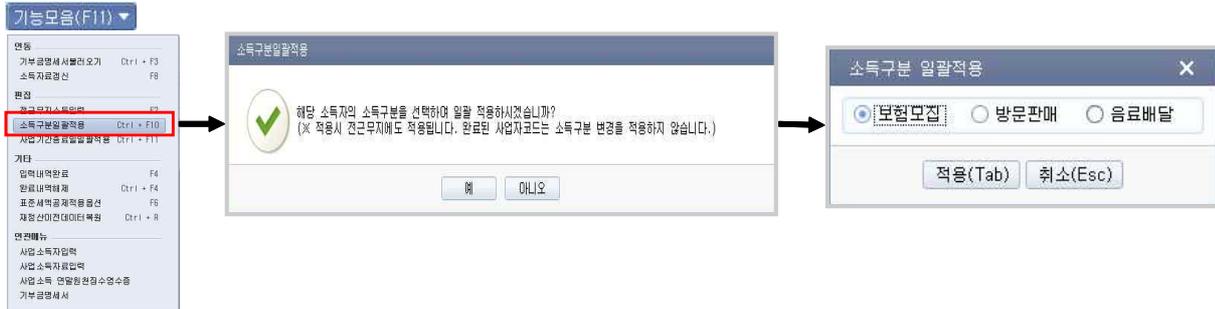
합계 | 45,000,000 | 소득세 | 165,000 | 지방소득세 | 16,500 | 181,500

합계 | 46,000,000 | 소득세 | 3,600,000 | 지방소득세 | 360,000 | 3,960,000

합계 | 47,000,000 | 소득세 | 198,000 | 지방소득세 | 19,800 | 217,800

① 소득구분일괄적용(Ctrl+F10)

소득자의 소득구분을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중 선택하여 일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자연말정산 연관 메뉴』

● 사업소득 연말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연말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수입/부양가족 기부금 연금/저축연세 보험모집인 [940906]

● 소득금액계산

사업별	18. 수입금액 (17)	19. 적용소득률 (17)	20. 소득금액 (17)	합계
보험모집인	125,500,000	22.40%	8,960,000	35,807,000
방문판매원		25.00%		
음료배달원		20.00%		
124. 합계	125,500,000			35,807,000

● 정산명세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22. 사업소득금액(20)	35,807,000			35,807,000
23. 본인	1,500,000			1,500,000
24. 배우자 유 [무]				
25. 부양가족 명				
26. 경로우대 명				
27. 장애인 명				
28. 부녀자 유 [무]				
29. 한부모가족 유 [무]				
30. 연금보험료				
31. 기부금(이월분)				
32. 종합소득공제	1,500,000			1,500,000
33.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34.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35.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36.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37. 종합소득과세표준				34,307,000
38. 산출세액				4,066,050
39. 자녀 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명				
40. 연금계좌세액공제 출산·입양 명				
41.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 우린사주조합 명				
42. 표준세액공제 지정				45,000
43. 결정세액	3,951,050	395,105		4,346,155
44. 종(전)근무지	165,000	16,500		181,500
45. 주(한)근무지	3,600,000	360,000		3,960,000
46. 차감납부(환급)세액	186,050	18,600		204,650

인원 : 2 명

● 사업소득징수부

사업소득징수부

지급명세 연말정산

● 소득금액계산

구분	27. 수입금액	28. 적용소득률	29. 소득금액	합계
보험모집	125,500,000	22.4%	8,960,000	35,807,000
방문판매	0	25.0%	0	0
음료배달	0	20.0%	0	0
합계	125,500,000		8,960,000	35,807,000

● 정산내역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30. 사업소득금액(29)	35,807,000			35,807,000
31. 본인	1,500,000			1,500,000
32. 배우자 유 [무]				
33. 부양가족 명				
34. 경로우대 명				
35. 장애인 명				
36. 부녀자 유 [무]				
37. 한부모가족 유 [무]				
38. 연금보험료				
39. 기부금(이월분)				
40. 종합소득공제	1,500,000			1,500,000
41.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42.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43.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44.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45. 종합소득과세표준				34,307,000
46. 산출세액				4,066,050
47. 자녀 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명				
48. 연금계좌세액공제 출산·입양 명				
49.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 우린사주조합 명				
50. 표준세액공제 지정				45,000
51. 결정세액	3,951,050	395,105		4,346,155
52. 종(전)근무지	165,000	16,500		181,500
53. 주(한)근무지	3,600,000	360,000		3,960,000
54. 차감납부(환급)세액	186,050	18,600		204,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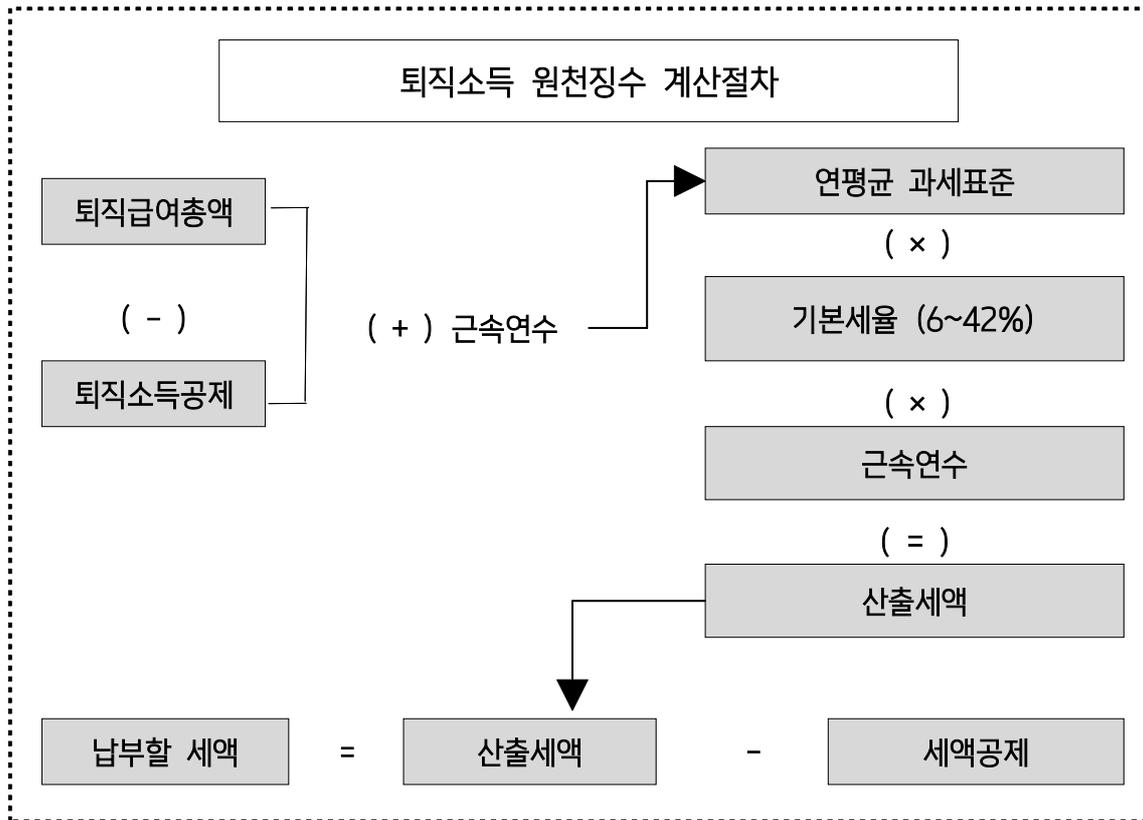
인원 : 2 명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 ● 사업소득자료제출집계표

사업소득자료제출집계표										기능모음(F11)
지금년월 2020년 01월 ~ 2020년 12월 월 용도 2. 연말정산										
신고용    관리용										
정수의무자		1.사업자등록번호	111-81-11112			2.법인등록번호	101111-1111110			
		3.법인명(상호)	(주)더준기획			4.대표자(성명)	김덕준			
		5.소재지(주소)	강원도 춘천시 남면 버들1길 12			6.전화번호	033-123-1234			
제출내용										
7. 귀속년도	8. 제출년월일	9. 소득종류	10. 매수	11. 건수	12. 소득(수입)금액	원천징수액				
						13. 소득세	14. 법인세	15. 농어촌특별세	16. 지방소득세	
2020	20210310	사업소득	2	2	365,500,000	12,713,450		0	1,271,345	
제출년월일 2021년 03월 10일										
※참고사항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환급)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12,713,450	1,271,345	0	10,965,000	1,096,500	0	1,748,450	174,840	0		

### V. 퇴직소득 지급조서 작성



## V-1. 퇴직소득자료입력

퇴직소득자의 퇴직소득자료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정규직근로자, 일용근로자, 종교인(기타연말정산)에 대한 퇴직소득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❶ 사원구분

0.전체, 1.근로, 2.일용, 3.종교를 선택하여 입력/조회합니다.

- 0.전체 : 사원구분 전체를 입력/조회
- 1.근로 : 「사원등록」에 등록 된 사원을 코드도움으로 조회
- 2.일용 : 「일용직사원등록」에 등록 된 일용근로자를 코드도움으로 조회  
단, 「일용직사원등록」의 퇴직금적용이 “1.여”인 일용근로자만 조회
- 3.종교 : 「종교인사원등록(기타연말정산용)」에 등록 된 종교인을 코드도움으로 조회

## V-2. 퇴직소득 중간지급

구분 코드		사원명	구분	사유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input type="checkbox"/>	근로	미승회	중간	중간	(13)근무처명		(주)더준기획			
<input type="checkbox"/>	근로				(14)사업자등록번호		111-81-11112			
<input type="checkbox"/>	근로				(15)퇴직급여		29,754,510	29,754,510		
<input type="checkbox"/>	근로				(16)비과세 퇴직급여					
<input type="checkbox"/>	근로				(17)과세대상퇴직급여 ((15)-(16))		29,754,510	29,754,510		
구분		(18)입사일	(19)기산일	(20)퇴사일	(21)지급일	(22)근속월수	(23)제외월수	(24)가산월수	(25)총복월수	(26)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2013-06-15	2013-06-15	2020-09-25	2020-09-25	08				8
최종 근속연수		2013-06-15	2013-06-15	2020-09-25		08				8
명산 근속연수		2013-06-15	2013-06-15	2020-09-25		08				8
명산		2012.12.31이전								
명산		2013.01.01이후								
납부연세 퇴직세액계산 중간정산내역 [주의] 40번 금액은 계산 산식과 다른면 전자신고시 오류로 검증됩니다.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동여촌특별세		계		
(42)신고대상세액((36))		565,270		56,527				621,797		
(43)이연퇴직소득세((40))										
(44)차감 원천징수세액((42)-(43))		565,270		56,520				621,790		
(10)확정금액(명) 퇴직연금 제도가입일		11)2011.12.31 퇴직금		영수일자 2020-09-30		신고서 귀속년월 2020-09				



### 근속연수 명확화

● [퇴직판정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43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2013.02.15. 개정) [부칙]

● [근속연수]

소득세법 시행령 §105

① 법 §48①-2 및 법 §55②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2013. 02.15 신설)

### V-3.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금년월 2020년 01월 ~ 2021년 01월

설정  
 영수증무자구분 F7  
 기타  
 영수증이메일보내기 Ctrl + R  
 연관메뉴  
 퇴직소득자료입력  
 퇴직소득자료제출집계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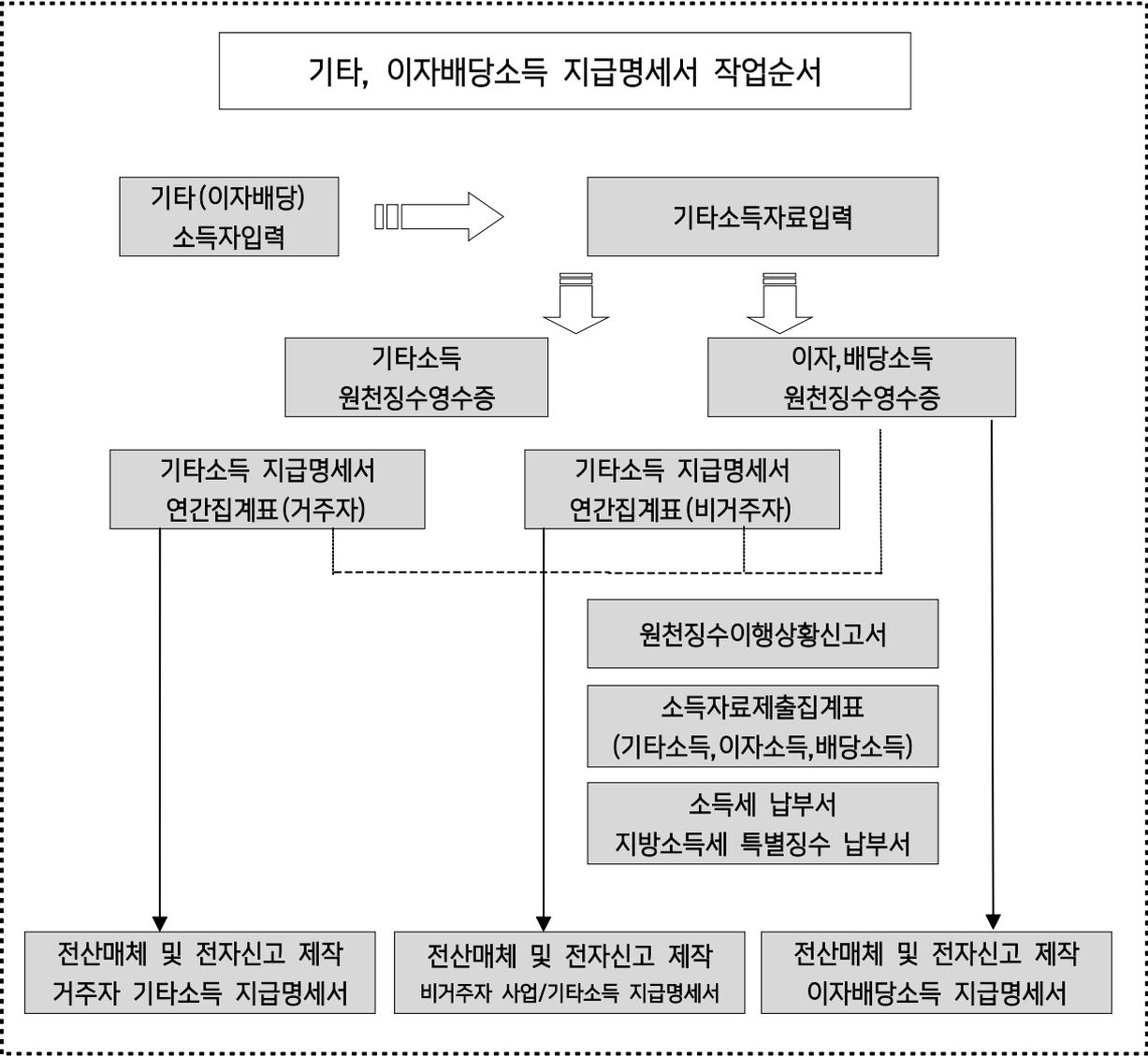
구분	코드	사원명	마감
<input type="checkbox"/>	근로 5000	김상훈	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 5001	이순희	부
<input type="checkbox"/>	일용 0005	최마름	부

구분	코드	사원명	마감
총 인원 수			3명
총 급여액	66,319,010		원
비과세금액			원
결정지방소득세	1,151,617		원
차감소득세	115,161		원
차감지방소득세	1,151,610		원

구분	코드	사원명	마감
수	(23)	제외월수	
수	(24)	가산월수	
수	(25)	중복월수	
수	(26)	근속연수	8
금액			29,754,510
금액			3,000,000
금액			40,131,765
금액			27,279,059
금액			12,852,706
금액			847,905
금액			565,270

퇴직소득자료입력의 데이터를 조회하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VI. 기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 VI-1. 기타, 이자배당소득 전산매체, 전자신고 제작 시 유의사항

1. 기타소득자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2. 비거주 기타소득자는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자, 배당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소득구분코드가 64.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인 경우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구분	연간소득액	연간소득금액	연간소득금액	연간소득금액	연간소득금액
연간소득액	5,000,000	4,000,000	1,000,000	200,000	200,000
소득징수액	5,000,000	4,000,000	1,000,000	200,000	200,000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

## VI-2.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월별 마감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 신고메뉴에서 3.수시 분할제출을 선택하여 마감한 종료연월로 제작 합니다.

코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간소득원인	연간지급건수	연간소득금액	소득세
8888	대준상사	111-81-12345	2	2	4,000,000	800,000

### VI-3.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사업 비거주자 - 보고용)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77.종교인소득 마감 설정 지급명세서 마감/완료 리스트 완료 마감(F4) 기능모음(F11)

기준 1. 귀속년월 2020년 01월 ~ 2020년 12월 구분 2. 비거주자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77.종교인소득이고, 연말여부가 '여'인 소득자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내용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

구분	코드	소득	소득자명	주민등록번호	귀속년도	지급년도	지급일자	연간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소득
1	00003	40	JHONE	외 AS6SD1234	2020	2020	2020-01-20	3,000,000		3,000,000	2.000	
2	00003	40	JHONE	외 AS6SD1234	2020	2020	2020-02-20	3,000,000		3,000,000	2.000	
3	00003	40	JHONE	외 AS6SD1234	2020	2020	2020-03-20	3,000,000		3,000,000	2.000	
4	00003	40	JHONE	외 AS6SD1234	2020	2020	2020-04-20	3,000,000		3,000,000	2.000	
5	00003	40	JHONE	외 AS6SD1234	2020	2020	2020-05-20	3,000,000		3,000,000	2.000	
6	00003	40	JHONE	외 AS6SD1234	2020	2020	2020-06-20	3,000,000		3,000,000	2.000	
7	00003	40	JHONE	외 AS6SD1234	2020	2020	2020-07-20	3,000,000		3,000,000	2.000	
8	00003	40	JHONE	외 AS6SD1234	2020	2020	2020-08-20	3,000,000		3,000,000	2.000	
9	00003	40	JHONE	외 AS6SD1234	2020	2020	2020-09-20	3,000,000		3,000,000	2.000	
10	00003	40	JHONE	외 AS6SD1234	2020	2020	2020-10-20	3,000,000		3,000,000	2.000	
11	00003	40	JHONE	외 AS6SD1234	2020	2020	2020-11-20	3,000,000		3,000,000	2.000	
12	00003	40	JHONE	외 AS6SD1234	2020	2020	2020-12-20	3,000,000		3,000,000	2.000	
연간소득계: [1명]								36,000,000	0	36,000,000		
소득징수계: [0명]												

원천징수 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코드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간지급 인월	연간지급 건수	연간지급액계 연간소득금액계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세액계
8888	CP COMPANY	111-81-12345	U.S.A 14 STREET, 254	1	12	36,000,000			792,000

### VI-4. 기타(이자배당) 소득자입력

#### 1. 이자배당 소득의 종류 코드화

소득의 종류가 “111~127” 인 경우 이자소득, “151~165” 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소득구분코드 앞에 “1”을 추가하여 “111”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자배당코드보기

이자소득(11~49)		소득의 종류		배당소득(51~99)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D1)	11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법§17D1)	51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법§17D1)	51
내국법인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D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소법§17D2)	5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소법§17D2)	52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법§16D3)	13	의제배당(소법§17D3, 법법§16)	53	의제배당(소법§17D3, 법법§16)	53
신용계·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법§16D4)	1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법§17D4)	5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법§17D4)	5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D5)	15	집합투자기금으로부터의 이익(소법§17D5)	55	집합투자기금으로부터의 이익(소법§17D5)	55
외국법인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D6)	16	외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미와 유사한 성격의 배당(소법§17D6)	56	외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미와 유사한 성격의 배당(소법§17D6)	5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법§16D7)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법§17D7)	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법§17D7)	5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법§16D8)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법§119 2호, 법법§99 2호)	5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법§119 2호, 법법§99 2호)	5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미만 등)(소법§16D9)	1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이상)(소법§16D10)	20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법§17D8)	59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법§17D8)	5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법§16D11)	2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법§16D11)	22	주가연계증권(소법§26의3D1, ELS)	60	주가연계증권(소법§26의3D1, ELS)	60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법§26D)	23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법§26의3D2, DLS)	61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법§26의3D2, DLS)	6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형 §14의2D)	24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법§26의3D2)	62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법§26의3D2)	62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법§16D12)	25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법§17D9)	63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법§17D9)	63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법§16D13)	26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법§17D10)	64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법§17D10)	64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미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약의 이익(법법§93 1호)	27	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D3, ETN)	65	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D3, ETN)	65

닫기

### VI-5.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지급년월 2020년 01월

코드: 00004 이자배당내 | 주민등록번호: 800420-\*\*\*\* | 소득구분: 117 국외에서 받는

기타 관리 항목

소득구분	금융상품	조세특례종류	유가증권표준코드	영수일자
11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예금등-원화]				

소득지급내역

귀속월	지급일자	채권이자구분	이자지급대상기간	금액	세율	소득세
2020-01	2020-01-20		2020-01-01 ~ 2020-01-31	1,200,000	14.00%	168,000
연간소득계 (건수: 1)				1,200,000		168,000
소득징수계 (건수: 0)						
소득제외계 (건수: 1)				1,200,000		168,000

세액감면제한세출근거: 영문법인명

계정과목: ?

변동자료구분: 0, 처음제출

이자배당 소득자에 대한 소득 자료를 입력 하는 메뉴입니다.  
 기타(이자배당)소득자 입력 메뉴에 등록된 이자, 배당 소득자를 불러와 자료를 등록합니다.

### VI-6.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기준 1. 귀속년월 기간 2020년 01월 ~ 2020년 12월 인쇄영수증 지급내역

코드: 00004 이자배당내 | 주민(외국인)번호: 800420-\*\*\*\*

지급내역

소득구분	금융상품명	귀속월	지급일자	영수일자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법인세
117 국외에서 받는 이자	[예금등-원화]	2020-01	2020-01-20		1,200,000	14.0%	168,000	
연간소득계 (건수: 1)					1,200,000		168,000	
소득징수계 (건수: 0)								
소득제외계 (건수: 1)					1,200,000		168,000	

유가증권표준코드: [ ] 채권이자구분: [ ]

이자출처: 국민은행 과세구분: T 일반과세

지급대상기간: 2020/01/01 ~ 2020/01/31 계좌번호(발행번호): 2151-1531-4844

조세특례종류: [ ]

이자배당 소득자료입력에 입력된 자료를 반영, 자동 작성되며 전자신고 마감 및 조회, 출력 하는 메뉴입니다. 발행자 보관용과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서식을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VI-7. 기타이자배당소득자료제출집계표

기타이자배당소득자료제출집계표 기능모음(F11) ▾

지급년월 2020 년 01 월 ~ 2020 년 12 월 소득구분 1.기타소득 ▾

신고용 관리용

정 수 의 무 자	1.사업자등록번호	222-22-22227	2.법인(주인)등록번호	970414-1820912
	3.법인명(상호)	부동산	4.대표자명	김동원
	5.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15 (동촌동, 서울시니	6.전화번호	033-533-8629

**제 출 내 용**

7. 귀속년도	8. 제출년월일	9. 소득종류	10. 매수	11. 건수	12. 소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13. 소득세	14. 법인세	15. 농어촌특별세	16. 지방소득세
2020	2021-01-31	기타소득	2	10	40,000,000	5,600,000	0		560,000

제출년월일 2021 년 01 월 31 일 상세보기

▶ 참고 사항

결정세액			가납부세액			차감징수(환급)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VI-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일 보내기 마감(F4) 불러오기(F3) 저장(Ctrl+S) One-Shot(Ctrl+O) 기능모음(F11) ▾

귀속기간 2020 년 01 월 ~ 2020 년 01 월 지급기간 2020 년 01 월 ~ 2020 년 01 월 0.정기신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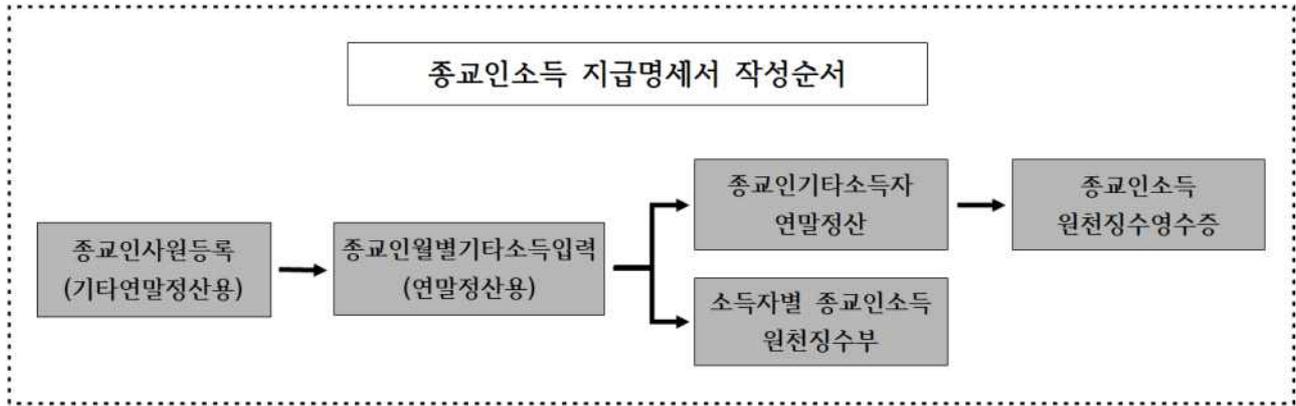
1.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2.귀속연월 202001 3.지급연월 202001 일괄납부 여부 부 사업자단위 여부 부

원천징수내역 부표-거주자 부표-법인원천 환급신청 가납부세액 진행미환급조정 차월이월승계

구분	코드	소득지급(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9. 당월 조정 환급세액	10.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11. 농어촌 특별세
		4. 인원	5. 총지급액	6. 소득세 등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연말정산	A26								
	A30	1	3,000,000	60,000				60,000	
	A41								
	A43								
중과연말정산	A44								
	A42	2	8,000,000	800,000					
	A40	2	8,000,000	800,000				800,000	
	A48								
공적연금(매월)	A45								
	A46								
	A47								
	A50	1	1,200,000	168,000				168,00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정세액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18. 조정대상환급 (14+15+16+17)	19. 당월조정 환급액계	20. 차월이월 환급액(18-19)	21. 환급신청액
12. 전월미환급	13. 기환급신청	14. 잔액 12-13	15. 일반환급	16. 신탁재산	17. 금융등	17. 합병등				

## Ⅶ.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20~80%)	근로소득공제 (2~70%)	
소득금액				
소득 공제	인적	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펀드 저축액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과세표준				
(×) 세율(6~42%)				
산출세액				
세액 공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	○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700만원 한도))		○	○
	특별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	○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900) 한도)	×	○
		기부금(금액별 100/110, 15%, 25%, 30%)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 (7만원)	○ (13만원)
	조특법	정치자금기부금 등	○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				

## Ⅶ-1.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1. 종교인 직원등록(기타연말정산용)

종교인 직원등록(기타연말정산용) | 종교인 기타소득자 불러오기 | 직원명 잠금 | 기본공제 재계산(F8) | 검색 (Ctrl+F6) | 기능모음(F11)

구분: 0.전체 | 정렬: 1.코드

코드	직원명	주민(외국인)번호
1	홍길동	내 900108-*****
2	김길동	내 991111-*****

기초사항

1. 입사년월일: 2018년 01월 01일 ? | 국적: KR ? 대한민국

2. 내/외국인구분: 0 내국인 | 3. 거주지: KR ? 대한민국

4. 주민번호: 900108-\*\*\*\*\* | 5. 거주구분: 0 거주자

6. 주소: 03324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5길 20-12  
(상세주소) (갈현동, 강남편선)

7. 전화번호: ) -

8. 휴대전화번호: 010 | 1111 | 2222

9. 이메일: Smarta @ douzone.com | 직접입력

10. 퇴사년월일: 년 월 일 ? | 대표자: 0 부

11. 이월여부: 0 여

부양가족명세 (2020. 12. 31 기준)

연말정산관계	기본	세대	부녀	장	경로	출산	자녀	한부모	성명	주민(외국인)번호
1 0. 본인	본인	○							홍길동	내 900108-*****
2 3. 배우자	배우자								김길동	내 991111-*****
3 1.(소)직계존속 60세 이상				○					홍길동	내 300101-*****
4 4. 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		자녀	내 121211-*****
5										
합계					1		1			

재직/전체 2명 / 2명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는 직원을 등록하고, 해당 직원별 인적 사항 및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메뉴로,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기본 정보로 본인 및 부양가족 사항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2. 종교인 월별소득입력(연말정산용)

종교인 월별소득입력(연말정산용) | 지급일자 | 재계산(F8) | 마감(F4) | 기능모음(F11)

귀속년월: 2020년 05월 | 구분: 1.급여 | 지급일: 2020년 05월 25일 ? | 정렬: 1.코드순

코드	직원명	급여항목	지급금액	공제항목	지급금액
1	종교인직원	종교인소득	3,000,000	소득세	151,840
2	종교인직원2	종교인상여	1,000,000	지방소득세	15,180
		종교활동비(비과세)	1,400,000	농특세	
		식대	150,000		
		과세	4,050,000		
		비과세	1,500,000		
		감면소득			
		지급액계	5,550,000	공제액계	167,020
				차인지급액	5,382,980

인원(퇴직)

지급/공제 조회구분: 2.전체사원-현재

항목	TX	금액
종교인소득	과세	3,000,000
종교인상여	과세	1,000,000
종교활동비(비과세)	비과	1,400,000
식대	과세	50,000
식대	비과	100,000
과세		4,050,000
비과세		1,500,000
감면소득		0
지급액계		5,550,000

공제항목	지급금액
소득세	151,840
지방소득세	15,180
농특세	
공제액계	167,020
차인지급액	5,382,980

주민(외국인)번호: 900108-\*\*\*\*\*

종교인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급여내역을 입력하는 메뉴로, 과세 및 비과세 수당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당/공제 등록 > 비과세/감면 설정 탭에 수당 항목별 설정된 한도를 자동 반영해주며, 각 비과세 수당은 지급명세서 제출, 미제출 여부에 따라 제출 항목인 경우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 현재 종교인 소득 제출 비과세 항목은 ‘종교활동비(H17)’만 해당됩니다.)



- ☛ 서식 미확정(개정)으로 기존 반영되어있던 지급명세서 제출여부가 현재 기준과 상이한 경우, 비과세/감면 설정 탭 하단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조정]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재반영 합니다.

### 3. 종교인 기타소득자 연말정산

본 메뉴는 종교인 월별 기타소득자 입력에 정리된 종교인 소득과 기타소득자료 입력에 소득구분 코드가 77번인 종교인 소득을 불러오기 하여 종교인 소득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불러오기 및 직접 입력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종교인소득	소득명세	소득금액	소득공제	기부금	연금명세	공제대상지녀	종교인소득
19. 종교인소득금액(18)		2,410,000					
20. 본인		1,500,000					
21. 배우자							
22. 부양가족							
23. 경로우대							
24. 장애인							
25. 부녀자							
26. 한부모가족							
27. 연금보험료공제							
28. 기부금(이월분)							
29. 종합소득공제		1,500,000					
30. 개인연금저축							
31. 투자조합출자 등							
32.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33. 종합소득과세표준		910,000					
34. 산출세액							54,600
35. 자녀세액공제							
36. 연금계좌							
37. 기부금							
38. 표준세액공제							54,600
39. 외국납부							
71. 결정세액(49-54-70)							54,600
72. 결정세액		0					0
73. 중(간) 근무지		0					0
74. 주(현) 근무지		826,840					82,680
75. 차감정수세액(72-73-74)		-826,840					-909,520

16.종교인소득 17.필요경비

전 사원 불러오기를 실행하면, 입력된 종교인 소득과 필요경비가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필요경비 계산서식>

종교인이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인이 받은 금액 x 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6,000,000 + (2천만원 초과금액의 5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6,000,000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0,000 + (6천만원 초과금액의 20%)

종교인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인관련종사자가 받은금액 x 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6,000,000 + (2천만원 초과금액의 x 5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6,000,000 + (4천만원 초과금액의 x 30%)
6천만원 초과	32,000,000 + (6천만원 초과금액의 x 20%)

❶ 연금보험료공제

종교인 월별 기타소득 입력과 [소득명세] 탭에 입력된 현 근무지와 종전 근무지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분은 직접 입력하며, 연금보험료 공제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내역	역지	출액	공제대상금액
현 근무지			
국민연금(지역)		1,000,000	1,000,000
종(전) 근무지			
합계		1,000,000	1,000,000

※ 작성방법 및 한도 : 지출액 전액

[확인]

❷ 기부금(이월분)

2019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부금(이월분) 공제금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20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된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탭의 기부금조정명세 - [전년도]기부금조정명세서에 해당내역을 입력하고,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하여 [정산명세] 탭의 기부금(이월분)에 공제금액을 반영합니다.

2013.12.31. 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❸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소득자 본인 명의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제금액 : 불입액의 40%, 공제한도 : 72만원) [조특법 제86조]

구분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불입금액
1. 개인연금저축			2,000,000
개인연금저축			2,000,000
합계			2,000,000

※ 공제한도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 가입분) Min(불입액×40%, 72만원)

[코드도움(F2)] [삭제(F5)] [확인(Tab)]

❶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종교인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입력해 공제합니다.

입력 시 투자 연도(2018, 2019, 2020년) 와 구분(일반, 벤처) 하여 투자, 납입금액을 팝업창에 입력하면, 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서 직전 2개년 투자, 출자금액에 대해서 공제 됩니다. (2020년 신고기준 : 2018, 2019, 2020년 투자 출자금액)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 투자 분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해당되어, 2,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한 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 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 제16조]

투자시기	구분	투자금액	공제율	공제한도액
2018년 출자·투자분	일반	투자 출자한 금액	10%	종교인소득금액의 50%
	벤처	1,500만원 이하분	100%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자·투자분	일반	투자 출자한 금액	10%	
	벤처	3,000만원 이하분	100%	
		5,000만원 이하분	70%	
		5,000만원 초과분	30%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 ❶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항목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2018년 투자 분 중 공제율 30%, 50%, 100% 적용분 (벤처분), 2019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 중 30%, 70%, 100% 적용분 (벤처분) 은 제외)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한도 적용 대상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❷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❸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자녀수 공제는 2019.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7세 이상 자녀(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자녀세액공제
	2019.1.1. 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① 자녀수 공제	자녀세액공제대상 : 7세 이상의 자녀 ※ 취학아동제외 [단,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포함]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자녀세액공제인원 - 2) × 30만원
② 출산 · 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종교인 사원등록 기초사항 메뉴에서 출산·입양공제에 해당하는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 정확하게 선택 합니다.

기초사항

구분: 0.신제 | 정렬: 1. 코드

1. 입 사 년 월 일 2019 년 01 월 01 일 ? 국 적 KR ? 대한민국

2. 내 / 외국인 구분 0 내국인 3. 거 주 지 국 KR ? 대한민국

4. 0.주민 번호 781201- 5. 거 주 구 분 0 거주자

6. 주 소 ?

( 상 세 주 소 )

7. 전 화 번 호 ) -

8. 휴대 폰 번 호 ) -

9. 이 메 일 @

10. 퇴 사 년 월 일 년 월 일 ?

11. 이 월 여 부 0 여

부양가족명세 (2019. 12. 31 기준)

연말정산관계	기본	세대	부녀	장래	경로	출산	입양	자녀	한부모	성명	주민(외국인)번호
0. 본인	본인	○								김길동	내 781201-*****
2 4. 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1)					내
3 4. 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2)		0. 부			내
4								1. 첫째			
								2. 둘째			
								3. 셋째이상			
합 계							2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입력 시 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2020년 귀속분부터, 나이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변경됩니다.

종교인소득금액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4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
1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연금계좌** ✕

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1. 퇴직연금			5,000,000
2. 과학기술인공제회			4,000,000
3. 연금저축			6,000,000
퇴 직 연 금			5,000,000
과 학 기 술 인 공 제 회			4,000,000
연 금 저 축			6,000,000
합 계			15,000,000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 700만원 한도 (종교인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50세 이상자 연 900만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50세 이상은 연 600만원 한도(종교인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세액공제율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종교인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세액공제

■ 공제 순서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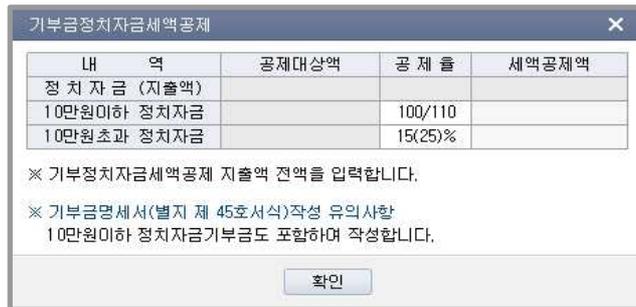
※ 세액감면·공제 적용 순서  
 세액감면 → 자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❶ 기부금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지출액) 기부금 입력란에 지출액을 입력하면 10만원 이하분에 대하여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혹은 25%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 기부금 탭에서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작성 후 기부금 조정 명세 오른쪽 상단 탭  
-> 공제액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를 실행하면 입력된 정치자금 기부금이 정산 명세에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 종교인이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조특법 제76조]

구분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처리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 금액	기부금액의 100/110을 지출한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사업자인 거주자	10만원 초과한 금액은 이월결손금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 산입함
	사업자이외의 거주자 (종교인)	10만원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의 15%(해당금액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25%)를 지출한 과세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 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나, 연말정산 사업 소득자는 포함합니다.)
- 기부금 제출자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는 본인과 기본 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나이 제한받지 않음)이 지급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포함합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합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 • 기부금 공제 순서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 다음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분과 해당 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  
다음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합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 -> 이월 기부금(해당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 금액 발생 시 공제)

### • 각 기부금 한도액

기부금 종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 공제율
①정치자금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해당금액의 15% (25%)
②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0%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법정기부금 한도액에 대한 규정 없음)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 30%) [ 단, 법정 / 지정 기부금 이월액 : - 2014 ~ 2015년분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 : 25% - 2016 ~ 2018 년분 2천만원 이하 : 15% 2천만원 초과 : 30% ]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①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 초과액 + ②법정기부금)] × 30%	
④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①+②+③)] × 10% +min[기준소득금액 - (①+②+③)] ×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전년도이월액과 해당과세기간 지출 기부금의 합계액	
⑤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①+②+③)] × 30%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를 적용받는 금융소득

### ❶ 표준세액공제

종교인 소득자의 표준 세액공제는 **7만원**을 적용합니다.

❶ 외국납부세액공제

- 필요경비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 중 종교인 소득은 세액공제 방식만 적용 가능합니다.
- 외국납부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할 때, 한도 초과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 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고, 한도액은 자동계산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min (①, ②)

① 외국납부세액 = 직접외국납부세액 + 의제외국납부세액

② 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내역	공제율	공제액
국외원천소득	10,000,000	
납세액(외화)	20,000	
납세액(원화)	30,000	세액공제액 20,000
납세국명	멕시코	납세일 2020-06-30 ?
신청서제출일	2019-06-30	국외종교단체명 등 해외선교단
종사기간	2020-01-01 ~ 2020-06-30	직책 목사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 Min(①,②)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 직접외국납부세액 + 의제 외국납부세액  
 ② 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확인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공제 적용 순서』

종교인 연말정산 공제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입력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은 아래 순서로 자동 반영됩니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소득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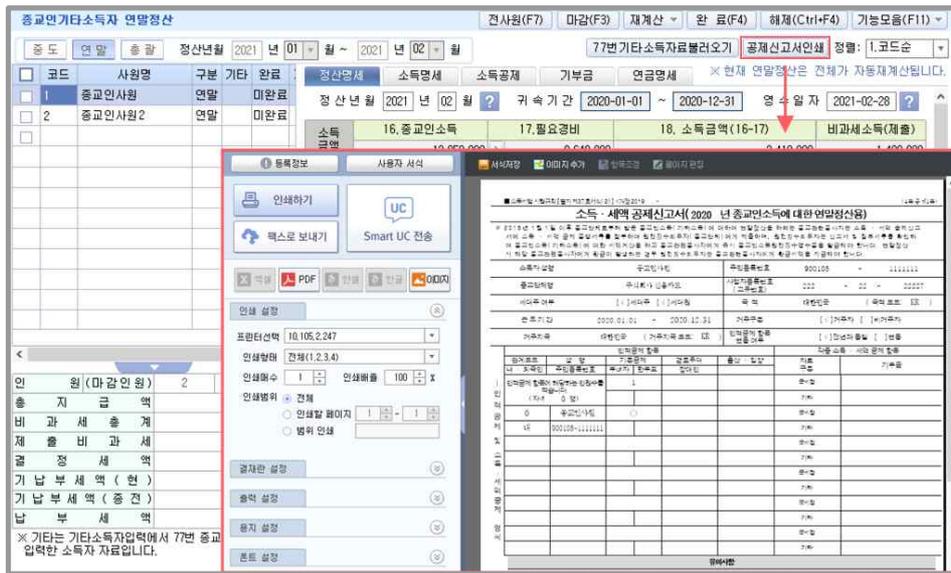
(28) 기부금(이월금) -> (30)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31)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27) 연금보험료 공제

3. 세액공제

(35) 자녀 세액공제 -> (37) 정치자금 기부금 -> (38)표준 세액공제 -> (37) 법정 기부금 ->  
 (37)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7) 지정기부금 -> (39) 외국납부세액공제 -> (36)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액공제신고서(2020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정산명세 탭 우측상단에 공제신고서 인쇄를 클릭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서식이 보이고 인쇄됩니다. 정산명세 탭에서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모두 인쇄 가능합니다.



❶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가감 징수세액

- 종교인 기타소득자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에 따라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 종교인월별기타소득입력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소득세, 지방 소득세는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에 불러와지고, 종교인기타소득자 연말정산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한 종전근무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에 불러와집니다.
-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72.결정세액		0	0	0	0
기납부 세액	73. 종(전) 근무지	120,000	12,000	0	132,000
	74. 주(현) 근무지	703,200	70,320	0	773,520
75. 차감징수세액(72-73-74)		-823,200	-82,320	0	-905,520

❶ 소득명세

종교인월별기타소득입력(연말정산용) 메뉴에서 월별로 입력된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 기타소득자 연말정산 소득 명세에서 월별로 나타납니다. 종교활동 금액 및 물품에 대한 비과세소득은 제출 비과세로 반영되고, 나머지 비과세 소득은 미제출 비과세로 반영됩니다.

[소득명세] 탭 상단에 종전 근무지 입력을 누르면, 종전 근무지의 종교인 소득 자료와 비과세 소득, 연금보험료, 소득세, 지방 소득세, 근무기간을 직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해당 서식에서 종전 근무지 자료를 입력합니다. 종전소득은 6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❶ 소득공제

종교인사원등록(기타연말정산용)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된 자료는 종교인 기타소득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탭에 반영됩니다. 부양가족 명세를 수정하면, 수정사항도 반영됩니다.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된 부양가족은 정산 명세에 바로 반영됩니다.

종교인기타소득자 연말정산

전사원(F7) 마감(F3) 재계산 재료(F4) 해제(Ctrl+F4) 가능모음(F11)

종도 연말 총괄 정산년월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월 77번기타소득자료불러오기 정렬: 1.코드순

코드	사원명	구분	기타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종교인사원	연말	미완료
<input type="checkbox"/>	2	종교인사원2	연말	미완료

정산명세	소득명세	소득공제	기부금	연금명세	※ 현재 연말정산은 전체가 자동재계산됩니다.			
관계코드	성명	기부한장령출산자구	부녀부배로	한부배로	70-연령	자녀	구분	기부금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본인	자모인					
0	종교인사원	본인					국세청	
1	900108-*****						기타	
1	홍길동	60세 이상			○		국세청	
1	300101-*****						기타	
3	김길동	배우자					국세청	
1	991111-*****						기타	
4	자녀	20세 이하				○	국세청	
1	121211-*****						기타	
5							국세청	
							기타	
계	4명	4	0	0	0	1	0	1
							국세청	0
							기타	0

인 원 (마감인원) 2 (0) 명

총 지 금 액 86,600,000 원

비 과 세 총 계 41,500,000 원

제 출 비 과 세 36,600,000 원

결 정 세 액 2,540,500 원

기 납 부 세 액 ( 현 ) 2,419,200 원

기 납 부 세 액 ( 중 전 ) 120,000 원

납 부 세 액 1,300 원

※ 기타는 기타소득자입력에서 77번 종교인소득으로 입력한 소득자 자료입니다.

※ 관 계 : 0.소득자본인 1.소득자의 직계존속 2.배우자의 직계존속 3.배우자 4.직계비속(자녀,입양자) 5.직계비속(코드 4제외) 6.형제자매 7.수급자(코드1~6제외) 8.위탁아동

※ 기 본 코 드 : 6.기초수급을 선택한 부양가족은 관계코드 7. 수급자로 출력(전자신고)됩니다.

※ 출산입양공제 자녀가 몇명체 자녀인지 선택(1:첫째, 2:둘째, 3:셋째이상 -> 30,50,70만원 차등공제)

※기부금공제항목은 본인뿐만아니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제한)이 지정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포함합니다.

부녀자공제 : 종교인 본인이 여성(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여성 종교인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 유무와는 관계없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❶ 기부금

「해당 연도 기부 명세」

1.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서 ‘부양가족 코드 도움(F2)’로 기부자를 불러오고, 기부처와 기부 코드, 건수, 기부 명세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기부 명세는 2.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에 반영됩니다.

※ 기부금에는 본인 기부금뿐만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나이 제한 받지 않음)이 지급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포함합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합니다.

종교인·기타소득자 연말정산

전사원(F7) 공제등록 마감(F3) 재계산 완 료(F4) 해제(Ctrl+F4) 기능모음(F11)

중도 연말 총괄 정산년월 2021 년 01 월 ~ 2021 년 02 월 77번기타소득자료불러오기 정렬: 1.코드순

정산명세 소득명세 소득공제 기부금 연금명세 ※ 현재 연말정산은 전체가 자동계산됩니다.

해당연도 기부명세 기부금 조정명세 조정명세서 현황 급여공제내역 액셀

1. 해당연도 기부명세

NO	기부자			기부처		유형	코드	기부명세		
	관계	성명 내.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건수	합계금액	기부대상액
1	1.본인	종교인, 내	900108-*****	123-45-	교회	종교	41	13	1,000,000	1,000,000
2	1.본인	종교인, 내	900108-*****	211111-*****	유니세프	지정	40	1	3,000,000	3,000,000
3										
합계								14	4,000,000	4,000,000

2.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 당해연도 기부금 반영

구분	10.법정	20.정치	40.지정	41.종교	42.우리	50.제외
본인			3,000,000	1,000,000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외						
합계			3,000,000	1,000,000		

인 원 (마감인원) 2 (0) 명

총 지 급 액 86,600,000 원

비 과 세 총 계 41,500,000 원

제 출 비 과 세 36,600,000 원

결 정 세 액 1,565,500 원

기 납 부 세 액 ( 현 ) 2,419,200 원

기 납 부 세 액 ( 종 전 ) 120,000 원

납 부 세 액 -973,700 원

※ 기타는 기타소득자입력에서 77번 종교인소득으로 입력한 소득자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코드도움

코드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번호
2	본인	김길동	781201-2111111
2	직계비속(자녀, 입	김아무개	190324-4211121
2	직계비속(자녀, 입	김아수	190324-4211111

관계

빠른이동

관계(으)로 검색합니다.

확인(Enter) 취소(ESC)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2.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 우측 상단 당해 연도 기부금 반영 탭을 누르면, 3. 기부금 조정명세로 데이터 반영 팝업창이 뜹니다. “예”를 누르면, 기부금 조정명세 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3.기부금조정명세서로 데이터 반영

2. 해당연도의 기부금합계액을 3.기부금조정명세로 일괄 반영하시겠습니까?  
(기존에 반영된 기부금합계 금액은 삭제됩니다.)

예    아니오

당해연도 기부금 반영

구분	10.법정	20.정치	40.지정	41.종교	42.우리	50.제외
본인			3,000,000	1,000,000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외						
합계			3,000,000	1,000,000		

### 「기부금 조정명세」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입력된 기부내역은 당해 연도 기부금 반영을 통해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기부금 코드별로 나타납니다. 우측 상단 공제액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를 누르고, 정산 명세 반영을 누르면 자동계산 기부금 공제금액이 정산 명세에 반영됩니다.

공제액계산 정산명세보내기

NO	코드	기부연도	(16)기부금액	(17)전년까지 공제된금액	공제대상 금액(16-17)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	이월금액
1	40	2020	3,000,000		3,000,000	1,500,000		1,500,000
2	41	2020	2,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합계			5,000,000		5,000,000	2,500,000		2,500,000

NO	코드	기부연도	(16)기부금액	(17)전년까지 공제된금액	공제대상 금액(16-17)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	이월금액
1	40	2019	3,000,000	450,000	2,550,000	1,000,000		1,550,000
합계			3,000,000	450,000	2,550,000	1,000,000		1,550,000
총계			8,000,000	450,000	7,550,000	3,500,000	0	4,050,000

「조정명세서 현황」

기부금조정명세서 내역은 조정명세서 현황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NO	코드	기부연도	(16)기부금액	(17)전년가지 공제된금액	공제대상 금액 (16-17)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1	40	2019	3,000,000	450,000	2,550,000	2,550,000		
2	40	2020	3,000,000		3,000,000	3,000,000		
3	41	2020	1,000,000		1,000,000	1,000,000		
4								
합계			7,000,000	450,000	6,550,000	6,550,000		

「급여 공제 내역」

종교인월별기타소득입력(연말정산용) 기능모음 - 수당/공제등록 에서 공제내역에 기부금내역을 입력하고 월별공제항목에 기부금금액을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입력의 기부금 탭 기능모음 - 공제설정에서 항목별 기부처 상호 및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반영 하게 되면, 해당연도 기부명세에 반영 및 급여공제내역에서 월별 공제(불입)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코드	공제항목명	공제소득유형	급여
1 903	농특세	1.사용안함	○
2 600	기부금	2.기부금 10.법정	○
3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종교연월별기타소득입력(연말정산용)

계속년월 2020년 12월 월 구분 1. 급여 지급일 2020년 12월 25일 ? 정렬 1. 코드순

코드	사원명	급여항목	지급금액	공제항목	지급금액	잔액	등록
1	종교인사원	종교인소득	2,500,000	기부금	25,000		
2	종교인사원2	종교인상여	200,000	소득세	49,760		
		종교활동비(비과세)	1,400,000	지방소득세	4,970		
		소득	150,000	농특세			
과세			2,750,000				
비과세			1,500,000				
합계			4,250,000				
공제액				79,730			
지급액			4,250,000	차인지급액	4,170,270		

항목	TX	금액
종교인소득	과세	5,500,000
종교인상여	과세	1,200,000
종교활동비(비과세)	비과	2,800,000
소득	과세	100,000
소득	비과	200,000
과세		6,800,000
비과세		3,000,000
합계	소득	0
지급액	계	9,800,000

공제항목	지급금액	
기부금	25,000	
소득세	201,600	
지방소득세	20,150	
농특세		
공제액	계	246,750
차인지급액	계	9,553,250

인원(퇴직)

주인(외국인)번호 991111\*\*\*\*\*

종교연월별기타소득자 연말정산

연말 정산년월 2021년 01월 월 ~ 2021년 02월 월 77번기타소득자료불러오기 정렬: 1. 코드순

코드	사원명	구분	기타	항목	정산명세	소득명세	소득공제	기부금	연금명세	현재 연말정산은 견체가 자동계산됩니다.			
1	종교인사원	연말	미완료	해당연도 기부명세	기부금 조정명세	조정명세서 현황	금액내역	역세					
2	김길동	연말	미완료	기부금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부금	10.법정기	8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코드	급여공제과목명	기부금상장	기부처사유번호	기부처상호
800	기부금	법정	003-00-0000	서울시
901	소득세			
902	지방소득세			
903	농특세			
904	연말정산소득세			
905	연말정산지방소득세			
906	연말정산농특세			

※ 기부금상장 코드 (10.법정 20.장차자금 40.지방 41.종교 42.우려사주 50.제90)

※ 국제정산소득(간판)PDF: 관공시 급여지급일연의 기부금공제금액이 기부금명세서에 입력된 경우 해당 금액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중 공제 방지 영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명세(Tab) 취소(ESC)

## 연금 명세

정산 명세에서 입력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 내역은 연금 명세에 자동 반영됩니다.

종교연월별기타소득자 연말정산

연말 정산년월 2021년 01월 월 ~ 2021년 02월 월 77번기타소득자료불러오기 정렬: 1. 코드순

정산명세	소득명세	소득공제	기부금	연금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연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한기술인공제 4,000,000</li> <li>근로자퇴직급여 3,000,00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저축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저축 5,000,00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연도 구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입금액</li> <li>납입금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금액</li> <li>소득·세액 공제금액</li> <li>납입금액</li> </ul>

인원(마감인원)	명
2	(0)
총지급액	86,500,000 원
비과세총계	41,500,000 원
제출비과세	36,900,000 원
결정세액	470,000 원
기납부세액(현)	2,419,200 원
기납부세액(중견)	120,000 원
납부세액	-2,069,200 원

※ 기타는 기타소득자입력에서 77번 종교인소득으로 입력한 소득자 자료입니다.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구 분 : 0.전체

가속 및 소득명세 종교인 연말정산 내역

사원코드 : 1 사원명 : 홍길동 주민(외국인)번호 : 900108-1 제출일 : 2021-02-28

가족사항 배우자 유/무 : 0 20세이하 : 1명 60세이상 : 1명 70세이상 : 1명 장애인 : 0 부녀자 : 0 한부모 : 0 출산입양 : 0

종교인 소득명세

소득금액		26.종교인소득(과세소득)	27.필요경비	28.소득금액(26-27)
		53,600,000	30,080,000	23,520,000

(15) 월별	(16) 지급일	(17)지급액			미제출 비과세		비과세 합계
		과세소득	종교활동비	합계	식대	그밖의 미제출	
01월	2020-01-25	4,050,000	1,400,000	1,400,000	100,000		1,500,000
02월	2020-02-25	4,050,000	1,400,000	1,400,000	100,000		1,500,000
03월	2020-03-25	4,050,000	1,400,000	1,400,000	100,000		1,500,000
04월	2020-04-25	4,050,000	1,400,000	1,400,000	100,000		1,500,000
05월	2020-05-25	4,050,000	1,400,000	1,400,000	100,000		1,500,000
06월	2020-06-25	4,050,000	1,400,000	1,400,000	100,000		1,500,000
07월	2020-07-25	4,050,000	1,400,000	1,400,000	100,000		1,500,000
08월	2020-08-25	4,050,000	1,400,000	1,400,000	100,000		1,500,000
09월	2020-09-25	4,050,000	1,400,000	1,400,000	100,000		1,500,000
10월	2020-10-25	4,050,000	1,400,000	1,400,000	100,000		1,500,000
11월	2020-11-25	4,050,000	1,400,000	1,400,000	100,000		1,500,000
계		53,600,000	19,800,000	19,800,000	1,200,000	2,500,000	23,500,000

① 구 분 : 0. 전체 / 1. 계속 근무 / 2. 중도 퇴사 중 조회 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② [가족 및 소득 명세] 탭은 가족 사항 및 소득 내역이 지급일 건별로 조회됩니다.

※ 지급 일자 : <종교인 월별 기타소득 입력(연말정산용)>의 지급 일자를 재조회합니다. 지급 일자를 수정한 경우 소득 일자를 다시 [조회] 선택하여 재조회 합니다.

③ [종교인 연말정산 내역] 탭은 <종교인 기타 소득자 연말정산>의 정산 내역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구분: 0. 전체

검색: 기본모음(F1)

정렬: 기본모음

소득금액	26. 종교인소득(과세소득)	27. 필요경비	>	28. 소득금액(26-27)	
	53,600,000	30,080,000		23,520,000	

정산연세

29.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23,520,000	43. 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과액	0
30. 본인	1,500,000	44. 종합소득과세 표준	15,970,000
31. 배우자	1,500,000	45. 산출세액	1,315,500
32. 부양가족	2명 3,000,000	46.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1명 150,000
33. 경로우대	1명 1,000,000	출산입양 0명	0
34. 장애인	0명	47. 연금계좌세액공제	0
35. 부녀자	0명	48. 기부금세액공제	0
36. 한부모가족	0명	49. 표준세액공제	70,000
37. 연금보험료공제	550,000	50. 외국납부세액공제	0
38. 지정기부금	0	계	0
39. 지정기부금 외	0		
40. 종합소득공제	7,550,000		
41.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0		
42. 투자조합합계소득공제	0		

51. 결정세액

52. 종(간)근무지	120,000	12,000	0	132,000
53. 주(합)근무지	1,822,000	182,180	0	2,004,240
54. (53)차감합계(합)근무지세액	-1,942,000	-194,180	0	-2,136,240

④소득자별로 [소득자별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부]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하기 UC

맥스로 보내기 Smart UC 전송

인쇄 설정

프린터선택 10.105.2.247

인쇄형태 소득자별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

인쇄매수 1 인쇄배율 100%

인쇄범위 전체

인쇄할 페이지 1 ~ 1

범위 인쇄

클래잔 설정

출력 설정

종지 설정

문트 설정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인쇄일: 2021.03.10

인쇄번호: 00000000000000000000

연월일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소득금액	연월일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소득금액
1월분 2020-01-26	4,080,000	181,840	18,180	7월분 2020-07-26	4,080,000	181,840	18,180
2월분 2020-02-26	4,080,000	181,840	18,180	8월분 2020-08-26	4,080,000	181,840	18,180
3월분 2020-03-26	4,080,000	181,840	18,180	9월분 2020-09-26	4,080,000	181,840	18,180
4월분 2020-04-26	4,080,000	181,840	18,180	10월분 2020-10-26	4,080,000	181,840	18,180
5월분 2020-05-26	4,080,000	181,840	18,180	11월분 2020-11-26	4,080,000	181,840	18,180
6월분 2020-06-26	4,080,000	181,840	18,180	12월분 2020-12-26	4,080,000	181,840	18,180
연말	-1,942,000	-194,180	계	합계	53,600,000	30,080,000	23,520,000

합계: 53,600,000 (소득금액) / 30,080,000 (필요경비) / 23,520,000 (소득금액)



❶ 전자(전산매체) 제작

연말정산 전자(전산매체) 신고에서 8. 종교인소득(기부금) (전자신고 구분코드 : J)을 선택하면 마감된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가 나타납니다. 해당 회사별로 체크하고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신고합니다.

2020년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202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제출대상 기간은 1. 연간(1.1~12.31) 지급분, 2. 휴폐업에 의한 수시 제출분 3. 수시분할 제출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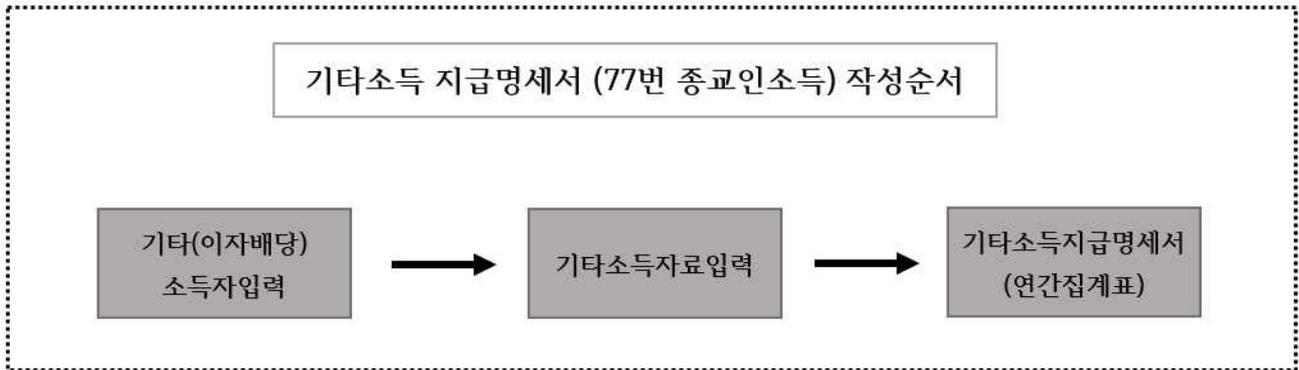


❷ 데이터조회

제작한 전자신고 파일(전자신고 구분코드 : J)을 데이터 조회 탭에서 미리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Ⅶ-2.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77번 종교인소득)



### 1. 기타(이자배당) 소득자입력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소득구분코드 '77.종교인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자를 등록하고, 기초정보를 입력합니다.

### 2. 기타소득자료입력

소득구분	법인/개인	필요경비율	영수일자	연말정산적용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구거	계정과목
77	개인		2020-01-20	부			

귀속년월	지급년월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과세소득	세율(차)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세액계	차인지급액
2020-01	2020-01	20	4,700,000	3,760,000	940,000		217,440		21,740		239,180	4,460,820
연간소득계		4,700,000	3,760,000	940,000			217,440		21,740		239,180	4,460,820
소득징수계		4,700,000	3,760,000	940,000			217,440		21,740		239,180	4,460,820

기타(이자배당) 소득자입력에서 등록한 종교인소득자(77.종교인소득)에게 지급하는 소득내역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 금액은 아래 표의 계산식으로 자동 계산되며, 편집 가능합니다.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계산창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함) 중 7MA지출액 소요된 필요경비,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소득주변에 따른 적용특성, 2018.1.1.부터 시행함)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B)	필요경비
B ≤ 2천만원	B-0.8
2천만원 < B ≤ 4천만원	1,600만원-(B-2천만원)×50%
4천만원 < B ≤ 6천만원	2,600만원-(B-4천만원)×30%
B > 6천만원	3,200만원-(B-6천만원)×20%

확인(Enter)

- ☞ 비과세소득 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기재합니다.
- ☞ 종교인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교인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됩니다. (소령§202④)
- ☞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유의사항

- 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고 적은 경우 추가 납부합니다.
- ② 간이세액표는 필요경비도 감안하여 적용되므로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을 적용합니다.
- ③ 지급건별로 필요경비(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연간 지급액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소득세)와 건별 징수한 소득세 합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3.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77.종교인소득 마감 설정 지급명세서 마감/완료 라스트 완료 마감(F4) 기능모음(F11)

기준 1. 귀속년월 2020년 01월 ~ 2020년 12월 구분 1. 거주자 \* 기타소득지입액의 소득구분코드가 77.종교인소득이고, 연말여부가 '대인' 소득자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자 입력사항 및 소득내용 사회,공동종교도소득명세 마감조회기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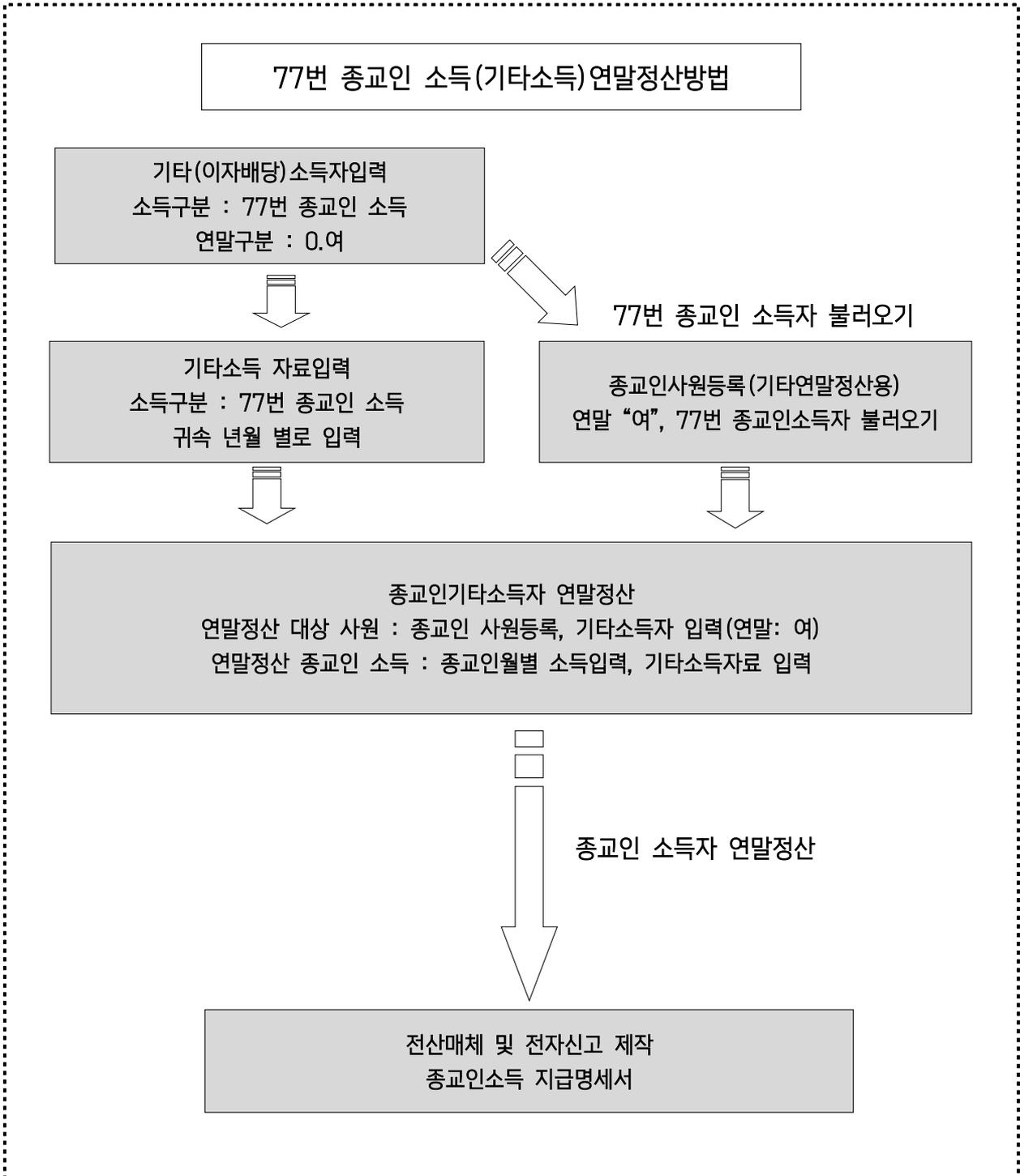
코드	소득	소득자명	주민등록번호	귀속년도	지급년도	지급건수	연간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과세소득
1	00001	62 기타소득1	760206-*****	2020	2020	12	60,000,000	48,000,000	12,000,000	
2	00002	69 기타소득2	801116-*****	2020	2020	12	36,000,000		36,000,000	
3	00005	77 종교종	710306-*****	2020	2020		4,500,000	3,500,000	900,000	

오류 항목

회사	사원	레코드	내용
디존상사	홍길동	C	[기타소득지입액] 주민등록번호가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디존상사	홍길동	C	[기타소득지입액]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이어야 합니다.

종교인 기타소득자(77.종교인소득)의 연간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과 상이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마감 검증시 체크되니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Ⅶ-3. 77번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연말정산 방법



1. 기타(이자배당)소득자 입력

코드	소득자명	거주	주민(외국인)번호	소득구분
<input type="checkbox"/> 00001	기타소득1	거주	내 760206-*****	62 그 밖에 필요경비
<input type="checkbox"/> 00002	기타소득2	거주	내 801116-*****	69 분리과세기타소득
<input type="checkbox"/> 00003	JHONE	비거	외 A36301-*****	40 사업
<input type="checkbox"/> 00004	이자배당1	거주	내 800420-*****	117 국외에서 받는 여
<input type="checkbox"/> 00005	홍길동	거주	내 710206-*****	77 종교인 소득
<input type="checkbox"/> 00006				
		전체	5명	

**기본사항등록**

소득구분/연말구분 77 ? 종교인 소득    연말 0 | 0.대

내외국인/국적 0 0.내국인    거주지국 KR ? 대한민국

소득자구분/실명구분 111 ? 내국인주민등록번호    0 | 0.실명

개인 / 법인 1 1.개인    필요경비율 %

※ 필요경비율 (소득구분코드:72,73,75,76,79,80)  
 2018.4.1~2018.12.31 :70%  
 2019.1.1이후 :60%

**연적사항등록**

법인명(대표자명) \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

주민등록번호 710206-1111111    생년월일 1971 년 2 월 6 일 ?

우편번호 \_\_\_\_\_ ?

주 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_\_\_\_\_ - \_\_\_\_\_

핸드폰번호 \_\_\_\_\_ ) \_\_\_\_\_ - \_\_\_\_\_

E-mail등록 \_\_\_\_\_ @ \_\_\_\_\_

은행/계좌번호/예금주 \_\_\_\_\_ ? \_\_\_\_\_ 홍길동

이월여부 0 | 0.대    신탁이익여부 1 |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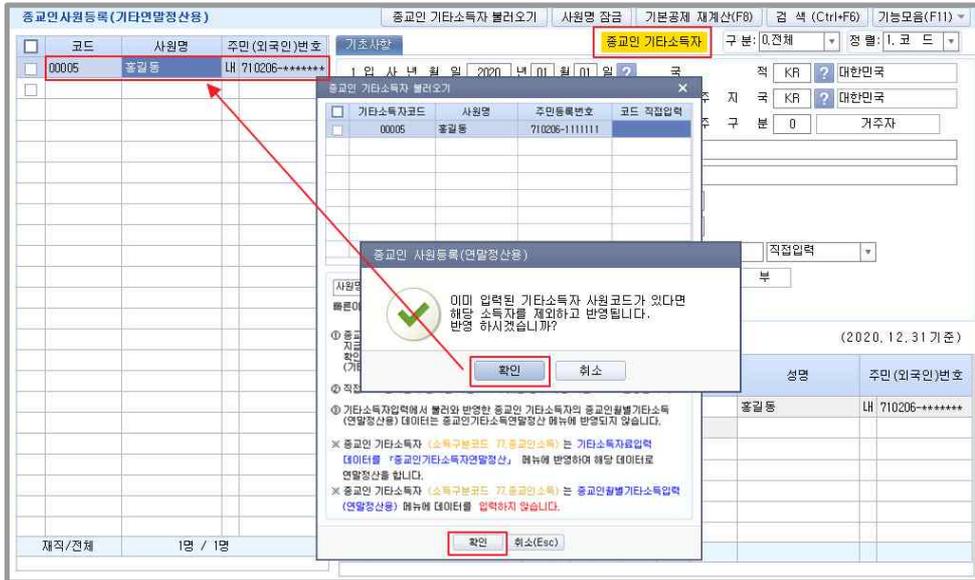
※ 종교인기타소득자(소득구분77)를 종교인사원등록(기타연말정산용) 메뉴에 반영한 경우 해당 기타소득자입력의 종교인기타소득자를 삭제시 종교인월별기타소득입력(연말정산용) 및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소득구분코드 77.종교인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자를 등록하고, 기초정보를 입력합니다.

## 2. 종교인사원등록(기타연말정산용)

기타(이자배당)소득자입력에 등록된 종교인 기타소득자(소득구분77.종교인소득)를 [종교인 기타소득자 불러오기]로 종교인 사원으로 반영합니다.

(※ 반영된 사원은 우측상단에 [종교인 기타소득자] 라벨이 표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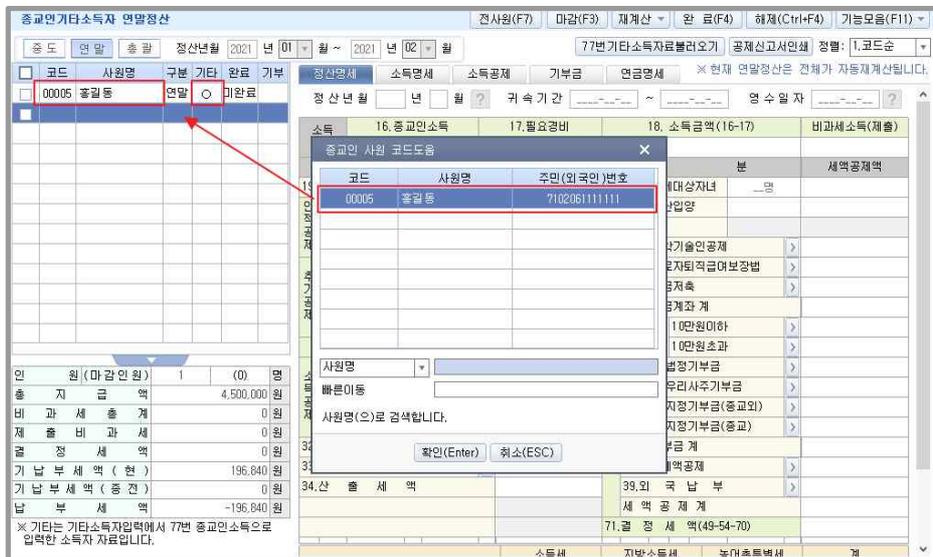


- ☞ 종교인 기타소득자 불러오기시, 기타(이자배당)소득자입력의 소득구분코드가 77.종교인소득이고 연말여부가 '여'인 소득자가 조회됩니다.
- ☞ 불러온 종교인 기타소득자를 반영시, 해당 기타소득자코드로 기본 사원등록 반영되나, 해당 기타소득자코드와 동일한 기존 종교인사원코드가 존재하거나 원하는 사원코드가 있는 경우, '코드 직접입력'란에 신규 사원코드를 입력하여 반영합니다.
- ☞ 종교인 기타소득자(소득구분코드 77.종교인소득)는 해당 소득자의 기타소득자료입력 데이터가 종교인 기타소득자 연말정산으로 반영되며, 종교인월별기타소득입력(연말정산용)메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3. 종교인기타소득자 연말정산

#### 『● 77번기타소득자료 불러오기 - 정산명세』

- 사원코드도움 (F2) 혹은 전 사원(F7) 불러오기를 하면, 기타(이자배당)소득자입력 77번 종교인소득자 중, 종교인 사원등록으로 반영된 소득자의 소득자료, 부양가족 자료가 반영됩니다.
- 기타(이자배당)소득자입력 77번 종교인소득자는 연말정산 메뉴에서 기타에 O 표시로 나타나, 종교인사원등록에서 입력된 종교인과 구분 표시 됩니다.
- 불러온 77번 종교인소득자는 정산명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결정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 77번기타소득자료 불러오기 - 소득명세』

- 기타(이자배당)소득자입력 77번 종교인소득자를 연말정산 메뉴에 불러오면, 기타소득자료입력에 저장된 종교인 소득 자료가 월별로 소득명세 탭에 반영됩니다.
- 기타소득자료입력에서 지급총액은 종교인 소득으로, 비과세 소득은 종교활동비인 제출 비과세 소득으로 입력되고, 필요경비는 합산된 종교인소득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는 입력된 그대로, 소득명세에 반영됩니다.
- 기타소득자료입력에서 77번 종교인소득자 지급총액, 비과세 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수정하는 경우, “77번 기타소득자 자료불러오기” 또는, “재계산” 을 하여 수정된 금액을 정산명세와 소득명세에 반영합니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기타소득자료입력

마감 | 제한세율(F4) | 불러오기(F3) | 기능모음(F11)

지급년월 | 2020 | 년 | 01 | 월

※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제한세율을 입력합니다.  
제한세율을 입력하는 경우 [제한세율(F4)]에서 해당 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코드	소득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소득구분
<input type="checkbox"/>	00001	기타소득1	내 760206-***** 62 그 밖에 필요
<input type="checkbox"/>	00002	기타소득2	내 801116-***** 69 분리과세기타
<input type="checkbox"/>	00003	JHONE	외 ASGS01-***** 40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00005	홍길동	내 710206-***** 77 종교인 소득

소득지급내역 | 소득자정보

기타 관리 항목

소득구분	법인/개인	필요경비율	영수일자	연말정산적용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감면 및
77	종교인 소득	개인	2020-01-20	부		

소득 지급 내역 | 참고

※ 비과세 소득에는 재충비과세 금액 종교활동비 (소정 §19(3))를 입력합니다.

귀속년월	지급년월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과세 소득	세율(X)	소득세	법인
2020-01	2020-01	20	5,800,000	4,640,000	1,160,000		345,320	

금액 수정

연간소득계	소득징수계	소득제외계
5,800,000	4,640,000	1,160,000
5,800,000	4,640,000	1,160,000
		345,320

종교인기타소득자 연말정산

전사원(F7) | 마감(F3) | 재계산 | 완료(F4) | 해제(Ctrl+F4) | 기능모음(F11)

종도 | 연말 | 송관 | 정산년월 | 2021 | 년 | 01 | 월 ~ | 2021 | 년 | 02 | 월

77번 기타소득자료불러오기 | 종건근무지입력 | 정행: | 1.코드순

코드	사원명	구분	기타	원료	기부	정산명세	소득명세	소득공제	기부금	연금명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00005	홍길동	연말	○	미원료					

구분/항목	계	1월	2월	3월	4월
종교인소득 (급여)	5,800,000	5,800,000			
과세 소득계	5,800,000	5,800,000			
종교활동금액 및 물품					
재충비과세계					
미재충비과세					
비과세출계					
연금보험료					
소득세	345,320	345,320			
지방소득세	34,530	34,530			
통특세					
근무기간(시작일)					
근무기간(종료일)					
종건근무지영수증제출여부					

인원 (마감인원) | 1 | 명

총지급액 | 5,800,000 | 원

비과세총계 | 0 | 원

제출비과세 | 0 | 원

결정세액 | 0 | 원

기납부세액(현) | 345,320 | 원

기납부세액(종건) | 0 | 원

납부세액 | -345,320 | 원

※ 기타는 기타소득자료입력에서 77번 종교인 소득으로 입력한 소득자 자료입니다.

홍길동 | 0.내국인 | 710206-\*\*\*\*\* | 단원세율 | 0 | 0.거주자 | KR | [대한민국]

국외근로적용 | 0 | 부 | 서

※ 77번 종교인 소득자료는 지급년월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불러오기 됩니다.

귀속년월 | 2020-01-01 | ~ | 2020-12-31 | 영수일자 | 2021-02-28

『 77번기타소득자료 불러오기 - 소득공제』

- 종교인사원등록에 불러온 77번 종교인소득자는 해당 메뉴에서 부양가족명세를 입력하며, 종교인사원등록에 입력된 부양가족명세 자료는 종교인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탭에 반영됩니다.

종교인사원등록(기타연말정산용) | 종교인 기타소득자 불러오기 | 사원명 잠금 | 기본공제 재계산(F8) | 검색 (Ctrl+F6) | 기능모음(F11)

종교인 기타소득자 | 구분: 0.전체 | 정렬: 1.코드

1. 입사년월일: 2020년 01월 01일 | 국적: KR | 2. 내/외국인 구분: 0 | 내국인 | 3. 거주지국: KR | 대한민국 | 4. 주민번호: 710206-111111 | 5. 거주구분: 0 | 거주자 | 6. 주소: | 7. 전화번호: | 8. 휴대폰번호: | 9. 이메일: | 10. 퇴사년월일: | 11. 이월여부: 0 | 여

● 부양가족명세 (2020. 12. 31 기준)

연말정산관계	기본	세대	부녀	장	경로	출산	자녀	한부모	성명	주민(외국인)번호
1 0. 본인	본인	○							홍길동	내 710206-*****
2 3.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내 731216-*****
3										
합계										

종교인 기타소득자 연말정산 | 전사원(F7) | 마감(F3) | 재계산 | 환료(F4) | 해제(Ctrl+F4) | 기능모음(F11)

77번기타소득자료불러오기 | 정렬: 1.코드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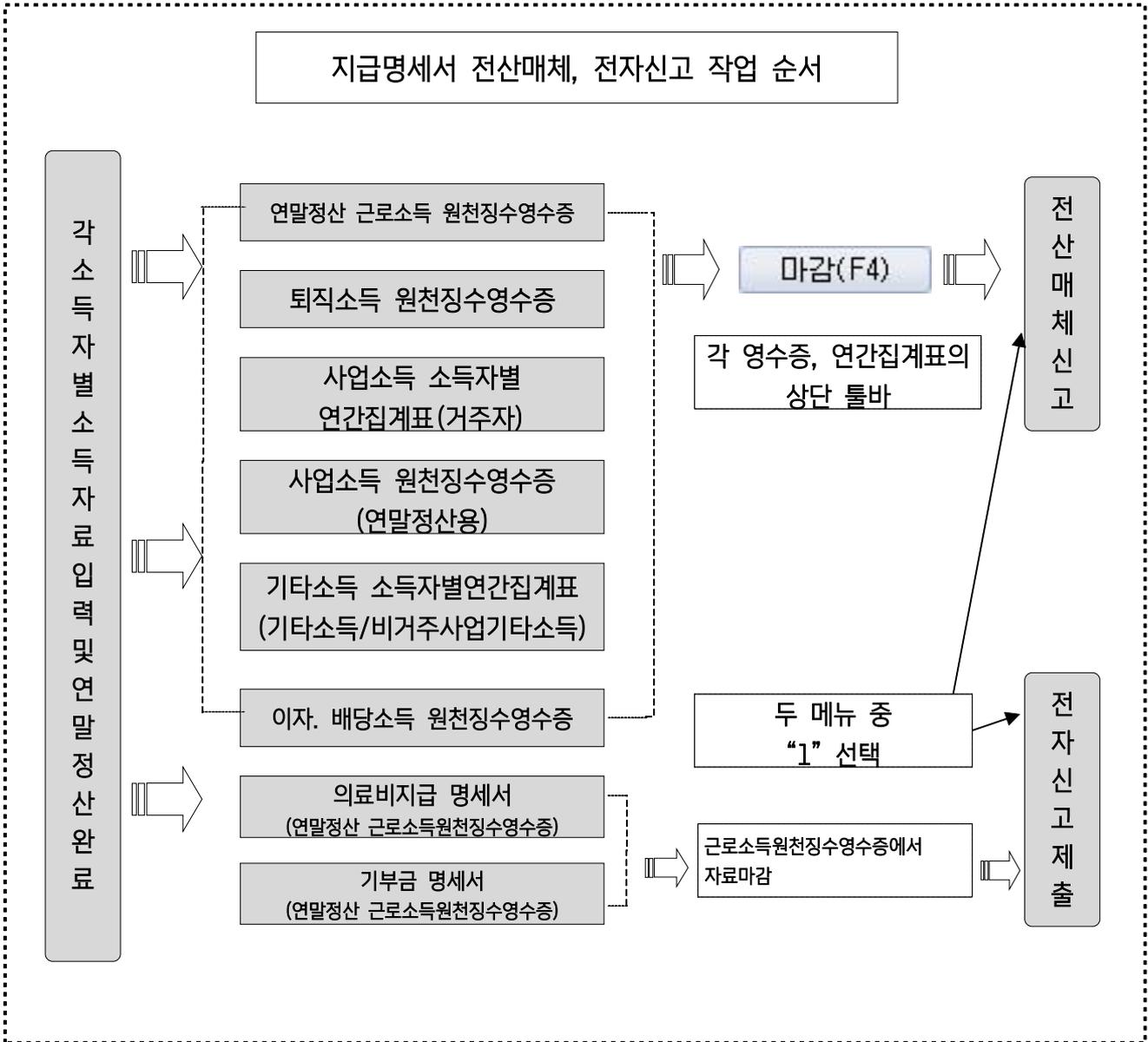
관계코드	성명	기본	부녀	장	경로	출산	자녀	구분	기부금
1 0	홍길동	본인						국세형	
1 1	710206-*****							기타	
2 3	배우자	배우자						국세형	
2 1	731216-*****							기타	
3								국세형	
3								기타	
계	2명	2	0	0	0	0	0	국세형	0
								기타	0

※ 관계 : 0.소득자본인 1.소득자의 직계존속 2.배우자의 직계존속 3.배우자 4.직계비속(자녀, 입양자) 5.직계비속(코드 4 제외) 6.형제자매 7.수급자(코드 1~6 제외) 8.위탁아동  
 ※ 기본코드 : 6.기초수급을 선택한 부양가족은 관계코드 7.수급자로 출력(전자신고됩니다)  
 ※ 출산입양공제 자녀가 몇명인지 자녀인지 선택(1.첫째, 2.둘째, 3.셋째이상 -> 30,50,70만원 차등공제)  
 ※ 기부금공제항목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제한X)이 지급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포함합니다.

『 77번기타소득자료 불러오기 - 기부금, 연금명세』

기부금과 연금명세 탭은 종교인기타소득자 연말정산 메뉴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Ⅷ.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전산매체 제출 제작



## VIII-1. 지급명세서의 서식 및 레코드 구성 변경 사항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의 서식 및 레코드 구성항목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숙지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참조

## VIII-2. 개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위임·위탁받은 자, 납세조합 포함)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그 외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2일**까지 제출합니다. (단,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홈택스에 전자제출을 하거나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VIII-3. 전자신고 작업 방법

각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연간집계표 메뉴에서의 오류체크 및 마감

마감

☞ 『자료마감』이란 소득 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겠다는 의사 결정입니다. 따라서 전산매체로 제출하지 않고 서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회사는 마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료마감』키를 클릭하면 “마감을 준비 중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연말정산 된 직원들을 다음과 같이 띄워주며 “확인”을 클릭하면 오류체크를 하게 됩니다.

※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마감됩니다.

※ 제출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관련오류와 소득자 및 소득 자료에 관한 오류는 아래와 같이 “에러 리스트”로 나타나며 마감되지 않으므로 오류내용을 검토하여 마감하도록 합니다.

☞ 에러사항에서 레코드란에

[B]로 나타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오류이므로 회사등록에서 수정을 하며  
 [C]로 표시된 것은 소득자의 사원등록 또는 현 근무지 소득자료 오류이며,  
 [D]로 표시된 것은 소득자의 종(전)근무지 회사(납세조합 포함) 및 소득자료 오류 사항이므로  
 사원등록과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연말정산일괄작업의 [F3-종(전)근무]에서 정정한 후 다시  
 자료마감 하도록 합니다.

☞ 에러사항이 없으면 『자료마감』옆에 『마감취소』가 활성화 됩니다.

마감한 자료에 수정할 사항이 생기면 [마감취소]를 클릭한 후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자료마  
 감]을 클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당초 부여 오류인 경우 에러리스트화면에서 [강제마  
 감]을 클릭합니다.

## VIII-4.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 1. 제출대상자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의 지급명세서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매체 제출대상자 기준

-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10인 초과인자
- 직전연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이상인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
- 복식부기의무자(개인)

### 2. 제출대상자료

- 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포함)
- ②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④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기부금명세서포함)

- ⑤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⑥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 ⑦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⑧ 의료비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부표 -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사업소득(연말정산)부표 - 기부금명세서

- ★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거래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동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 ★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에 대하여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부금 명세서  
 2017년 귀속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3.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2일까지

(단,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구분
3월 2일	거주자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 사업, 기타소득 등
3월 10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사업소득(봉사료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의료비

#### 4. 지급명세서 제출 절차

##### 1) 자가 사용 프로그램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자

###### ① 자체 적합성검사

###### ㉠ 프로그램 개발

국세청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전산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 검사과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지급명세서 파일검증 및 내용검증을 실행하여 제출할 자료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합니다.

###### ㉢ 검사사항

㉠ 전산매체의 허용규격

㉡ 파일규격, 레코드형식, 수록사항, 항목별 표현방법 등

㉢ 한글코드의 적합성 여부

㉣ 수치표현방법의 적합성 여부 등

###### ② 실 자료 제출

지급명세서 파일검증 및 내용검증에서 파일변환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에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 하여야 합니다.

##### 2) 제출절차 특례(일괄 대리제출 등)

###### ①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하는 본점법인

㉠ 반드시 「일괄 대리제출 지점법인 명단」을 매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적합성 검사

- 홈택스 지급명세서 파일검증 및 내용검증을 사용하여 적합성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실 자료 제출

###### ㉠ 본점법인

- 본·지점의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합니다.

- 반드시 제출 공문에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 ㉡ 지점법인 : 제출하지 않습니다.

- 본점에서 일괄 대리제출 하였음에도 지점에서 중복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처 : 본점법인 관할 세무서

###### ② 수입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

- ㉠ 반드시「일괄 대리제출 수임업체 명단」을 매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적합성 검사
  - 홈택스 지급명세서 파일검증 및 내용검증을 사용하여 적합성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실 자료 제출
  - ㉣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 및 수임업체의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합니다.
    - 반드시 제출 공문에「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 ㉤ 수임업체 : 제출하지 않습니다.
    - 세무대리인이 일괄 대리 제출하였음에도 수임업체에서 중복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처 : 세무대리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
- ③ S/W개발업자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 ㉠ S/W개발업자로부터 교부 받은 프로그램이 국세청의 기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판단합니다.
  - ㉡ 적합성 검사
    - 홈택스 지급명세서 파일검증 및 내용검증을 사용하여 적합성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실 자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공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 5. 지급명세서 전산매체신고 제출 요령

### 1) 제출공문

제출공문 1부

- 별지의 공문양식(제4장 참고자료)을 참조하여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공문 1부를 작성 제출합니다.
- 제출하는 전산매체의 종류별로 공문양식을 달리하여(기재사항 다름) 작성합니다.

※ 제출공문에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직통)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지급명세서가 수록된 전자신고

CD(Compact disc)로 제출할 경우

- 지급명세서 종류별로 2개씩 제출(정보 1부, 사본 1부)

※ 제출자 및 수록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해진 형식에 따라 표찰(Label)을 제출하는 매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 제출하는 전산매체에는 쓰기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⑥ 지급명세서 종류별로 별도의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⑦ MT(마그네틱테이프)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전산매체 부착용 표찰(Label)

① 라벨 양식 및 항목 기재요령

① 수록자료명		② 자료귀속연도	
③ 제출자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제출자연락처	(직통)	⑥ 담당자성명	
⑦ 제출건수		⑧ 소득(수입)금액	
⑨ 접수일자		⑩ 비과세금액	
⑪ 신고구분		⑫ 제출구분	

- ① 수록자료명 : 전산매체에 수록한 지급명세서 명을 기재  
\* 라벨 부착 후 수록자료명과 실제수록된 자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② 자료 귀속연도 : 제출하는 자료의 소득 귀속연도를 기재  
\* 전년도 누락분 등 과년도 자료가 수록되지 않도록 유의
- ③ 제출자상호 : 자료제출자의 상호(법인명)를 기재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자료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⑤ 제출자연락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⑥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성명을 기재
- ⑦ 제출건수 : 제출하는 자료의 총 건수(총 레코드수)를 기재
- ⑧ 소득(수입)금액 : 제출하는 자료의 소득(수입)금액 총계를 기재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는 지급총액을 기재하고 그 이외에는 소득금액 총액을 기재)
- ⑨ 접수일자 : 제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⑩ 비과세금액 : 근로소득자료의 비과세총액을 기재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자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⑪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⑫ 제출구분 : 신규제출, 전체재제출, 누락분제출, 오류분재제출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신규 제출 : 국세청에 해당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 자료를 처음으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 전체 재제출 : 국세청에 해당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 자료 전체를 재 제출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앞서 제출한 해당 귀속연도의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료 전체는 취소 처리 됩니다.(이자배당 및 연금계좌 소득은 앞서 제출한 전체자료 취소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필요 시 별도 삭제요청바람)

- 누락분추가제출 : 제출된 해당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자료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누락분을 추가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 오류분재제출 : 제출된 해당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자료가 오류가 발생되어 오류분을 정정하여 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② 부착방법

- 표찰은 전산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떨어지거나 가장자리가 남지 않도록 말끔하고 견고하게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기 바랍니다.

4) 제출장소

- ①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 ② 일괄대리 제출의 경우에는 일괄대리 제출하는 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6. 오류자료 정정 및 제출

1) 전산매체 접수과정에서 발견된 제출 누락 및 오류자료

① 제출 누락자료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자 스스로 발견한 제출 누락자료(C, D레코드)는 기한 내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당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해 2/28, 근로연말, 사업연말등 3/10)

㉡ 수록방법

- ㉢ 각 지급명세서별 레코드항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지급명세서별로 별도의 전산매체에 수록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 당초의 지급명세서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하되
- ㉤ 제출공문의 제목 우측 여백 및 전산매체 부착 표찰(Label)의 수록 자료명 **우측여백에 “추가자료”라고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② 오류자료

오류일람표와 함께 제출업체로 반송하며, 반송 받은 제출업체는 오류 자료를 신속히 정정하여 다시 제출합니다.

※ 오류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불성실 가산세(지급금액의 2/10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당해 지급명세서를 반송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수록방법

- ㉡ C, D레코드 : 오류자료는 정정하여 수록하고, 정상자료는 그대로 수록합니다.
- ㉢ A, B레코드 : 전산매체에 수록한 전체 C, D레코드(정상+오류자료)의 건수, 금액 등을 집계하여 수록합니다.

㉣ 제출방법

- ㉤ 당초의 지급명세서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하되
- ㉥ 제출공문의 제목 우측 여백 및 전산매체 부착 표찰(Label)의 수록 자료명 우측여백에 “정정자료”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산매체에 수록된 지급명세서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자료



참고사항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명세서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제출누락 및 오류자료에 대한추가·정정자료 제출 시 지급액, 세액 등이 변경되어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료제출집계표, 납부(환급)할 세액 등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수정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추가납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합니다.

- ①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지급명세서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자료에 대한 오류일람표를 서식으로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 ② 오류일람표를 통지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류항목을 정정요령에 따라 정정한 후 **당초오류일람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된 전산매체를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유의사항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수록방법 등 제출요령이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과 다른 경우
  - ① 레코드의 구성방법(수록항목의 길이, 표현 방법) 등
 ※ 각 소득 별 자료의 레코드 길이는 국세청이 정한 레코드 길이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 공란 미 수록 시 오류발생)
  - ②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 ③ 전산매체의 규격, 파일사양 등
  - ④ “국가표준한글코드” “IBM호스트용 한글코드”이외의 한글코드 사용 등
- 2) 전산매체제출자는 제출 자료를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합성검사를 한 후, 오류가 없는 경우 “정상자료현황”을 출력하여 자료 제출 시 공문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제출 시 제외)
- 3) 원천징수의무자(지급명세서 제출자) 또는 일괄 대리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리 또는 총무부서 등에서는 전산자료 수록 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주어 변경사항이 차질 없이 제출 자료에 수록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할 사항
  - 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Dump List 등을 출력하여 확인
  - ②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감염되었을 경우 반드시 퇴치
  - ③ 수동 및 전자신고 된 지급명세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있을 경우 전산매체에 수록된 지급명세서와 대사하여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 5) 제출된 전산매체는 서식자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7년간 보관 후 폐기 처분합니다. 따라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Back-up 매체를 작성·보관하여 추후 오류정정요구 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VIII-5. 전자신고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

제출자구분: 1.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 구분: 0. 견제회사

1. 제출 구분: 1. 세무대리인 | 2. 일반업체

2. 성명(대표자): 대표자

3. 상호(법인명): 상호

4. 전자신고 사용자 ID: induhjstrn | 1. 공통

5.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6. 주민(법인)등록번호: -----

7. 우편번호: 06120

8.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25 (논현동)

9. 전화번호: 02 ) 6233 -

10. 사업장세무서코드: 107 영등포

11. 세무대리인관리번호: T - 1234 - 1

12. 조정반번호: 1 서울청 - 0000

13. 제출자구분: 0

14. 사업장법정동코드: A1301006

15. 담당자성명: 담당자

16. 담당자전화번호: 02 ) 6255 -

17. 담당자부서: 부서

■ 차세대 전자신고 제출자등록 전자신고 ID 선택  
 ○공통ID : SERVER PC 에 공통 ID 를 저장하며 같이 사용할때 선택합니다.  
 ○개별ID : 사용자 각 PC 에 개별 ID 를 저장하며 사용할때 선택합니다.  
 ※ 차세대 플랫폼시스템에서는 공통으로 로그인하는 ID 와 전자신고 수록된 ID 가 일치해야 합니다. (반환 오류검증사항)

(전자신고 제출자 등록 화면)

### ① 제출자(원천징수의무자) 등록

먼저 제출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1.세무대리인 일괄제출] -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를 일괄제출 시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

제출자구분: 1.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 구분: 0. 견제회사

1. 제출 구분: 1. 세무대리인 | 2. 일반업체

2. 성명(대표자): 대표자

3. 상호(법인명): 상호

4. 전자신고 사용자 ID: induhjstrn | 1. 공통

5.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6. 주민(법인)등록번호: -----

7. 우편번호: 06120

8.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25 (논현동)

9. 전화번호: 02 ) 6233 -

10. 사업장세무서코드: 107 영등포

11. 세무대리인관리번호: T - 1234 - 1

12. 조정반번호: 1 서울청 - 0000

13. 제출자구분: 0

14. 사업장법정동코드: A1301006

15. 담당자성명: 담당자

16. 담당자전화번호: 02 ) 6255 -

17. 담당자부서: 부서

■ 차세대 전자신고 제출자등록 전자신고 ID 선택  
 ○공통ID : SERVER PC 에 공통 ID 를 저장하며 같이 사용할때 선택합니다.  
 ○개별ID : 사용자 각 PC 에 개별 ID 를 저장하며 사용할때 선택합니다.  
 ※ 차세대 플랫폼시스템에서는 공통으로 로그인하는 ID 와 전자신고 수록된 ID 가 일치해야 합니다. (반환 오류검증사항)

[2.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직접제출]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직접제출

- 이 등록사항은 회사등록에서 소득자료 전산매체수록에 필요한 항목만 발체한 것으로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 일괄 제출 시 세무대리인 인적사항은 직접 입력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 직접 제출 시에는 회사등록에서 등록된 내용이 불러오기로 자동 반영됩니다.
- 제출자등록 선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검증 및 변환 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1 데이터 조회

제작한 전자신고 파일(자료)을 데이터조회 탭에서 미리 조회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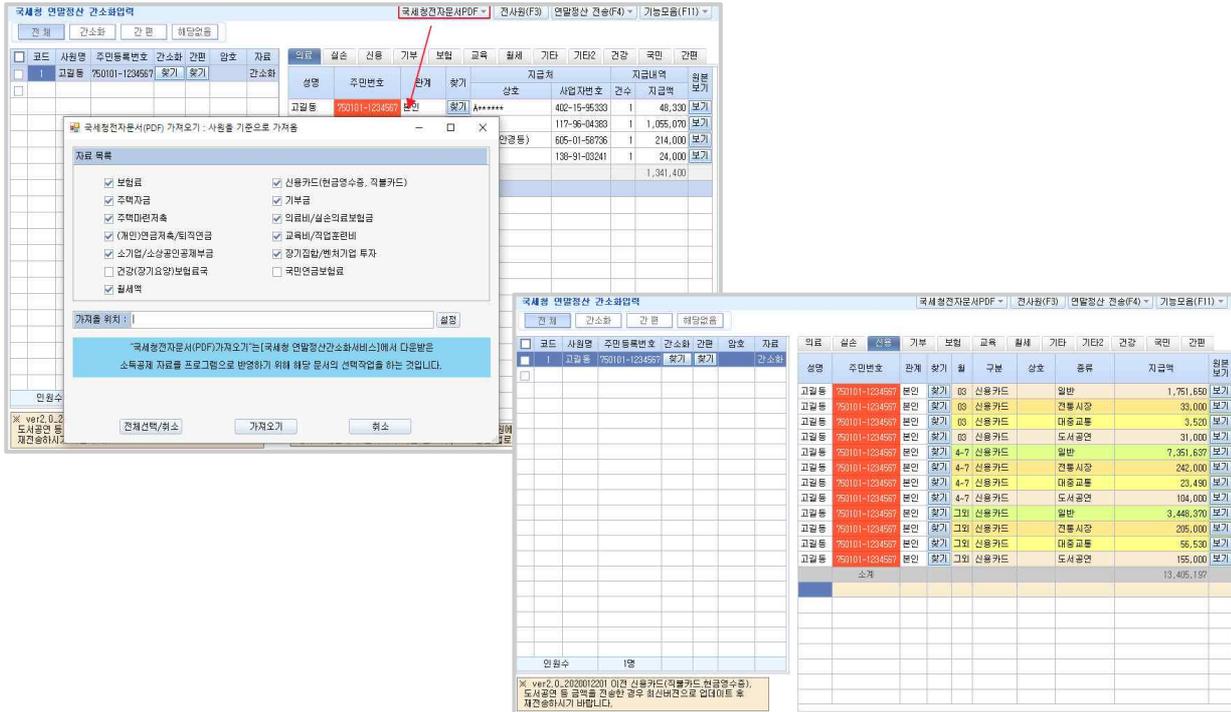
항목	내용	
1	레코드 구분	[A]
2	자료 구분	[20]
3	세무서	[221]
4	제출연월일	[20180310]
5	제출자 구분	[1]
6	세무대리인	[025727]
7	홈스 ID	[1ee1111 ]
8	세무프로그램코드	[1001]
9	사업자등록번호	[2111234567]
10	법인명(상호)	[더존비즈온 ]
11	담당자 부서	[세무대리 ]
12	담당자 성명	[이수만 ]
13	담당자 전화번호	[033222222 ]
14	신고의무자수	[00001]
15	사용한글코드	[101]
16	공란	[ ]

## IX.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입력

### <참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요 제출 오류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복 제출
  - 홈택스,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중복 제출
  - 홈택스 부서사용자ID 등 다른 ID로 중복 제출
  - 수시분으로 제출하고 연간합산분으로 다시 중복 제출
-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했다면 세금신고 삭제(또는 전자신고 삭제) 요청서로 이중자료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 또는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오류
  - 해당 귀속연도에 회사를 옮기거나, 회사를 2곳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근무지를 반드시 입력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가 중복공제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

[연말정산 간소화]



- [작업순서]저오기 버튼을 실행합니다. 또는 사원별로 PDF란에서 찾기를 통해서 다운받아 놓은 경로를 찾아서 선택하여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가져올 위치를 변경하려면 설정 버튼을 실행시켜 경로지정을 하면 변경한 위치로 저장됩니다.  
(기본 위치는 : C:\W 내문서)
2. 연말정산 전송(간소화/간편제출), 소득공제신고서 전송
- 국세청PDF에서 반영된 국세청자료를 연말정산
1. 국세청전자문서(PDF)
- 체크된 사원에 대해서 해당 소득공제 항목을 전체선택 또는 해당 소득공제만 선택하여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아 놓은 PDF파일을 가져올 위치를 선택하여 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전송합니다.
-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메뉴는 국세청 전자문서(PDF) 가져오기를 한 자료에 대해 편집, 추가, 수정은 불가능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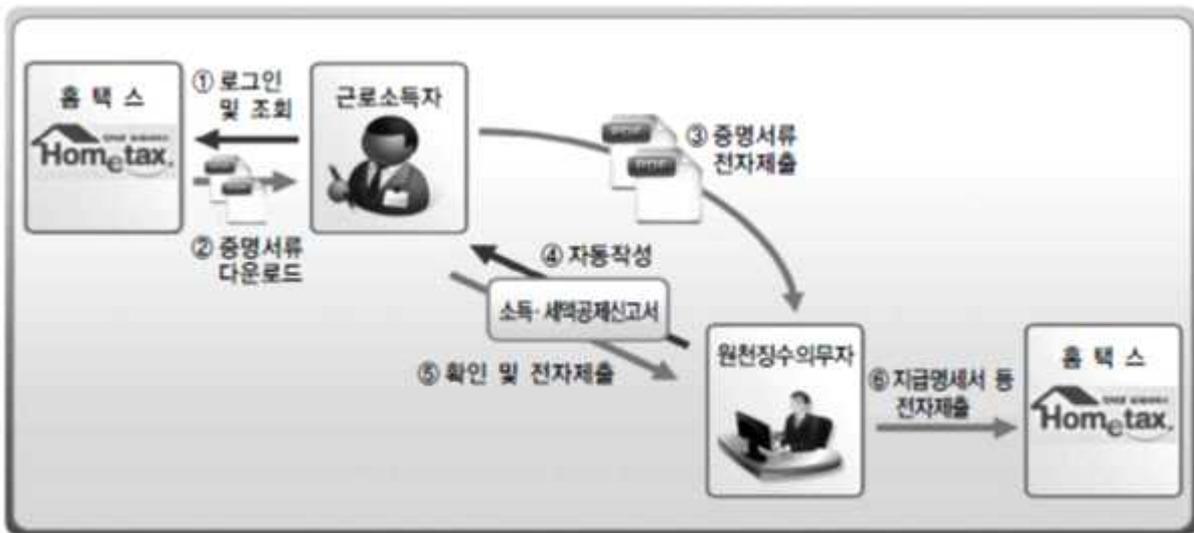


[작업순서]

- ① 국세청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에서 공제신고서 PDF파일을 내려받습니다.
- ② 내려받은 PDF파일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에서 업로드 합니다.  
(PDF업로드는 1명씩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고, 내려받은 PDF를 동일 경로에 저장해 놓은 뒤 일괄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 ③ 간편제출 PDF업로드 후 [간편제출]탭에서 업로드한 각 신고서 및 명세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④ 간편제출 자료전송 할 사원을 선택 후, [연말정산 전송\_간편제출(Ctrl+F4)]을 클릭하여 전송할 항목을 선택한 뒤 [전송하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로 해당 간편제출 자료가 반영됩니다.

[참고] 국세청제공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자료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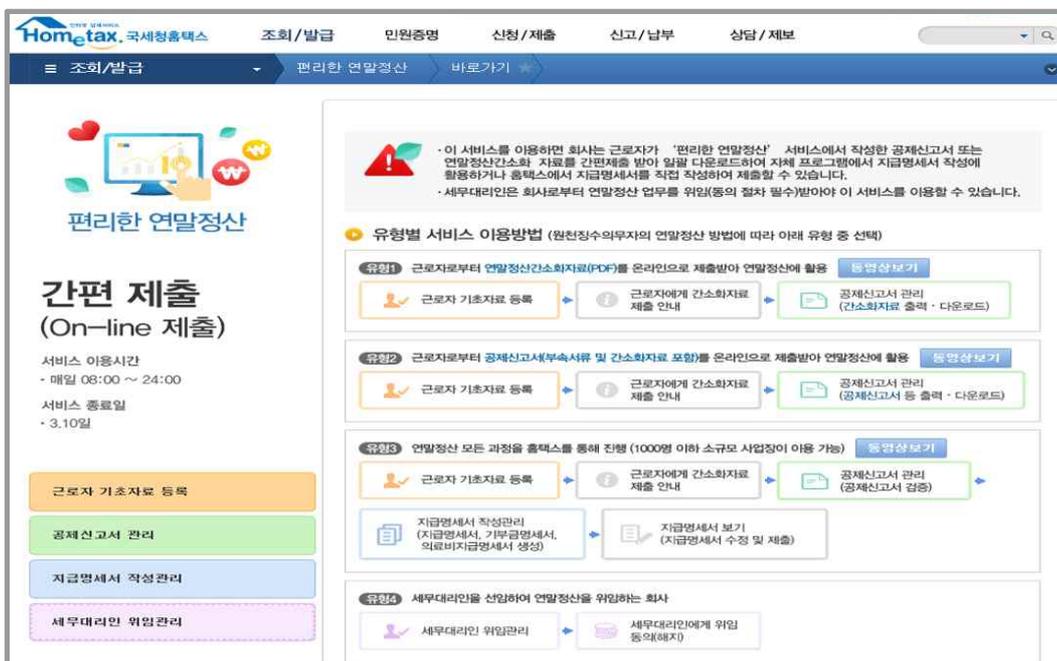
○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의 흐름



- ①~③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
- ④~⑤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을 등록(업로드)하면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자동 추출되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자동 작성
-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 연말정산 간편제출 유의사항 안내

- 연말정산 간편제출은 의료비등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 및 부속 서식의 PDF를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특별공제탭은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 특별공제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 간편제출로 연말정산 관련 서식작성은 반영되나,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가지고 있거나 출력물로 사내 보관해야 합니다.





○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 개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하여 온라인(On-line)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수도 있음 (유형 ②)

○ 접근경로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로그인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① 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
② 조회/발급	② 부서사용자, 총괄부서사용자 ID 신청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기 클릭	③ 신청한 ID로 로그인
	④ 편리한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 클릭
	⑤ 공인인증서로 인증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 부서사용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및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는 가능하지만 총괄부서사용자는 등록 및 보내기는 불가하며 조회만 가능

- 근로자

홈택스 회원	홈택스 비회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
② 조회/발급	② 연말정산 메뉴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바로가기 클릭	③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클릭

### ○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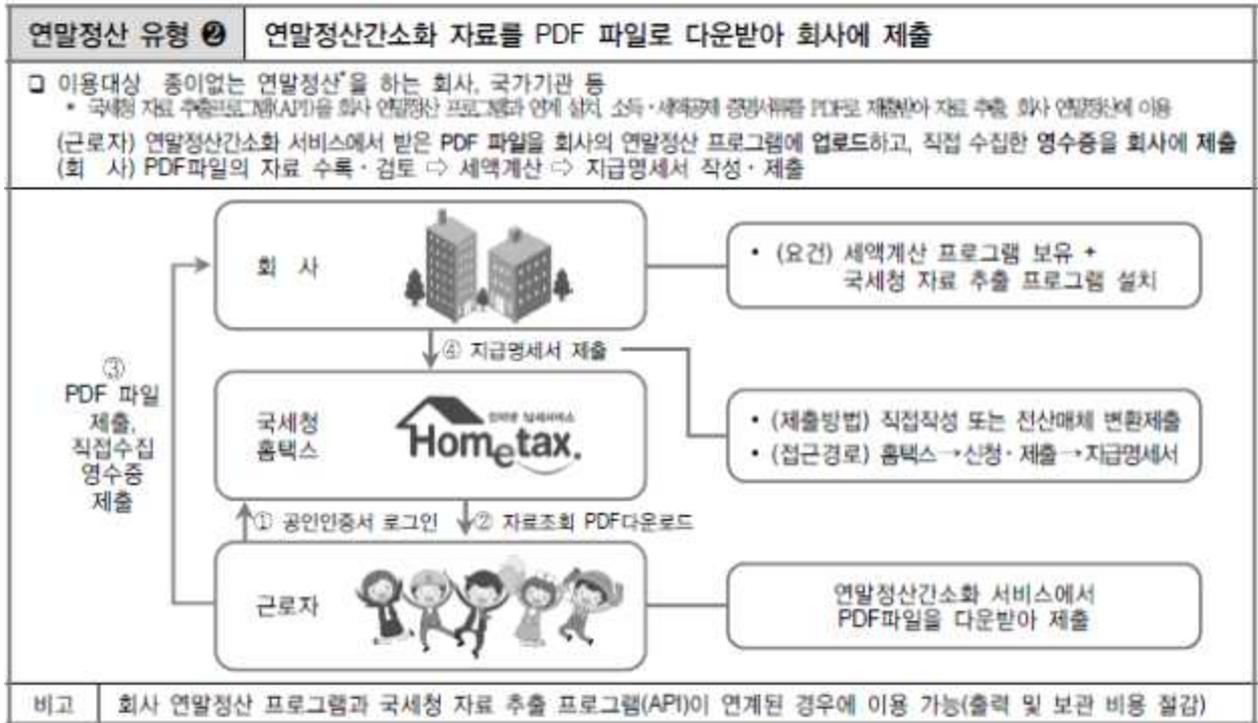
\* 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바로가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 연말정산이 자동화된 일반기업, 세무사사무소 등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유형②)

#### 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유형 ④)

단계	필수 선행절차	기본사항 및 부양가족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근무처 등 기본사항, 부양가족 입력	간소화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자료는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출력·제출
비고	부양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등의 필요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분 미리채움 서비스	간편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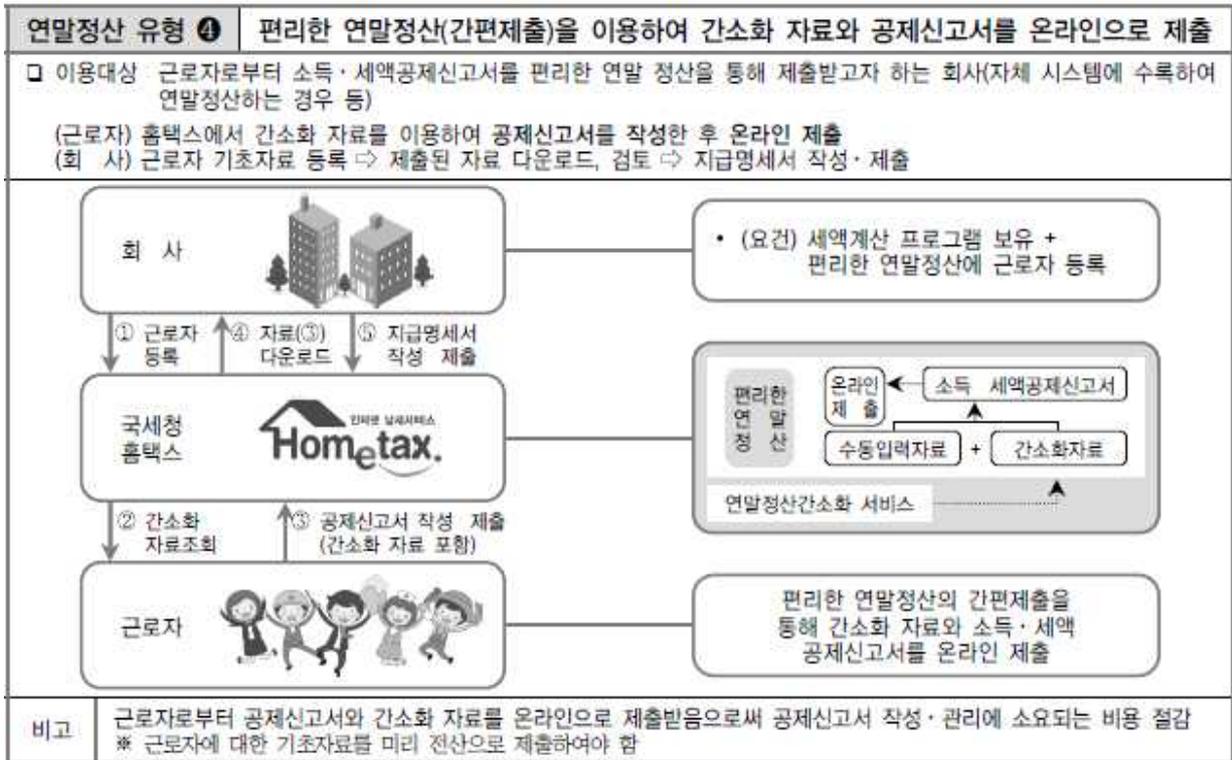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필요
- (2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구분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총급여
공제신고서만 작성	선택	선택
정확한 공제액과 세액 계산	선택	필수
간편제출	필수(회사가 먼저 등록)	선택

- (3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함
- (4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

**2020년 귀속 연말정산교육 Smart A**

- (5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
  - \*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받아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유형④)



2) 간편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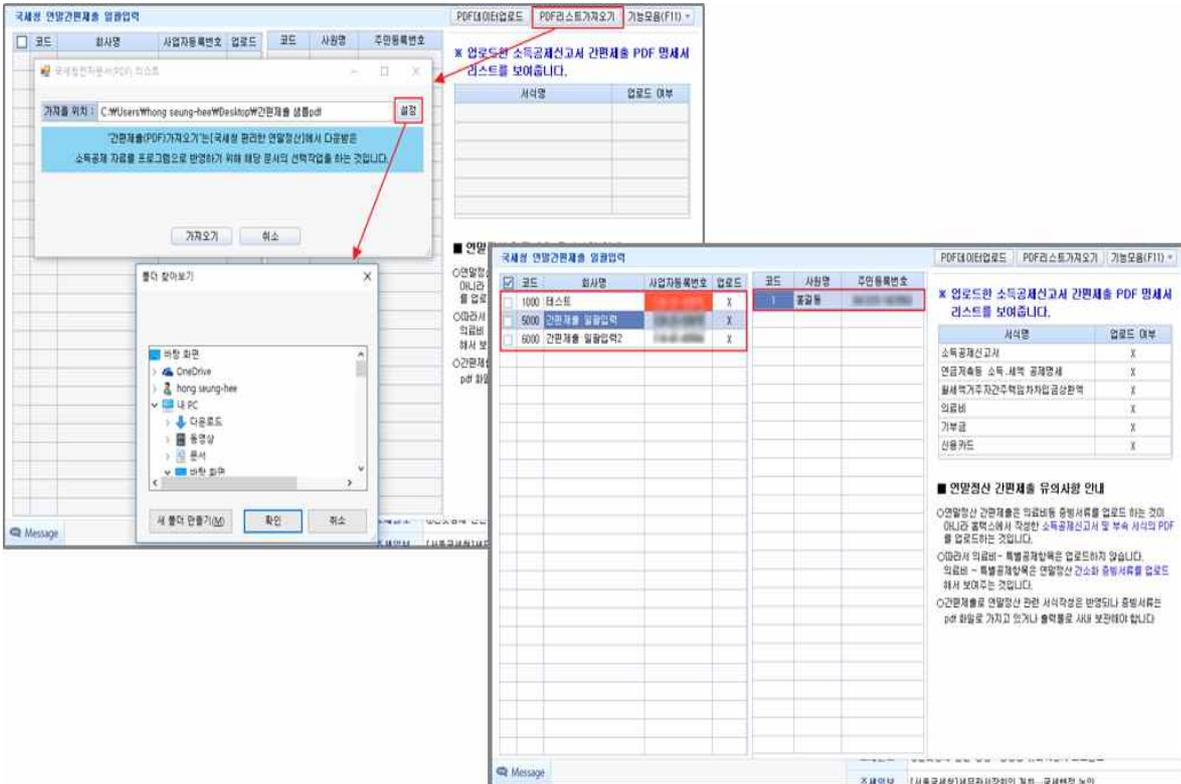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하기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이용

-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제출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된 파일을 Smart2.0 프로그램으로 업로드 가능

[국세청연말간편제출 일괄입력]

[SmartA2.0으로 업로드된 파일 PDF리스트 가져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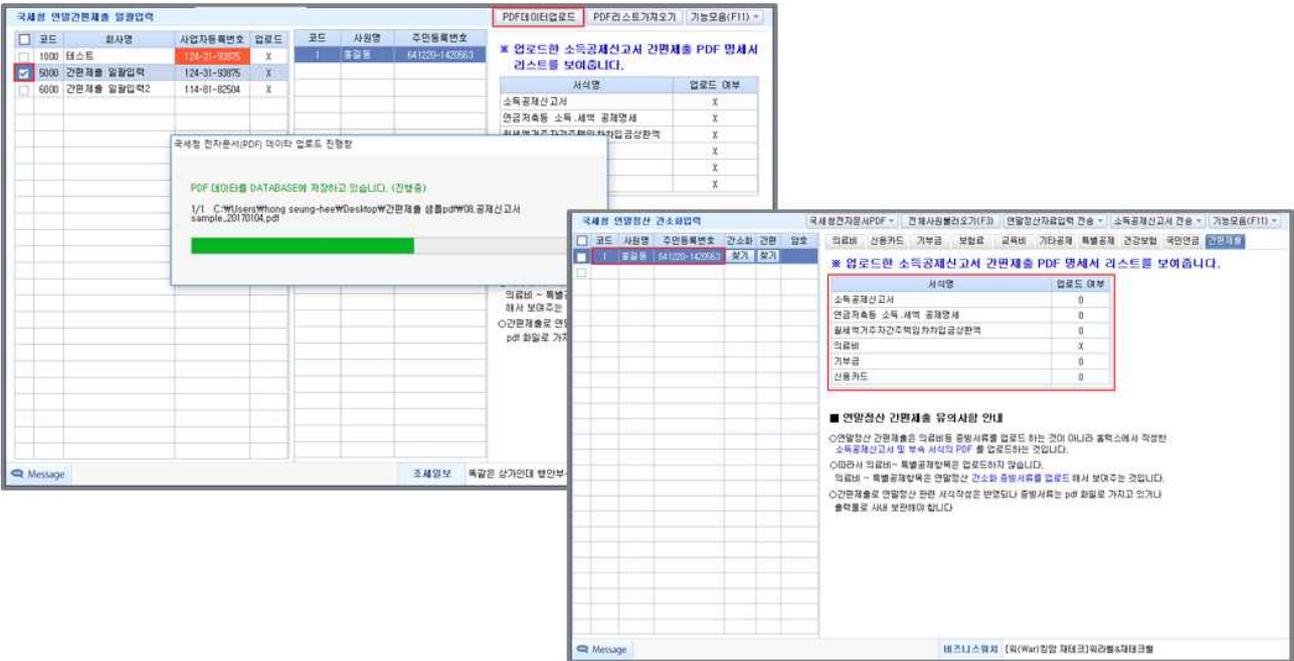
PDF파일 경로를 설정하면 해당 경로의 간편제출 PDF자료의 XML을 읽어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와 매핑하여 일괄 업로드 할 대상 회사 및 사원 목록을 일괄로 반영 합니다.



[PDF데이터 업로드]

PDF리스트 가져오기로 반영된 각 회사의 사원별 PDF데이터를 업로드 합니다.

업로드 한 간편제출 데이터는 우측 서식리스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회사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입력] 메뉴에서 조회 및 연말정산 관련 메뉴로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2020년 귀속)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내 용	서비스제공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일반보장성보험료 (주택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한약 포함)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초·중·고·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유치원 교육비	○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X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X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도서공연비 사용분 포함)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금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기부금	기부금	○

-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자료는 난임시술비가 구분 표시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금액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2020년 귀속) 신용카드 변경사항]

[대상] 신용카드, 직불카드(제로페이), 현금영수증

[참고] 중도 입(퇴)사자는 근무한 월을 선택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자료 제출    예상세액 계산    공제신고서작성

귀속년도: 2020년    전체월제: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① 한번에 내려받기**    한번에 인쇄하기    제공동의 현황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2,191,550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1,140,610	보험료 (Insurance) 5,417,292	의료비 (Medical Expenses) 9,210,060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35,494,387	신용카드 (Credit Card) 34,654,177	직불카드 등 (Debit Card) 14,462,421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9,306,788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13,160,000	주택자금/월세액 (Housing Funds/ Monthly rent) 37,494,480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3,000,00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LT Investment savings/ Venture investment trust) 11,800,00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7,500,000	기부금 (Donation) 6,360,00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기본내역 **② PDF다운로드**    인쇄하기

인별 선택	사용자	상호	사업자번호	종류	공제대상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길동	QWQ카드	213-86-15419	일반	5,777,57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길동	QWQ카드	213-86-15419	전통시장	86,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길동	YAY카드 (주)	202-81-48079	일반	8,067,017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길동	YAY카드 (주)	202-81-48079	도서공연등	94,000
인별합계 :					14,024,587 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장모	ETE 은행	120-81-54231	도서공연등	470,6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장모	HYH카드(주)	202-81-45602	일반	6,863,6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장모	HYH카드(주)	202-81-45602	전통시장	256,9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장모	HYH카드(주)	202-81-45602	대중교통	109,700
인별합계 :					7,700,800 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부인	RLR카드	101-86-61717	일반	8,344,55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부인	RLR카드	101-86-61717	전통시장	89,500
선택 : 14 건					선택합계 34,654,177 원

신용카드 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어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④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어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어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국제 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비용 등 공제제외대상 이 차감된 금액임(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하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 금액」 참고)





## X. 주요상담사례

### 1. 사원등록

**Q. 2019년도 사원등록이나 부양가족이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A. 사원등록 툴바에 있는 기능모음의 부양가족 키를 이용하여 전년도 부양가족을 불러옵니다.

### 2. 급여자료입력

**Q. 생산직인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A. 사원등록에 직종이 생산직, 연장근로비과세 여부가 “여”로 체크되어 있어야 하고, 전년도 총급여 액이 3천만원 월정급여액이 190만원 이하인 자로 지급 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체크했는데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급여자료입력에서 “재계산”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원정보변경’으로 반영한 후 확인합니다.

### 3. 연말정산자료입력

**Q. 종전근무지의 소득세는 어떤 소득세를 입력하나요?**

A.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Q.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어떤 경우 작성하나요?**

A. 의료비 공제받는 금액이 1원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 작성을 합니다.

**Q. 기부금명세는 어떤 경우 작성하나요?**

A. 기부금 공제받는 금액이 1원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 작성을 합니다.

### 4. 근로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Q. 징수부에 비과세근로소득이 없는데 금액이 나옵니다**

A. 국민연금 등 회사부담금이 비과세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기에 그 금액이 징수부와 영수증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자료 입력에 기타비과세 산입액란에 입력된 금액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Q.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마감 시 기간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A.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마감 시는 "총괄"을 선택해서 마감합니다.  
 중도 - 중도퇴직자의 경우 정산년월을 직접 선택해서 조회  
 연말 - 계속 근무자만 조회 시 선택  
 총괄 - 중도퇴사자와 계속 근무자 전체 조회 시 선택

**Q. 사원등록 부양가족의 배우자 유무 등을 수정을 했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이 안 됩니다.**

- A. 연말정산자료입력 실행 후 자료갱신하고 영수증을 조회합니다.

**Q. 의료비금액을 넣었는데 공제금액이 안 나옵니다.**

- A. 의료비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Q. 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A.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소액부징수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Q. 신용카드사용을 많이 했는데 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A.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7번 차감소득금액이 0인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Q.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월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정산년월이 2018년 귀속인 경우 2020년 2월로 동일하게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Q. 중도퇴사자의 이행상황신고서 총 지급액과 지급명세서 제작 시에 소득수입금액은 어떤 금액인가요?**

- A. 이행상황신고서의 총 지급액은 제출비과세 포함 금액이고, 지급명세서 소득수입금액은 과세대상 급여입니다.

## XI.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 XI-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에 대한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 특히, 수동발급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가 많음

구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 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확인서 등)</li> <li>○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li> </ul>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li> <li>-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 등록표등본의 전입 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li> </ul> </li> <li>○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li> <li>-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 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대출조건 (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li> </ul> </li> </ul>
주택마련저축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li> <li>○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li> </ul>
신용카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li> <li>○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li> </ul>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li> <li>○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li> </ul>
보험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li> </ul>

<p>의료비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li> </ul> </li> <li>○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li> </ul>
<p>교육비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li> <li>○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li> <li>○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li> <li>○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li> </ul>
<p>기부금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li> </ul> </li> <li>○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li> <li>-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li> <li>- 사주, 공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li> <li>-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li> </ul> </li> <li>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판단</li> </ul>
<p>월세액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li> <li>○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li> <li>○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li> <li>※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li> </ul>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 XI-2.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점검 항목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 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으로 전수조사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 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 양도, 사업,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크기 관계없음)부양 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 (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초과(종합소득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주요 Q&A>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1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 가능
  -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순위는 다음과 같음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1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마.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12.31.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적용 대상 아님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대상 아님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대상 아님
-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검토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대상 아님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p>○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p> <p>○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li> <li>-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li> </ul>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0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20.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3	<p>○2014.1.1.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아.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자.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 본인부담 상한액 : '19년 기준(소득 수준별로 7단계 : 81만원~580만원)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카.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기부금 세액공제 주요 Q&A〉

Q.1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li> <li>-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li> </ul>
Q.2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소득세 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li> </ul>



### 기부금 표본조사

◆ 기부금 표본조사의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7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기부금공제자 중 0.5%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

◆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선정 절차

기부금 단체에 대한 확인과 기부금 세액공제 이력 등 전산분석을 거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서면 확인 후 고지 또는 수정 신고

《기부금 세액공제 불성실 유형》

- 거짓 기부금영수증 매매 행위 및 폐업, 기 고발된 기부금단체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 법인설립 허가되지 않은 종교단체 등 비적격 기부금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의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와 불일치하는 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위·변조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기부금 지출에 따른 영수증인지 여부는 기부금액 지출방법, 수취한 기부금영수증 형식과 내용, 기부단체 적격여부, 기부단체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 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사주, 공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근로자가 실제 기부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소명서류 예시

- 금융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빙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 등 기재사항과 기부금단체가 보관 작성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상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사본 등

### XI-3.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적었음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공제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 가.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5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㉔와 ㉕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㉔ 과소납부세액 × 3%

㉕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까지의 기간) × 2.5/10,000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 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 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3)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 환급신고 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과소신고 등 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됨

#### ㉔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㉔ 부정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60%)

※ 부정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기준(가산세 종과 40%)

부정행위의 유형(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을 말함  
(예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기부금 부당공제(허위 · 과다 기부금영수증 수취

◎ 적용사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 항에 따른 가산세(부정과소신고 등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한 방법’이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참고] 근로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알지 못함)·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㉑)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 하거나, 초과환급 받아 수정신고 하는 경우 다음의 ㉑와 ㉒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㉑ 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2.5/10,000

㉒ 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 (환급받은날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2.5/10,000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다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47의4④)

**[참고] 원천세과-499, 2009.06.09.**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5 제1항(현행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담 경감(국세기본법 §48②)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한(5.31.)이 지나서 다음의 기간 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9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7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3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0%

※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수정신고 안내 등)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XII.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1.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2. 제출대상 소득범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소득칙 §10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input type="checkbox"/>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input type="checkbox"/> <b>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b> <input type="checkbox"/> 반기 동안 <b>지급한</b> 소득

〈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3. 간이지급명세서 입력시 참고사항

※ 본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반드시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후 간이지급명세서 전체 서식은 **지급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귀속 기준 아님)

#### ▣ 서식 개정안 내용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과세소득은 급여 등과 인정상여의 합계금액으로 작성합니다.
- \*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비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 XIII. Smart A 프로그램 사용방법 안내

#### XIII-1. 국민고용두루누리신청서

##### ① 국민고용두루누리신청서 Smart A 프로그램 입력방법 안내

SmartA 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근로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프로그램 화면

국민고용두루누리신청서

사업장 10 ? 연말정산교제 신고일 2020 년 12 월 05 일 ? 사업장관리번호 123-45-67890-0 번호검증 작성조회 작성자정보

지원신청서 지원제외신청서

● 신청 사원 목록

NO	□	코드	사원명	주민(외국인)번호	월평균보수액	국민연금 납부금액					고용보험 납부금액				
						간체	직원분	회사분	지원률	대상	간체	직원분	회사분	지원률	대상
1	<input type="checkbox"/>	1	사원1	내 990101-*****	1,600,000	144,000	14,390	14,390	80%	○	24,800	2,080	2,870	80%	○
2	<input type="checkbox"/>	2	사원2	내 880101-*****	1,500,000	135,000	13,490	13,490	80%	○	23,250	1,950	2,690	80%	○
3	<input type="checkbox"/>	3	사원3	내 660101-*****	1,650,000	148,500	14,840	14,840	80%	○	25,575	2,140	2,960	80%	○
4	<input type="checkbox"/>	4	사원4	내 770101-*****	1,600,000	144,000	14,390	14,390	80%	○	24,800	2,080	2,870	80%	○
5	<input type="checkbox"/>	5	사원5	내 550101-*****	1,700,000				0%	X	26,350	2,210	3,050	80%	○
6	<input type="checkbox"/>														

국민/고용 : 국민 4명 / 고용 5명

※ 월평균 과세급여가 1,900,000원 이상인 사원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 대표자(공동대표자)는 가입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사원등록 메뉴에서 대표자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월평균 과세급여는 신고일 기준 1년간의 금액을 참고 금액으로 보여줍니다. 정확한 월평균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여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해당  비해당

● 보험료 지원 신청 **참고**

가입대상자수(고용보험자수)	국민연금	4명	고용보험	5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국민연금	4명	고용보험	5명
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0명			
지원 신청 현재 근로자 수	5명			

Message | 조세정보 | 최근 3년 매출 검증...법인세 납부액도 증가 추세

##### ■ 국민고용두루누리신청서 사용방법

- ① 사업장 : [사업장 등록] 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② 신고일 : 신청일자를 입력합니다.
- ③ 신청사원목록 : 입력된 사원 정보 와 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를 불러오기 합니다.

(신청 전 메뉴화면 우측 작성요령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원은 사용자가 직접 편집하여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④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여부 : 신청하는 사업장의 공동주택관리 사무소 여부를 체크합니다.
- ⑤ 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대상 근로자 수 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표시해줍니다.

■ 버튼설명

- ① 작성조회 : 작성한 신청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장정보 : [사업장 등록] 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사업장정보에서 수정하여 신청서와 사업장등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청서 사원등록 반영하기 : 지원대상 사원의 [사원등록]->[관리사항등록]->두루누리적용(률)  
1. 신청으로 반영합니다.

※ 참고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1) 지원대상

①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 판단)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 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 단, 공공기관은 제외

② 근로자 기준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2) 지원수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자 90%, 5~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자 80%, 기존가입자 40% 지원

XIII-2. 사대보험 일괄팩스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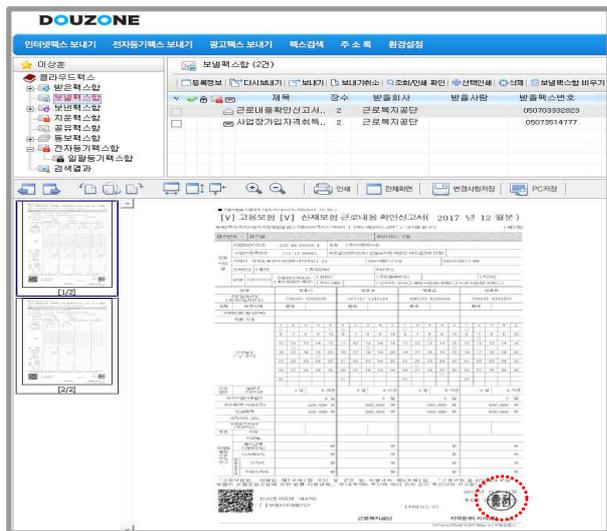
종이로 출력하여 각 사회보험기관에 일일이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했던 업무를 프로그램에서 신고기간에 맞추어 일괄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사회보험 일괄팩스 신고」메뉴입니다.

각 회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서 등 사회보험신고 서식을 작성 후 본 메뉴에서 일괄적으로 팩스로 신고 후 전송여부 결과까지 회신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점]

\*여러 회사의 신고 서식을 한꺼번에 일괄 발송

\*인쇄하지 않고 회사의 인감도장을 포함하여 바로 팩스 발송



<근로내용확인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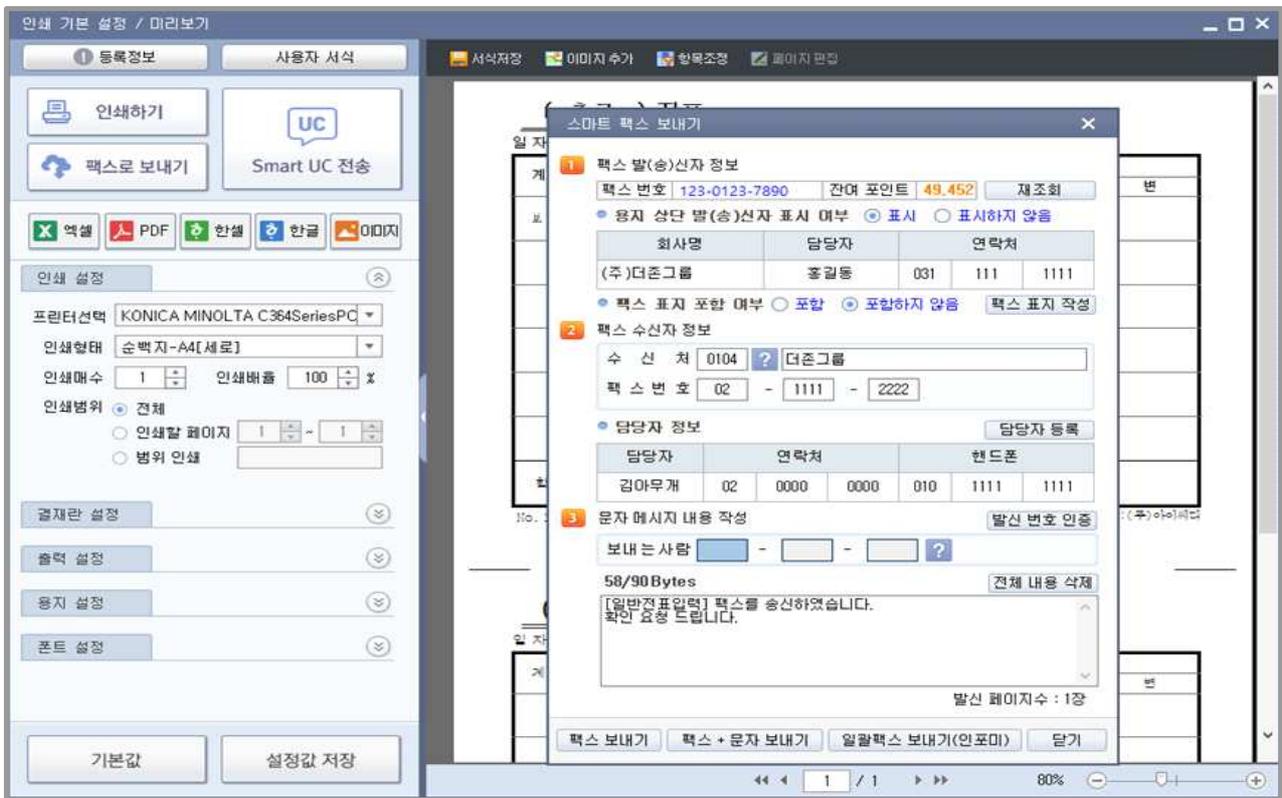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 XIII-3. 팩스 및 문자보내기

#### 1. Smart A 인쇄에서 팩스, 문자 바로 보내기

Smart A 프로그램에서 작성되어 인쇄 지원되는 양식은 팩스보내기, 팩스+문자보내기로 수신처 팩스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자보내기

급여명세서 및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e-mail 로 전송 후 해당 문자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직원에게 보내면 핸드폰 사용자 인증 후 해당 직원의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e-mail 형식에 맞지 않은 메일주소 또는 주민번호 자리수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발송이 제한됩니다.  
 ② 「문자보내기」 기능은 더존 CloudFax에 가입된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보내기 설정   e-mail 보내기   문자보내기   e-mail 및 문자보내기   닫기(Esc)

보내기설정

초기화 <e-mail내용>  
 ※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송방식 : 0,Outlook   서버설정(SMTP)  
 출 선 :  직급    호봉  
 급여메일 암호설정(주민번호 앞6자리 입력)  
 ※ 이메일 형식에 맞지 않은 메일주소 또는 주민번호 자리수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발송이 제한됩니다.

<Mail Type>  
 Outlook Express    MS Office Outlook

초기화 <문자내용>  
 1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신번호 :   ?   미인증  
 발신번호 인증하기

[문자발송기능안내]  
 1. 문자발송기능은 더존 CloudFax에 가입 된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2. 가입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loudFax란?   가입하기

닫기(ESC)

<급여명세서 발송화면 예시>

### 3. 부가세납부서 등 일괄 팩스 보내기(원샷)

부가가치세납부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납부서 등에서 팩스로 간편하게 신고서 및 납부서를 보낼 수 있으며 수임처 담당자에게 동시에 문자 전송을 통해 내역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작업순서]

- ① 전송할 신고서 및 납부서를 조회합니다.
- ② 메뉴 상단의 원샷 버튼을 클릭하여, 원샷 보내기 화면을 띄웁니다.
- ③ 보낼 거래처를 체크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 및 납부서가 전송됩니다.  
(문자를 동시에 보낼 경우 팩스 + 문자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고사항

수임거래처에 신고서 및 납부서를 팩스를 통해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납부서의 경우 납세자는 QR코드로 가까운 편의점에서 납부 가능 합니다.  
 팩스전송 : 신고서 및 납부서를 상대방의 팩스로 전송합니다.  
 문자전송 : 문자를 상대방의 휴대폰으로 전송합니다.

4. 미수금청구서 발행

거래처별로 잔액 확인 후 클릭 한번으로 미수금청구서를 팩스 전송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와 잔액 상세내역을 한번에 보낼 수 있으며 팩스&문자 전송 이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조회시 거래내역별 미회수기간 및 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미수금청구서발행

잔액 조회 | 팩스 보내기

일자 2020년 12월 31일 현재 거래처 00101 더존상사 ~ 00101 더존상사

코드	거래처명	코드	계정과목	잔액	청구금액	담당자	FAX 번호	H.P 번호	전화번호	
00101	더존상사	108	외상매출금	57,700,000	57,700,000		0507 - 0316 - 5151	-	-	010 - 1111 - 1111

일자	적요	계정명	매출액	입금액	잔액	미회수액	미회수기간	일수
2019-01-05	상품외상매출	108 외상매출금	55,000,000		55,000,000	28,000,000	2019.01.06~2020.12.31	726
2019-05-16	상품외상매출	108 외상매출금	2,200,000		57,200,000	2,200,000	2019.05.17~2020.12.31	595
2019-06-05	외상대금 보통예금입금	108 외상매출금		7,000,000	50,200,000			
2019-12-29	상품외상매출	108 외상매출금	3,300,000		53,500,000	3,300,000	2019.12.30~2020.12.31	368
2020-02-21	상품외상매출	108 외상매출금	11,000,000		64,500,000	11,000,000	2020.02.22~2020.12.31	314
2020-08-06	상품외상매출	108 외상매출금	11,000,000		75,500,000	11,000,000	2020.08.07~2020.12.31	147
2020-10-05	외상대금 보통예금입금	108 외상매출금		20,000,000	55,500,000			
2020-11-15	상품외상매출	108 외상매출금	2,200,000		57,700,000	2,200,000	2020.11.16~2020.12.31	46

다양한 유형의 미수금청구서를 제공하여 거래처별로 다른 유형의 청구서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와 원장을 동시에 보낼 수도 있으며 청구서는 제외하고 잔액 상세내역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구 수정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접 편집 할 수 있습니다.



5. 일괄팩스 보내기

Smart A 프로그램에서 작성 된 여러 가지 서식을 거래처(수임처) 별로 한 번에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작업순서]**

- ① 전송할 서식을 선택합니다.
- ② 수신처를 입력합니다. (거래처(회사) 등록 담당자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옴)
- ③ 팩스를 전송할 서식과 보낼 거래처를 체크합니다.
- ④ [팩스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팩스를 전송합니다.  
 ※ [현재서식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낼 팩스양식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⑤ 전송조회 탭에서 전송이력 및 전송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업] 기업 → 거래처**

전송할 서식을 선택하여 거래처를 선택하면 거래처등록에 등록된 담당자의 정보와 SmartA에 작성된 서식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물류(입력메뉴) 탭에서 불러온 서식의 세부내용은 오른쪽 하단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물류 (조회메뉴) 탭에서는 기간(서식) 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뉴실행의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각 메뉴의 서식 입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코드	거래처명	담당자	FAX 번호	H.P 번호	건	세	기	말	기타	서식명	서식번호/처리번호	합계금액	메뉴실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77777	다온상사	김담당	02 6244 0000		1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순번지_구	2019121700044		실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래명세서] 순번지1	2019121700044		실행

- 전송 가능한 서식(10종) ① 견적서
- ②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처리 메뉴 포함)
- ③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처리 메뉴 포함)
- ④ 발주서
- ⑤ 출고지시서
- ⑥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 ⑦ 거래처별 판매 현황
- ⑧ 판매(일) 월보
- ⑨ 거래처별 구매 현황
- ⑩ 구매(일) 월보

### 6. 초청장, 인사말 등 일괄 문자 보내기

SmartA에 등록 된 거래(수입)처에 일괄로 (알림)문자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으며, 수신인을 별도의 그룹으로 등록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문구 외 [메시지등록]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문자 내용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직접 등록 및 편집하여 전송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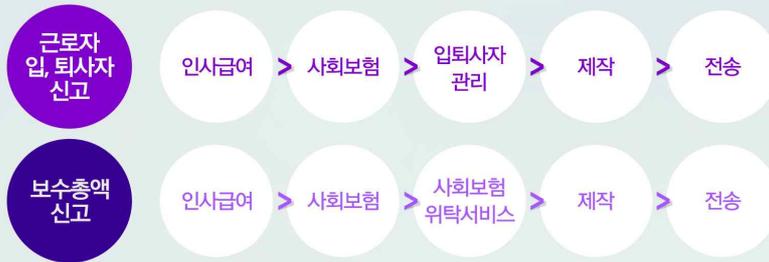
#### [작업순서]

- ① 수신인을 선택합니다.(직접 입력가능)
- ② 메시지 내용(MMS) 선택 또는 수신자별로 메시지 내용을 편집합니다.
- ③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문자를 전송합니다.
- ④ 전송조회 탭에서 전송이력 및 전송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예약에 체크하면 예약 전송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경영원은 “비즈씨(www.bizsee.net)”를 운영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는 더존프로그램에서 4대보험 자료를 전송하고, 비즈씨에서 신고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국경영원은

지난 20년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국의 35,000여개 사업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보험사무대행기관입니다. 한국경영원의 4대보험 위탁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기장사업장의 4대보험 관리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씨에서  
**BIZSEE**  
www.bizsee.net

세무회계사무소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기장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즉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자금 정책** (안정자금 지원, 두루누리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내용을 **온라인 학습과정**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는 기장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득자에 대한 감독”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경영원의 자회사인 오셈원격평생교육원(www.ossem.co.kr)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강하신 세무회계사무소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개인정보보호교육 학습 문의 ☎1588-9868

## XVI 사업,기타(이자/배당)소득자 (단기/일반)예술인 관련 개정사항

### XVI-1 사업소득자입력

#### 1. 사업소득자등록

코드	소득자명	주민(외국)등록번호	코드	소득구분
<input type="checkbox"/> 00001	사업소득	내 991212-*****	940302	배우
<input type="checkbox"/> 00002				
전 체				1 명

※ 사업소득에서 병의원코드 (851101)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일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예술인등록 탭에서 특정 소득 구분으로 입력한 사업 소득자에 한하여, 예술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예술인 여부 “1.여”로 선택시, 사업장 코드도움이 활성화 되며, [사업장등록]메뉴에 존재하는 예술인 여부가 “여”인 사업장을 F2 코드도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장 입력시, 예술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일반예술인, 2.단기예술인)

2. 사업소득자료입력

사업소득자료입력

지금년월 2020 년 12 월 구분 0. 전체

코드	소득자명	주민번호	소득구분
00001	사업소득	내:991212-*****	940302 배우

기타 관리 항목

소득구분	상호	사업장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정과목	영수일자	연말직용
940302	배우					부

소득 지급 내역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필요경비	고용보험료	차인지급액
5,000,000	3	150,000	15,000	165,000	200,000	3,250	4,835,000

인원(건수) 1(1)명

지급총액 5,000,000 원

소득세 150,000 원

지방소득세 15,000 원

차인지급액 4,835,000 원

지금년월 2020년 12월 조회 부터, 기타소득자료입력 메뉴에서 예술인에 해당하는 소득자를 불러오면 예술인경비와, 고용보험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차인지급액 계산시 예술인경비와,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예술인의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0%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20%

## XVI-2 기타(이자/배당)소득자입력

### 1. 기타(이자/배당)소득자등록

코드	소득자명	거주	주민(외국인)번호	소득구분
<input type="checkbox"/> 00001	김길동.영 상편집가(일반)	거주	내 991111-*****	62 그 밖에 필요경비
<input type="checkbox"/> 00002	이길동.영 상편집가(단기)	거주	내 991111-*****	62 그 밖에 필요경비
<input type="checkbox"/> 00003	박길동	거주	내 991111-*****	62 그 밖에 필요경비
<input type="checkbox"/> 00004	고길동.웹 통작가(일반)	거주	내 991111-*****	75 원고료 등(필요경
<input type="checkbox"/> 00005	홍길동.작명가(단기)	거주	내 991111-*****	75 원고료 등(필요경

기본사항등록	
소득구분/연말구분	62 ? 그 밖에 필요경비 있 연말 1   1.부
내외국인/국적	0.내국인 거주지국 KR ? 대한민국
소득자구분/실명구분	111 ? 내국인주민등록번호 0   0.실명
개인/법인	1.개인 필요경비율 80 %
예술인 여부	1.1.여 사업장 05 ? 사업장(단기예술인)
예술인 유형	1.1.일반예술인

연속사항등록	
법인명(대표자명)	2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991111-***** 생년월일 1999년 11월 11일 ?
우편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핸드폰번호	) -
E-mail등록	@
은행/계좌번호/예금주	? 김길동.영 상편집가(
미필 여부	0.0.여 신택이익여부 1   1.부

전체 5명

① 거주 구분이 “거주”이며, 소득 구분코드 (62.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75.원고료 등)인 소득자에 한하여, 예술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예술인 여부 “1.여”로 선택시, 사업장 코드도움이 활성화 되며, [사업장등록]메뉴에 존재하는 예술인 여부가 “여”인 사업장을 F2 코드도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장 입력시, 예술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일반예술인, 2.단기예술인)

## 2. 기타소득자료입력

귀속년월	지급년월	지급순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세액계	예술인경비	고용보험료	차인지급액
2020-12	2020-12	5,000,000	4,000,000	1,000,000	20.000	200,000		20,000		220,000	160,000	128,000	4,492,000
연간소득계				5,000,000	4,000,000	1,000,000		200,000		220,000	160,000	128,000	4,492,000
소득징수계													
소득재외계				5,000,000	4,000,000	1,000,000		200,000		220,000	160,000	128,000	4,492,000

지급년월 2020년 12월 조회 부터, 기타소득자료입력 메뉴에서 예술인에 해당하는 소득자를 불러오면 예술인경비와, 고용보험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차인지급액 계산시 예술인경비와,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예술인의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0%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20%